

2022 아동인권보고대회

아동이 마주한 폭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2.11.28. Mon ~ 30. Wed

 YouTube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해 준 여러아동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이 33년 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던 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6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으로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한 약속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 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권리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정책권고, 진정사건 조사,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대면과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올 한해 실시한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아동이 마주한 폭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 학교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인권 침해 문제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폭력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점검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위원회가 올해 다루었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학교폭력 관련 직권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청소년 노동인권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보고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아동 인권과 관련한 모든 과제들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 아동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여러 실효적인 대안들을 도출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실천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동들이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두 환**

안녕하십니까.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양희입니다.

2022년 아동인권보고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의 연구책임자 파울로 세르지우 핀 헤이루(Paulo Sergio Pinheiro) 박사가 보고서를 시작하며 수차례 반복하며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2022년 기준, 196개국)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6년에 유엔아동폭력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폭력은 문화, 계층, 교육적·경제적 수준, 인종적 차이를 막론하고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에서의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가정에서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의 근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노동현장, 지역사회, 보호시설과 사법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

되지 않습니다.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우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동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든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이 마주한 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과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부터 아동인권보고대회를 매년 개최해 온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과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건대 내년에는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일년 동안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도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아동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논의가 아동의 삶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이 양 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오준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제고하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2022년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발제자, 토론자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동을 단순히 ‘미래의 주인공’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이 사이버 매체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올해는 사이버 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보장,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소주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의 시각, 현장의 시각,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 실태를 확인하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아동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촉진과 함께 아동 인권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주고 계신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오 준**

- 일시 : 2022. 12. 28.(월) ~ 30.(수)
- 온라인 대회장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일 자	시간	프로그램
11월 28일 (월)	13:30 ~ 14:00	〈개회식 및 축하〉 개회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 사 : 오준 (한국아동협의회 회장)
	14:00 ~ 17:00	〈세션 1〉 사이버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좌장 :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 활동소개 : 김수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공통주제 발표 :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토론 :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박주한 (푸른나무재단 예방교육본부 본부장) 유희주 (용인백현중학교 3학년) • 권역별 사례 발표 : 아동인권모니터링단
	17:00 ~ 17:10	마무리

시간		프로그램
11월 29일 (화)	10:00 ~ 10:10	여는 마당
	10:10 ~ 11:40	〈세션 2〉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좌장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발표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토론 : 김민애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김정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형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팀장)
	11:40 ~ 12:50	점심시간
	12:50 ~ 13:00	여는 마당
	13:00 ~ 14:30	〈세션 3〉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 2022 아동인권 정책 모니터링 사업 연계
		좌장 :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 발표 1 :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 발표 2 : 노윤희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 발표 3 : 황태륜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 발표 4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 • 토론 :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실장)
	14:30 ~ 14:45	쉬는 시간
	14:45 ~ 16:15	〈세션 4〉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2022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연계
		좌장 : 임상수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발제 : 조규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 토론 : 허진재 (강현중학교 학교폭력전담교사) 박기영 (남양주남부경찰서 SPO 경위) 여미정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 센터장) 김혜연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16:15 ~ 16:30	쉬는 시간

	시간	프로그램
11월 29일 (화)	16:30 ~ 18:00	〈세션 5〉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좌장 :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 발표 :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임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완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여는 마당
11월 30일 (수)	9:30 ~ 10:00	여는 마당
	10:00 ~ 11:30	〈세션 6〉 아동 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좌장 :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발제 1 :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2 :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토론 :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아동권리옹호실 실장)
	11:30 ~	폐회선언

● 〈세션 1〉 사이버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 활동소개 : 김수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5
- 공통주제 발표 :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15
- 토론 :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73
박주한 (푸른나무재단 예방교육본부 본부장) 79
유희주 (용인백현중학교 3학년) 84
- 권역별 사례발표 : 백재희, 윤원형 (LENS, 경기 2권역) 89
김민서, 성리교 (LENS, 부산 경남 권역) 104
염리초등학교 5학년 1반 (LENS, 서울 권역) 116
정나래, 김도연, 김규린 (LENS, 전남 권역) 117
김은성, 문시은, 박하윤 (LENS, 경북 1권역) 124
장서연, 최아라 (LENS, 전북 권역) 128
안지상, 김미진, 이서진 (LENS, 충북 권역) 137
노정현, 차수빈, 이서다비 (LENS, 제주 1권역) 144
김해인, 김건이, 신채윤 (LENS, 제주 2권역) 154
반기병 (LENS, 강원 권역) 163

● 〈세션 2〉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 발표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177
- 토론 : 김민애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207
김정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216
김형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팀장) 227

● <세션 3>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 2022 아동인권 정책 모니터링 사업 연계	
• 발표 1 :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233
발표 2 : 노윤희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251
발표 3 : 황태륜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265
발표 4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	279
• 토론 :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	297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실장)	301
● <세션 4>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2022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연계	
• 발제 : 조규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319
• 토론 : 허진재 (강현중학교 학교폭력전담교사)	337
박기영 (남양주남부경찰서 SPO 경위)	341
여미정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 센터장)	352
김혜연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360
● <세션 5>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 발표 :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71
• 토론 : 임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	397
오완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	407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413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418
● <세션 6> 아동 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 발제 1 :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21
발제 2 :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443
• 토론 :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55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460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아동권리옹호실 실장)	471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1

사이버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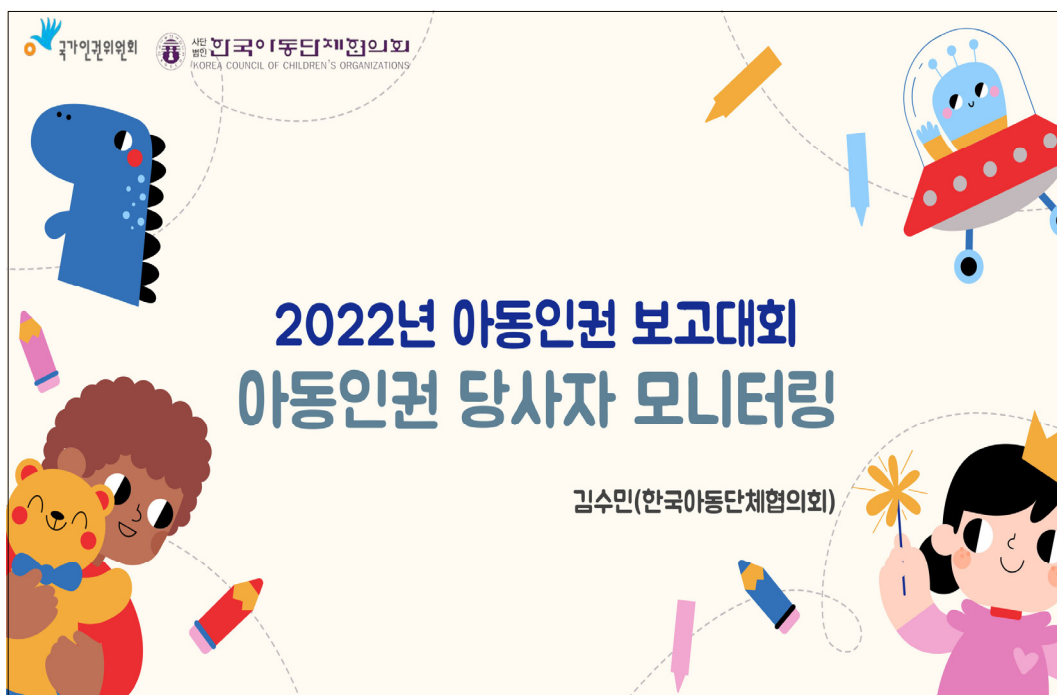
활동소개



활동소개



김수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의 목표



아동의 권리주체성 강화

아동권리 관련 주제에 대해 권리 주체의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실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주체성 강화'



아동의 역량 향상

아동이 자신 주변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
아동이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 등 향상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실현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 권리 주체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 및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



아동권리 수준의 도약

아동 참여권을 실질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의 수준 도약

모니터링 활동 진행과정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LENS) 모집



-모집권역: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모집대상: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참여인원: LENS 139명
코디네이터 16명

-활동기간: 8월 ~ 10월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진행 과정

01

주제 선정

1. 공동 주제
사이버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2. 권역별 주제
11개 권역

02

설문 조사

전국 설문조사
초4~고2 대상
(1134명)

03

정기회의 및
보고서 작성

-월 1회 모니터링단 정기회의

<모니터링 활동 방법>
-권역 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탐색
-또래 인터뷰 진행
-옹호활동(캠페인)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
-현장 조사

04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11월 28일
아동인권 보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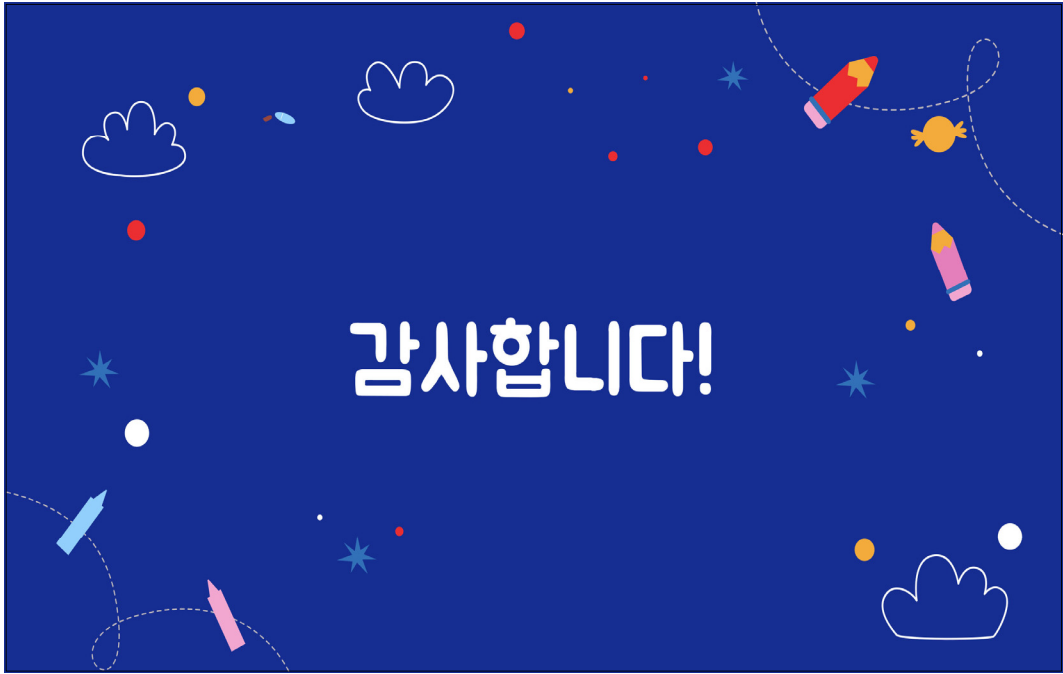


★ 권역별주제

권역		주제
서울	서울1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서울2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서울3	급식실 내 대화 규칙
경기	경기1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 참정권 및 인권 보장
	경기2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인식 실태 및 현황과 지원방법
강원		온·오프라인 아동 공공이용시설 및 사이트의 유해환경 조사
충북		학생 맞춤형 탄력적인 교육이 아닌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겪는 피해
충남	충남1	청소년 전용버스노선 마련과 학교 공간의 재구성 관련 제안
	충남2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권역별주제

권역		주제
전북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종류의 예시를 들어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전남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 조사한 이후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기
경북	경북1	자유학기제도 개선의 필요성
	경북2	청소년 알바의 현실과 실태
경남		미성년자 유해 사이트 노출에 대한 규제
캐티스쿨(전국)		건강 장애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제주	제주1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SNS 상의 언어사용 문제
	제주2	아동의 자아구현 및 문화적 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사이버 상에서 아동은 안전한가?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공통주제 설문조사 결과)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사이버 상에서 아동은 안전한가?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공통주제 설문조사 결과)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22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공통주제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아동의 경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폭력의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들이 어떤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하는지 조사하고자 했으며 이에 더하여, 아동들의 인터넷 이용 행동과 예방 교육 경험 및 아동들이 생각하는 사이버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양적자료 수집과 질적자료 수집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적 자료는 총 39개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을 아동이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는 총 2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서면 질문지에 아동이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양적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인 아동(LENS) 및 아동단체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링크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질적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은 모니터링 당사자인 아동(LENS)이 본인 및 주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적자료 설문에는 총 1,134명이 응답하였고, 질적

자료 설문에는 총 10개 권역, 77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양적자료 분석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일원분석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교차분석, t-test 등 이원분석이 활용되었다. 질적자료 분석은 여러 번 언급되거나 의미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의미 단위를 구성하고, 서로 연관 있는 의미 단위를 묶어 범주를 구성한 후,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조사 인원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전국의 아동청소년	1,134명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 아동(LENS)	10개 권역(A~J) 77명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서면) 설문조사	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

2. 양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의 지역분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도가 2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상도(16.1%), 전라도(13.8%), 제주특별자치도(12.4%), 서울특별시(10.1%)의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들은 5%이하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 지역별 응답 현황

거주지역	명	%
강원도	44	3.9
경기도	268	23.6
경상도	183	16.1
전라도	156	13.8
제주특별자치도	140	12.4
충청도	57	5.0
광주광역시	30	2.7
대구광역시	20	1.8
대전광역시	14	1.2
부산광역시	33	2.9
서울특별시	115	10.1
세종특별자치시	1	0.1
울산광역시	50	4.4
인천광역시	23	2.0
총계	1134	100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의 비율(66.0%)이 남자(34.0%)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고등학생(35.5%)이 많았으며, 초등학생(23%)이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족구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양부모 가정으로 응답하였으며(87.0%),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약 10% 가량을 차지하였다.

〈표 2〉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748	66.0
	남자	386	34.0
학년	초4	32	2.8
	초5	109	9.7
	초6	109	9.7
	무응답	11	0.8
	소계	261	23.0
	중1	104	9.2
	중2	285	25.3
	중3	71	6.31
	무응답	2	0.0
	소계	462	40.7
	고1	284	25.2
	고2	87	7.7
	고3	30	2.7
	무응답	1	0.0
	소계	403	35.5
	대안학교	4	0.4
	학교에 다니지 않음	4	0.4
가족형태	양부모 가정	986	87.0
	한부모가정	107	9.4
	조손가정	27	2.4
	형제자매끼리 거주	2	0.2
	기타	12	1.0
합계		1,134	100

2) 부모, 친구관계 및 인터넷 이용 특성

응답자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관심과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신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으로 환산하여 성별이 학교급의 차이를 살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부모와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명(%)				
1) 부모님(보호자)은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13(1.2)	51(4.5)	525(46.3)	545(48.1)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	17(1.5)	100(8.8)	481(42.4)	536(47.3)	
3) 부모님(보호자)은 사소한 것도 여쭙보면 잘 듣고 응답해 주신다	15(1.3)	79(7.0)	518(45.7)	522(46.0)	
평균(표준편차)					
전체	여	남	초	중	고
3.4(0.6)	3.5(0.6)	3.4(0.6)	3.4(0.5)	3.4(0.6)	3.4(0.5)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한다고 하였으며, 70%가 고민과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다고 하였다. 평균점으로 환산하여 성별이 학교급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친구와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명(%)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준다	15(1.3)	68(6.0)	631(55.6)	420(37.0)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17(1.5)	45(4.0)	636(56.1)	436(38.5)	
3) 나는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89(7.9)	250(22.1)	476(42.0)	319(28.1)	
평균(표준편차)					
전체	여	남	초	중	고
3.2(0.6)	3.2(0.6)	3.2(0.6)	3.2(0.6)	3.1(0.6)	3.2(0.6)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평일에는 약 50%가량이(21.9+26.9)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4시간 이상은 약 20%(10.9+11.6)가 응답하였다. 여자와 남자의 평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자가 평일에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들보다 평일 인터넷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급이 높을수록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4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약 50%(16.3+34)로 평일에 비해 이용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여전히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4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평일이용시간과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5〉 평일과 주말/방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

단위: %(명)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일(월~금)	12.4% (141명)	21.9 (258)	26.9 (305)	16.4 (186)	10.9 (123)	11.6 (131)	
여	10.2 (76)	19.9 (149)	25.9 (194)	18.6 (139)	12.6 (94)	12.8 (96)	p<.001
남	16.8 (65)	25.7 (99)	28.8 (111)	12.2 (47)	7.6 (29)	9.1 (35)	
초	29.1 (76)	28.0 (73)	20.7 (54)	11.9 (31)	5.4 (14)	5.0 (13)	p<.001
중	8.0 (37)	21.9 (101)	26.2 (121)	20.4 (94)	11.5 (53)	12.1 (56)	
고	6.7 (27)	18.1 (73)	31.8 (128)	14.9 (60)	13.4 (54)	15.1 (61)	
주말(토, 일) 및 방학	46 (4.1)	109 (9.7)	169 (14.9)	239 (21.1)	185 (16.3)	386 (34.0)	
여	2.4 (18)	9.1 (68)	14.7 (110)	20.3 (152)	16.8 (126)	36.6 (274)	p<.001
남	7.3 (28)	10.6 (41)	15.3 (59)	22.5 (87)	15.3 (59)	29.0 (112)	
초	10.7 (28)	22.6 (59)	19.5 (51)	21.5 (56)	9.2 (24)	16.5 (43)	p<.001
중	2.0 (9)	7.4 (34)	14.5 (67)	20.4 (94)	16.2 (75)	39.6 (39.6)	
고	2.0 (8)	4.0 (16)	12.7 (51)	21.1 (85)	21.1 (85)	39.2 (158)	

인터넷 이용시간과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에 관계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의 관계가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에게 친구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 및 친구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의 상관계수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및 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부모와의 관계	-0.14***	-0.13***
	친구와의 관계	-0.09**	-0.12***
초	부모와의 관계	-0.25***	-0.25***
	친구와의 관계	-0.1	-0.13*
중	부모와의 관계	-0.01**	-0.01*
	친구와의 관계	-0.10*	-0.16***
고	부모와의 관계	-0.05	-0.06
	친구와의 관계	-0.06	-0.08
여	부모와의 관계	-0.15***	-0.14***
	친구와의 관계	-0.06	-0.07
남	부모와의 관계	-0.14**	-0.13*
	친구와의 관계	-0.13*	-0.20***

***p<.001, **p<.01, *p<.05

〈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물었을 때,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였고, 2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순위로는 온라인 게임이었다. 〈표 8〉에서 학교급별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3순위에 메타버스가 함께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아동은 전체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남자아동은 온라인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의 순서로 많이 이용한다고 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7〉 인터넷 이용 서비스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23.5 (266)	48.2 (546)	21.3 (241)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1.6 (18)	5.2 (59)	12.8 (14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57.3 (650)	25.8 (293)	8.8 (100)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2.9 (33)	3.9 (44)	9.2 (104)
개인 홈페이지	0.1 (1)	0.6 (7)	4.3 (49)
이메일	1.9 (22)	2.8 (32)	10.4 (118)
온라인 게임	12.7 (144)	13.5 (153)	33.3 (377)

〈표 8〉 학교급별 및 성별 인터넷 이용 서비스 순위

		서비스 종류	%(명)
초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33.0(86)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2.6(85)
	3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20.7(54)
		온라인 게임	20.7(54)
중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63.4(293)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50.4(233)
	3	온라인 게임	33.4(168)
고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66.3(267)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55.3(225)
	3	온라인 게임	38.0(153)

		서비스 종류	%(명)
여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66.8(500)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58.0(434)
	3	온라인 게임	39.8(298)
남	1	온라인 게임	89.6(116)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31.4(121)
	3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7.8(146)

인터넷에서의 위험행동의 종류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연락하는 비율이 22.8%로 다른 위험행동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공개(11.8%),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17.2%)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험행동의 빈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마찬가지로 위험행동 빈도가 높았다.

〈표 9〉 인터넷에서의 위험행동

	%(명)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1) 나는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54.1 (613)	34.1 (387)	10.2 (116)	1.6 (18)
2) 나는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나 연락한다	54.0 (612)	23.3 (264)	20.2 (229)	2.6 (29)
3) 나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한다	58.5 (663)	24.3 (276)	15.8 (179)	1.4 (16)
4) 나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보낸다	82.5 (935)	14.1 (160)	2.9 (33)	0.5 (1.3)
5) 나는 의도적으로(내 스스로)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80.3 (911)	13.4 (152)	4.9 (56)	1.3 (15)
6) 나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한다	89.8 (1018)	7.9 (89)	1.8 (20)	0.6 (7)

〈표 9〉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 평균점수 비교

평균(표준편차)

	초	중	고	여	남
1) 나는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1.4(0.7)	1.7(0.8)	1.7(0.7)	1.6(0.7)	1.6(0.7)
2) 나는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나 연락한다	1.5(0.7)	1.8(0.9)	1.8(0.9)	1.7(0.9)	1.8(0.9)
3) 나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한다	1.5(0.8)	1.6(0.8)	1.7(0.8)	1.5(0.7)	1.8(0.9)
4) 나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보낸다	1.1(0.4)	1.3(0.6)	1.2(0.5)	1.2(0.5)	1.3(0.6)
5) 나는 의도적으로(내 스스로)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1.1(0.4)	1.3(0.6)	1.4(0.7)	1.2(0.5)	1.4(0.7)
6) 나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한다	1.1(0.4)	1.1(0.5)	1.1(0.4)	1.1(0.4)	1.2(0.5)

- Scheffe: 1) 초<중, 고 ***, 2) 초<중, 고***, 3) 초<중, 고**, 4) 초<중*, 5) 초<중, 고***

- t-test: 2) 여<남**, 3) 여<남***, 4) 여<남*, 5) 여<남***, 6) 여<남**

인터넷 위험행동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및 친구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시간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10〉 인터넷 이용시간 및 부모친구관계와 인터넷 위험행동 상관관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및 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전체	0.17***	0.19***	-0.15***	-0.07*
	초	0.16**	0.23***	-0.18**	-0.15*
	중	0.19***	0.16***	-0.11*	-0.02
	고	0.07	0.1*	-0.18***	-0.1*
	여	0.21***	0.18***	-0.16***	-0.07
	남	0.17***	0.25***	-0.14**	-0.08

***p<.001, **p<.01, *p<.05

3)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경험, 피해 특성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80%(35.6+34.7)가 한번 혹은 여러번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16.8%였고, 잘 기억나지 않는 응답자도 13%에 달하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여러 번 교육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에 달했으며, 학교급별 교육경험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로는 차이가 없어 구체적인 결과를 생략하였다.

〈표 11〉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험 횟수

	한 번도 받지 않음	한 두 번 정도 받음	여러 번 받음	잘 기억이 나지 않음	%(명)
전체	16.8(190)	35.6(404)	34.7(393)	13.0(147)	
초	15.7(41)	26.4(69)	46.4(121)	11.5(30)	p<.001
중	18.2(84)	31.0(143)	35.3(163)	15.6(72)	
고	15.4(62)	47.2(190)	26.8(108)	10.7(43)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로에서 60% 가량이 학교 교과수업 시간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경험 비율이 높아졌다.

〈표 1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로

	학교 교과 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 프로그램(청소년 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기타	%(명)
전체	60.4(488)	34.2(276)	3.7(30)	1.7(14)	
초	51.7(135)	36(13.8)	5.4(14)	6(2.3)	p<.001
중	40.5(187)	24.5(113)	1.9(9)	0.1(3)	
고	41.2(166)	31.5(127)	1.2(5)	0.1(4)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사이버폭력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1)부터 매우 잘 안다(7)까지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평균은 5.7점이었고, 학교급별, 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3〉 사이버폭력 이해에 대한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여	남
5.7(1.2)	5.6(1.3)	5.7(1.2)	5.7(1.1)	5.7(1.1)	5.7(1.2)

사이버폭력 이해에 대한 자기평가와 인터넷 이용시간 및 부모,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표 14〉 인터넷 이용시간 및 부모친구관계와 사이버폭력 이해 정도의 상관관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및 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인지에 대한 자기평가	전체	-0.03	-0.03	0.14***	0.18***
	초	-0.02	-0.05	0.20**	0.20**
	중	-0.16***	-0.19***	0.15***	0.16***
	고	0.08	0.13***	0.9	0.18***
	여	-0.05	-0.06	0.15***	0.18***
	남	-0.00	0.01	0.11*	0.17***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6.9%), 사이버스토킹(3.4%) 및 성폭력(3.4%)의 순서였다. 각 유형별로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사이버따돌림 피해경험에서만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

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는데, ($p < .001$), 피해자 중 여자가 94.7%(36)명, 남자가 5.2%(2명)였다. 나머지 유형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과제시를 생략하였다.

〈표 1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비율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명)				
	전체 100 (1,134)	초	중	고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은 적(사이버 언어폭력)	32.4 (367)	19.6 (71)	43.3 (157)	37.2 (135)	100 (367)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사이버 명예훼손)	6.9 (78)	15.6 (12)	44.2 (34)	40.3 (31)	100 (77)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사이버 스토킹)	3.4 (39)	15.4 (6)	59.0 (23)	25.6 (10)	100 (39)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나에게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한 적(사이버 성폭력)	3.4 (38)	13.2 (5)	57.9 (22)	29.0 (11)	100 (38)
온라인 공간에서 나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개인정보 유출)	1.9 (22)	22.7 (5)	50.0 (11)	27.3 (6)	100 (22)
여러 명이 같이 나를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사이버 따돌림) ($p < .01$)	3.5 (40)	17.5 (7)	65.0 (26)	17.5 (7)	100 (40)
나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은 적(사이버 갈취)	1.7 (19)	33.3 (6)	50.0 (9)	16.7 (3)	100 (18)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사이버 강요)	0.9 (10)	50 (5)	30 (3)	20 (2)	100 (10)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사이버언어폭력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이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6〉 사이버폭력 피해 경로(중복 체크)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9.2 (144)	70.5 (55)	59.0 (23)	64.1 (25)	77.3 (17)	62.5 (25)	-	50.0 (5)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2.5 (9)	1.3 (1)	7.7 (3)	7.9 (3)	4.5 (1)	-	(1)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26.2 (96)	37.2 (29)	43.6 (17)	44.7 (17)	31.8 (7)	25.0 (10)	(1)	30.0 (3)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10.9 (40)	3.8 (3)	5.1 (2)	2.6 (1)	-	5.0% (2)	-	20.0 (2)
개인 홈페이지	-	3.8 (3)	2.6 (1)	-	-	-	(11)	-
이메일	0.0 (1)	-	-	-	-	-	-	-
온라인 게임	64.0 (235)	29.5 (23)	23.1 (9)	13.2 (5)	18.2 (4)	32.5 (13)	-	-
기타	1.4 (5)	-	-	-	-	-	(10)	-
	100 (367)	100 (78)	100 (39)	100 (38)	100 (22)	100 (40)	100 (19)	100 (10)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여부를 총 합산하여 학교급별 및 성별로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중학생이 가장 피해 평균이 높았다. 남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총합 평균

평균(표준편차)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여	남
피해 평균	0.45(0.82)	0.62(1.04)	0.51(0.84)	0.54(0.93)	0.53(0.91)

*p<.05

사이버폭력 피해와 기타 인터넷 이용 특성 및 부모친구관계 특성의 상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8〉에서 나타난 바와 피해 경험과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모관계 및 친구관계와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 관계와 피해경험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8〉 사이버폭력 피해,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친구 관계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전체	0.28***	-0.05	0.14***	0.16***	-0.12***	-0.16***
	초	0.33***	-0.06	0.21***	0.24***	-0.17**	-0.14*
	중	0.28***	-0.07	0.15**	0.16***	-0.07	-0.18***
	고	0.24***	-0.05	0.07	0.06	-0.14**	-0.14**
	여	0.31***	-0.05	0.12**	0.12***	-0.12**	-0.17***
	남	0.24***	-0.05	0.19***	0.22***	-0.12*	-0.14**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로를 학교급별 및 성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표 19〉에서 제시하였다.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중학생이 60%이상을 차지하여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SNS로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명예훼손

손을 경험하는 비율은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높았다고 SNS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많았다. 반면 메타버스를 통해 경험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남자아동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서로 그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경험하는 경우는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19〉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로의 학교급 및 성별 비율 분석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여***	남							여**	남				
	79.2 (114)	20.9 (30)							96.0 (24)	5.0 (1)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13.0 (3)	69.6 (16)	17.4 (4)	16.0 (4)	68.0 (17)	16.0 (4)	20.0 (5)	64.0 (16)	16.0 (4)			
	100(144)					100(23)			100(25)			100(25)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여***	남	여**	남										
	85.4 (82)	14.6 (14)	93.1 (27)	6.9 (2)										
			초*	중	고									
			3.5 (1)	51.7 (15)	44.8 (13)									
	100(96)		100(29)											
메타버스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초**	중	고											
	45.0 (18)	37.5 (15)	17.5 (7)											
	(40)													
온라인 게임	여***	남	여***	남								여*	남	
	45.5 (107)	54.5 (128)	26.1 (6)	73.9 (17)								38.5 (5)	61.5 (8)	
	초***	중	고											
	13.4 (31)	39.8 (92)	46.8 (108)											
	100(235)		100(23)									100(13)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를 준 사람이 주로 누구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표 20>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54.3%로 가장 많았다. 성별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2배 정도임을 고려하더라도 친한 친구, 선배나 후배, 얼굴만 아는 사이 및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여자아동에게 많았던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남녀 간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가해자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결과 제시는 생략하였다.

〈표 20〉 사이버폭력 피해를 준 사람

	전체 100(433)	성별***		%(명)
		여	남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0.1 (3)	66.7 (2)	33.3 (1)	100 (3)
친한 친구	23.6 (102)	75.5 (77)	24.5 (25)	100 (102)
선배나 후배	3.9 (17)	82.4 (14)	17.7 (3)	100 (17)
얼굴만 아는 사이	4.6 (20)	75.0 (15)	25.0 (5)	100 (20)
(위의 사람들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12.9 (56)	71.4 (40)	28.6 (16)	100 (56)
전혀 모르는 사람	54.3 (235)	54.6 (126)	46.4 (109)	100 (235)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처행동에 대한 질문에,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아동 가운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상대를 차단하거나 아이디나 이메일을 바꾼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해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도움요청, 신고 등은 여자의 비율이 대부분이었으며, 가해자

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괴롭히는 행동은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생략하였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을 학교급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에 응답한 89명 중, 초등학생이 29.4%(7명), 중학생이 29.4%(35명), 41.2%(47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이유를 학교급별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상대방이 보복(복수할 것 같아서)에 대해 여자는, 남자는 이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표 21〉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처행동

	전체 100(412)	성별***		% (명)
		여	남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24.8 (102)	55.9 (57)	44.1 (45)	100 (102)
괴롭힘이 일어난 웹사이트나 앱(어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7.3 (30)	90.0 (27)	10.0 (3)	100 (30)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멈추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16.7 (69)	72.5 (50)	27.5 (19)	100 (69)
가족,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11.2 (46)	84.8 (39)	15.2 (7)	100 (46)
괴롭힘이 일어난 웹사이트나 상담센터 또는 경찰(학교 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신고했다	3.6 (15)	73.3 (11)	26.7 (4)	100 (15)
가해자에게 보복(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괴롭혔다	4.6 (19)	26.3 (5)	73.7 (14)	100 (19)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31.8 (131)	53.4 (70)	46.6 (61)	100 (131)

*** $p<.001$, ** $p<.01$, * $p<.05$

〈표 22〉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중복 답변)

%(명)

	n=131	성별		
		여	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3.0(17)	82.4(14)	17.7(3)	100(17)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68.7(90)	54.4(49)	45.6(41)	100(90)*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9.2(12)	33.3(4)	66.7(8)	100(12)*
내가 행동을 해도 괴롭힘이 멈춰질 것 같지 않아서	7.6(10)	40.0(4)	60.0(6)	100(10)
상대방이 보복(복수)할 것 같아서	6.1(8)	25(2)	75(6)	100(8)*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4.6(6)	33.3(2)	66.7(4)	100(6)
(나를 괴롭히는 친구라도)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	2.3(3)	33.3(1)	66.7(2)	100(3)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9.2(12)	50(6)	50(6)	100(12)
기타	13.7(18)	50(9)	50(9)	100(18)

***p<.001, **p<.01, *p<.05

4)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12.3%가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각 폭력 유형을 학교급별로 분석하였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p<.05$) 초등학생보다 높았으며,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중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p<.05$). 사이버 강요의 경우,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p<.05$).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에서 여자가 46.8%(65명), 남자는 53.2%(7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도 여자는 44.0%(11명), 남자는 56%(1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표 23〉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 비율

%(명)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체 100 (1,134)	초	중	고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사이버 언어폭력)	12.3 (139)	14.5 (20)	43.5 (60)	42.0 (58)	100 (138)
그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사이버 명예훼손)	2.2 (25)	12 (3)	56 (14)	32 (8)	100 (25)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사이버 스토킹)	0.1 (1)	-	-	100 (1)	100 (1)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한 적(사이버 성폭력)	0.2 (2)	-	50 (1)	50 (1)	100 (2)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개인정보 유출)	0.4 (4)	25 (1)	50 (2)	25 (1)	100 (4)
여러 명이 같이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사이버 따돌림)	1.4 (18)	12.5 (2)	75.0 (14)	12.5 (2)	100 (18)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은 적(사이버 갈취)	0.4 (5)	40 (2)	20 (1)	40 (2)	100 (5)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사이버 강요)	0.5 (6)	66.7 (4)	33.3 (2)	0 (0)	100 (6)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경로를 분석했을 때, 〈표 24〉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개인정보유출은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경로를 학교급,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를 〈표 25〉에서 제시하였다. 제시된 것과 같이,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그리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에서 중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

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의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4〉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별 경로(중복 답변)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48.9 (68)	48.0 (12)	-	100 (2)	50 (2)	72.2 (13)	20 (1)	2 (33.3)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1.4 (2)	-	-	-	-	-	40 (2)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23.7 (33)	52.0 (13)	-	50 (1)	25 (1)	22.2 (4)	-	1 (16.6)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5.0 (7)	0.04 (1)	-	-	-	-	-	2 (33.3)
개인 홈페이지	-	-	-	-	-	-	-	-
이메일	-	0.04 (1)	-	-	-	-	-	-
온라인 게임	63.3 (88)	0.3 (7)	1 (100)	-	75 (3)	50 (9)	-	2 (33.3)
기타	0.1 (1)	-	-	50 (1)	-	-	80 (4)	-
	100 (139)	100 (25)	100 (1)	100 (2)	100 (4)	100 (18)	100 (5)	100 (6)

〈표 25〉 가해 경로별 폭력유형과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발생 비율 분석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초*	중	고	초*	중	고
				25.0 (3)	75.0 (9)	0 (0)	15.4 (2)	76.9 (10)	7.7 (1)
				100(12)			100(1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초**	중	고	초*	중	고			
	3.1 (1)	62.5 (20)	34.4 (11)	0 (0)	76.9 (10)	23.1 (3)			
	100(33)			100(13)					
온라인 게임	여***		남						
	22.7 (20)		77.3 (68)						
	100(88)								
	초***	중	고	여**		남	여**		남
	9.3 (8)	29.1 (25)	6.6 (5)	14.3 (1)		85.7 (6)	22.2 (2)		77.8 (7)
	100(86)			100(7)			100(9)		

***p<.001, **p<.01, *p<.05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한 경우, 가해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인지와 관련하여, 친구들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골고루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에 남자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인지(중복 답변)

%(명)

	n=179	성별		
		여	남	
아무도 모른다	29.1(52)	51.9(27)	48.1(25)	100(52)*
내가 한 행위를 상대방은 알고 있다	27.9(50)	56.0(28)	44.0(22)	100(50)
친구들이 알고 있다	33.0(59)	27.4(22)	62.7(37)	100(59)***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알고 있다	7.3(13)	53.9(7)	46.2(6)	100(13)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2.8(5)	80(4)	20(1)	100(5)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총합의 평균을 학교급 및 성별로 비교하였을 때, 중학생의 가해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p<.05$), 남학생의 가해경험 평균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았다($p<.001$).

〈표 27〉 사이버폭력 가해 평균 비교

평균(표준편차)

	초	중	고	여	남
가해	0.12(0.42)	0.20(0.59)	0.18(0.49)	0.12(0.45)	0.27(0.63)

사이버폭력 가해 평균(유형별 가해 여부 총합의 평균)과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도,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친구 관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평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8〉에서와 같이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력 피해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친구관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의 유의성은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28〉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친구 관계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인지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가해	전체	0.28***	-0.06	0.08***	0.13***	-0.11***	-0.08**	0.52***
	초	0.30***	-0.10	0.15*	0.18**	-0.15*	-0.07	0.63***
	중	0.26***	-0.09	0.03	0.08	-0.06	-0.06	0.56***
	고	0.29***	0.01	0.07	0.12*	-0.17***	-0.12*	0.39***
	여	0.27***	-0.04	0.07	0.09*	-0.05	-0.05	0.49***
	남	0.25***	-0.07	0.15**	0.21***	-0.19***	-0.13**	0.60***

***p<.001, **p<.01, *p<.05

5) 혐오표현 및 성착취물 시청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신체나 외모, 가정형편, 학별이나 학력, 출신 지역, 나이가 많음, 다문화가정 출신, 성소수자 등에게 혐오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90%이상이 거의 없다고 했으나, 남자아동의 경우 10%가량이 가끔이나, 자주 혹은 매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도 7%가량이 가끔이나, 자주 혹은 매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9〉 혐오표현 빈도

	한 번도 없다(1)	거의 없다(2)	가끔 한 적이 있다(3)	자주 하였다(4)	거의 매일 하고 있다(5)	명(%)
전체	71.0(805)	22.4(254)	5.6(64)	0.8(9)	0.2(2)	
초	76.3(199)	21.5(56)	1.9(5)	0.4(1)	0(0)	p<.05
중	72.5(335)	19.9(92)	6.7(31)	0.9(4)	0(0)	
고	65.8(265)	25.8(104)	7.0(28)	1.0(4)	0.5(2)	
여	77.5(580)	18.1(135)	3.9(29)	0.4(3)	0.1(1)	p<.001
남	58.3(225)	30.8(119)	9.1(35)	1.6(6)	0.3(1)	

혐오표현과 인터넷 위험행동 및 앞서 살펴본 여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 및 친구관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학교급별 및 성별에 따라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30〉 혐오표현과 인터넷 위험행동 및 기타 특성과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 력 이해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가해
혐오 표현	전체	0.24***	-0.03	0.12***	0.11***	-0.09**	-0.9**	0.25***	0.31***
	초	0.20**	-0.08	0.25***	0.18**	-0.10	-0.08	0.19**	0.17**
	중	0.18***	-0.00	0.06	0.02	-0.07	-0.09	0.26***	0.36***
	고	0.31***	-0.03	0.08	0.11*	-0.01*	-0.12*	0.26***	0.27***
	여	0.19***	-0.06	0.13***	0.11**	-0.07	-0.07*	0.23***	0.28***
	남	0.25***	0.03	0.21***	0.18***	-0.11*	-0.13*	0.29***	0.28***

***p<.001, **p<.01, *p<.05

성착취물 시청 빈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80%가량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다. 가끔, 자주 혹은 매일 본다는 비율은 4% 가량이었다. 학교급별이나 성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 성 착취물 시청 빈도

명(%)	한 번도 없다(1)	거의 없다(2)	가끔 본 적이 있다(3)	자주 본다(4)	거의 매일 보고 있다(5)
전체	80.9(917)	14.6(165)	3.6(41)	0.8(9)	0.2(2)
초	84.7(221)	13.4(35)	1.5(4)	0.4(1)	0(0)
중	80.5(372)	13.4(62)	5.2(24)	0.9(4)	0(0)
고	78.9(318)	16.4(66)	3.2(13)	1.0(4)	0.5(2)
여	82.4(616)	13.2(99)	3.9(29)	0.5(4)	0(0)
남	78.0(301)	17.1(66)	3.1(12)	1.3(5)	0.5(2)

성착취물 시청 빈도와 인터넷 위험행동 및 앞서 살펴본 여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사이버폭력 이해도와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학교급별 및 성별에 따라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32〉 성착취물 시청과 인터넷 위험행동 및 기타 특성과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평일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가해
성 착 취 물 시 청	전체	0.25***	-0.07*	0.11***	0.14***	-0.01	-0.06	0.21***	0.25***
	초	0.12*	-0.13*	0.10	0.08	-0.03	-0.04	0.18**	0.11
	중	0.27***	-0.09	0.11*	0.15**	-0.04	-0.07	0.29***	0.26***
	고	0.28***	-0.03	0.08	0.10*	0.05	-0.05	0.11*	0.29***
	여	0.29**	-0.12**	0.10**	0.14***	-0.01	-0.04	0.23***	0.24***
	남	0.19***	-0.00	0.16**	0.15**	-0.01	-0.07	0.19***	0.26***

***p<.001, **p<.01, *p<.05

6) 사이버폭력 원인 및 대책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약 42% 가량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별이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3〉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 번호 인지 여부

	명(%)	초	중	고	여	남
예	480(42.3)	42.9(112)	45.2(209)	38.7(156)	40.5(302)	59.6(446)
아니오	654(57.7)	57.1(149)	54.8(253)	61.3(247)	46.1(178)	53.9(208)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전화번호 중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Wee센터였다. 신고번호 별로 학교급에서 인지비율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푸른나무재단($p<.01$), 안전 Dream센터($p<.01$), Wee센터($p<.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p<.05$)에 대해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푸른나무재단에 대해서 여자는 전체 여자의 53.8%(43명)이 남자 46.3%(37명)이 알고 있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해서 여자는 전체여자의 56.3%(75명), 남자는 43.6%(58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표 34〉 알고 있는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번호(중복 답변)

	n=480	초	중	고	명(%)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btf.or.kr (전화: 1588-9128)	16.7 (80)	32.9 (26)	48.1 (38)	19.0 (15)	100 (80)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전화: 1388/ 문자 #000011388)	71.5 (343)	20.6 (70)	45.3 (154)	34.1 (116)	100 (340)
안전Dream센터(구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www.safe182.go.kr (전화 : 117/ 문자 30117)	33.3 (160)	29.3 (46)	46.5 (73)	24.2 (38)	100 (157)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 www.uri-i.or.kr (전화: 02- 582-8118)	13.3 (64)	28.6 (18)	41.3 (26)	30.2 (19)	100 (62)
Wee센터 :www.wee.go.kr (전화: 1588-7199)	47.5 (228)	15.4 (35)	47.6 (108)	37.0 (84)	100 (22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566-0112)	27.7 (133)	25.8 (34)	42.4 (56)	31.8 (42)	100 (132)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기관별로 번호가 다름	14.0 (67)	21.2 (14)	42.4 (28)	36.4 (24)	100 (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전화: 02-735-8994)	19.4 (93)	15.2 (14)	53.3 (49)	31.5 (29)	100 (92)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는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해서, 2순위로는 가해자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 때문에, 3순위는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 및 성별로 사이버폭력 발생 이유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1, 2, 3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3순위가 예방교육이 부족해서로 나타났다.

〈표 35〉 사이버 폭력 발생 이유

명(%)

	1순위	2순위	3순위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622(54.9)	232(20.5)	125(11.0)
가해자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 때문에	256(22.6)	359(31.7)	227(20.0)
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하여서	14(1.2)	43(3.8)	110(9.7)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17(1.5)	94(8.3)	150(13.2)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	180(15.9)	302(26.6)	293(25.8)
예방교육이 부족해서	45(4.0)	104(9.2)	229(20.2)
	100(1,134)	100(1,134)	100(1,134)

사이버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표 36>와 같이 1순위는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3순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과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학교급별 및 성별로 사이버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조금씩 순위별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였고, 2순위와 3순위에서도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

자아동과 여자아동의 응답은 순위별 내용이 동일하였다.

〈표 36〉 사이버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명(%)

	1순위	2순위	3순위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265(23.4)	143(12.7)	211(18.7)
국가에서 더 많은 어른들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60(5.3)	189(16.7)	145(12.8)
보호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	69(6.1)	113(10.0)	177(15.6)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71(15.1)	233(20.6)	200(17.6)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84(7.4)	274(24.2)	214(18.9)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485(42.8)	182(16.1)	187(16.5)
	100(1,134)	100(1,134)	100(1,134)

〈표 37〉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감소 및 예방 대책 순위

명(%)

초	1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36.0(94)
	2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23.0(60)
	3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23.0(6)
중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45.0(208)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3.4(108)
	3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21.4(99)
고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51.9(209)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9.3(118)
	3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9.1(77)

여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45.5(340)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3.3(174)
	3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7.0(127)
남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37.8(145)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5.9(100)
	3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8.9(73)

3. 질적 설문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 2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 34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사이버폭력 현황’에서는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의 3개 범주와 13개 의미단위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은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학교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인터넷 기반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동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의 5개 범주와 20개 의미단위로 구성되었다.

〈표 38〉 개방형 설문조사 분석

주제	범주	의미
사이버폭력 현황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및 채팅 메신저(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익명 기반 SNS(애스크)
		채팅 가능한 게임
	사이버폭력 유형	단체 대화방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괴롭힘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공개적인 공간에 괴롭힘 전시
		SNS 계정 탈취 및 불법 유용
		금전 갈취(소액결제 강요, 피해자 카드 사용 등)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디지털 성폭력
		어른에게 알리지 않음
		어른에게 피해를 알렸을 때 피해자가 곤란해지기도 함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함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사이버폭력의 명확한 기준 및 규제 마련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대책 마련
	학교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효율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사이버폭력의 근원인 학교폭력 근절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유해사이트에 대한 아동의 접근 원천 차단
		앱 자체에 사이버폭력 방지 및 신고 기능 추가
		모니터링 강화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	피해아동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
		아동에 대한 어른의 적극적인 관심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가정교육
	아동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기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 가지기
		사이버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도와주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1) 사이버폭력 현황

(1)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사이버폭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의 채팅 메신저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이며,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사이버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꼽혔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4시간 동안만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이나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단은 페이스북에서 사이버폭력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요. (G지역)

정말 많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은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에서 주로 일어난다. 게시물이나 24시간만 볼 수 있는 스토리, 메시지(DM) 등을 이용해 사이버폭력을 한다. (F지역)

디스코드 같은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니 괴롭히고 싶으면 더 쉽게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최근에는 계정을 만들어 타인에게서 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는 익명 기반 SNS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익명 질문을 주기능으로 하는 SNS에는 대표적으로 ‘Asked 익명질문’, ‘Ask.fm’, ‘푸슁 ASK 익명질문’, ‘페잉(Peing)’ 등이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공통적으로 ‘애스크(Ask)’라고 표현하였다. 일부 애스크 서비스는 계정 소유자가 답변을 달지 않아도 소유자가 받은 질문을 타인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질문 기능을 통해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애스크에서는 비난이나 욕설 외에도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공유되는 등 디지털성폭력에도 취약한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외에 채팅이 가능한 롤이나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물론 메타버스를 활용한 로블록스 등의 게임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애스크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닌 장점으로 꼽혀 학생들이 많이 선

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애스크가 좋은 방향에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절반 이상(개인적 견해)은 모두 성적인 내용과 사진을 담은 사진들이 공유되고 이를 즐기는 공유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누군가의 신체 사진을 익명으로 학생들이 올리고 평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지역)

‘애스크’ 아닐까? 아무래도 요즘 사이버폭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다는 애스크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B: 맞아, 아무래도 인터넷의 제일 큰 특징인 ‘익명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곳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의 계정에 도달할 수 있잖아. (F지역)

애스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은 익명으로 질문하는 곳입니다.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들을 익명으로 질문하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지만, 이것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난과 욕설, 성희롱을 통해 모욕감을 주며 사용자에게 겁을 주지만, 이것은 이제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트라우마 또는 상처로 남겨둘 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악용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방에서 심한 욕설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고. (H지역)

(2) 사이버폭력 유형

채팅 메신저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폭력 또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괴롭히는 방식은 피해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그 공간을 마치 감옥처럼 만들어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카톡감옥’,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초대한 후 그를 제외한 모두가 동시에 채팅방에서 퇴장하여 홀로 남게 만드는 ‘방폭’, 마찬가지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욕설을 퍼붓는 ‘떼카’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카톡이나 단체방을 만들어서 따돌리는 것. 한 명에게 계속 욕하는 것. (A지역)

카카오톡 채팅방에서의 집단 따돌림 문제. (G지역)

페이스북에서 요즘 페메(페북메세지)로 단팸(단체페메)를 파서 한명을 왕따시키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다. (H지역)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 유출 또한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꼽혔다. SNS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욕설이 담긴 폭언을 남기는 행위뿐 아니라 허락 없이 사진을 퍼뜨리거나 일반인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스토킹에서 시작하거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고 괴롭힌다는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다. 너무 도를 넘는 댓글을 달거나 한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댓글을 단다. 악플은 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준다. (F지역)

SNS상에서 자신과는 의견이 다르다고 몰아가며 욕설이나 폭언들을 댓글로 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J지역)

요즘 많아진 사이버폭력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 이 행동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 가수나 배우와 같은 유명인들로부터 인터넷상의 일반인까지 정말 많다. 이것이 스토킹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생활을 찾아 유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캐낸다. 혹은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로 시작하기도 한다. (F지역)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 괴롭힘을 전시하는 유형의 사이버폭력도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악성 댓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앱 화면의 가장 상단에 나타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게시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토리 게시물에 다른 계정의 아이디를 태그하면 해당 계정에서 알림을 받게 되는데, 이 기능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 담긴 게시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도 사이버폭력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2가지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자신이 괴롭히는 학생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물에 악플을 단체로 다는 SNS의 댓글 기능을 통한 단체 악플테러. 여러 학생들의 자신이 괴롭히는 학생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스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저급한 말을 써 놓은 뒤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여 피해자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그 스토리를 본 다른 일진을 비롯한 가해학생들의 반응을 다시 스토리에 올려서 보게 만드는 SNS스토리를 통한 폭력. 이 두 가지 폭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가해학생들은 이 SNS 특징을 이용해 피해자를

더욱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G지역)

금전 피해가 따르는 유형의 사이버폭력도 있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이나 게임 계정을 빼앗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싸게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갈취하는 등의 사이버폭력도 발생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이버폭력 종류는 계정을 빼앗는 것이다. 카톡아이디나 게임아이디를 빼앗아서 불법으로 홍보하는 데 쓰거나 게임 계정을 빼앗아 유료인 아이템들을 사는 경우가 있다. (G지역)

소액결제를 강요하는 사이버 폭력. (예: 피해자에게 자신이 쓸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강요) (B지역)

게임 아이템을 싸게 준다는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J지역)

디지털 성폭력은 대표적인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쌓아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나 나체 사진 혹은 영상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이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애스크’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남기는 행위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된다. 아동들은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로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새로운 사이버폭력 종류에는 딥페이크가 있는 것 같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다른 사진에다 합성하여 수치감을 주거나 퍼뜨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n번방 사건 때 ‘지인능욕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했던 일이다. 또한 요즘에는 오픈채팅방이나 게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여학생들의 경우 오픈채팅방에서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근하게 대하여 서로 친밀감을 쌓다가 몸 사진을 요구하거나 하여 나중에는 그 몸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G지역)

요즘에는 오픈채팅방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싶다며 다가와서 친해진 다음에 갑자기 얼굴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굴 사진을 얻어서 어디에다가 사용하냐면 음란물 같은 곳에 얼굴을 따서 편집해, 자연스럽게 조작해서 영상을 퍼트려서 그 얼굴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수법도 있습니다. (F지역)

엑스크에서 의도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고 특정 누군가에게 욕설을 담은 질문을 보내기도 한다. (F지역)

(3)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하지는 않았다. 아동들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오히려 피해자나 신고자가 곤란에 처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어른이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사이버폭력이 발생해도 어른에게 알리는 것을 꺼렸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어른들이 사이버폭력을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에 기인하고 있었다.

말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C지역)

어른한테 말한다고 해서 확실히 해결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 반장이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했는데 왕따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장까지 따돌림을 당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C지역)

사실 사이버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신고되는 경우는 그보다 더욱 적다. 이는 학생이 직접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자식이 핸드폰을 조심성 없이 사용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더러 피해 학생을 먼저 혼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B지역)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사이버폭력에 둔감하게 대처하셔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봤다. (B지역)

반대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로 교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부모에게 알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 아동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어른에게 ‘무조건’ 알려줄 것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결과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어른에 대한 신뢰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조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와이파이셔들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일을 아빠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학교에 연락해서 와이파이 셔들을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 와이파이를 학교 전체에 설치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심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사소한 말들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 번 놀리거나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점점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면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I지역)

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1)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우선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폭력이라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아동들은 어떤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할 규율 등을 정책적으로 의무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하는데 이게 사이버폭력인지 설문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욕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폭력이고 아닌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C지역)

사이버상 올바른 행동 및 아동을 사이버상에서 대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율 등을 제도로 정책으로 의무화하기 (I지역)

정치인들에게 사이버폭력을 하는 이들 중 잘못이란 것을 모르는 이들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막는 법이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G지역)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나쁜 짓’을 용인받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들은 처벌을 강화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대부분 사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해자들이 또 사이버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G지역)

정치인들에게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처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벌이 약하면 나쁜 짓을 벌이고도 처벌이 약하니 ‘더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력하다면 나쁜 짓을 하고 처벌을 받았을 때 강력하니 더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사이버폭력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F지역)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옵니다. 저의 생각은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도 그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면 피해자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인터넷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사이버폭력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데, ‘단순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한 사람이 공포감에 떨고 그 순간만은 너무 무서워서 자살 충동까지 생각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애초에 가해자가 시도를 못 하게 만들거나 보안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더 빨리 검거하고, 과태료는 더 올리고 징역도 더 강력하게 3년 이상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F지역)

정부에서도 법을 더 강화시킨다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사이버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D지역)

아동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나 신고자가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인터넷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디지털장의사’의 제도적 활용, 또래 상담사를 통한 익명 상담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괴롭혀지는 아이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고했다가 괜히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친구 관계만 더 안 좋아질까 봐 하지 못해 방조자가 된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G지역)

디지털 장의사를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고용하면 어떨까? (중략) 피해자가 좁은 스크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인터넷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과거들을 지워 주는 거야. 만약 피해자가 사이버폭력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면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피해자를 향한 욕설이나 비방들을 없애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비용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 해준다면 피해자는 스크린 속에서 나와 세상을 마주 볼 수 있지 않을까? (F지역)

저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찢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또래 상담자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래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사람들은 또래 친구들입니다. 피해학생들의 상처 중에는 어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 아동들이 상담하고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면 마음속에서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또래 아동 상담사는 꼭 전문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G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아동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른의 관점으로 만든 정책보다는 직접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아동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후에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를 먼저 이해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볼 땐 하나의 문화나 놀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어른들의 관점과 생각만 투철시킨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아닌 시대를 따라가는 정책을 펼쳐야 요즘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어른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게 함으로써 보다 실용

적이고 유효한 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건 안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 안 되는 이유와 그로 인해 피해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지역)

(2) 학교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학교와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이버폭력 관련 방안으로 가장 많은 아동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꼽았다. 현재도 학교 차원에서 사이버폭력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내용이 반복적이고 교육 방법 또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아동들에게 지루한 수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방식이 아동들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점은 반복된 교육을 했을 때 늘 있는 것처럼 성의 없는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B지역)

정부에서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내용이 배웠던 게 많아서 듣기 지루하고 앉아 있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도 재미있고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G지역)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끔씩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해 수업을 할 때 애들은 처음에는 잘 집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집중을 잘 못 하게 됩니다. 집중을 못 하게 된다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게 되고, 사이버폭력을 잘 예방하지도 못하겠지요. 그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깜짝 퀴즈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게 만들어서 수업을 잘 들어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무슨 종류의 사이버폭력이 있는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사이버폭력을 잘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F지역)

아동들은 예방뿐 아니라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나 가해자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거나 알리는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이유가 ‘말하기 무서워서’ 또는 ‘신고 절차가 귀찮거나 걱정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인지시켜주세요. 증거를 남기는 것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해주시면 아이가 다음번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알리거나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지역)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조심하더라도 외부 요인, 즉 가해자가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한다면 피해자는 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 사이버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음에도 가해자가 사이버폭력을 계속했을 때 아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같은 학교의 학생, 익명의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이버폭력의 주동자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I지역)

사이버폭력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알려주어 신고 활성화시키기 (G 지역)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 신고를 위한 상담 공간을 마련하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을 비밀로 진행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공개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며,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했을 시 2차 가해가 행해 질까 두려워 제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차 가해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피해자의 익명 상담 진행, 가해자와의 거리두기 등 피해자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외부에서 괴롭힘을 계속한다면, 이 조치가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동은 학교 내외 모든 곳에서 안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에서는 아동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조치를 고안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많이 괴롭히기 때문이다. (G지역)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정신적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사이버폭력은 결국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은 언제든 SNS나 채팅 메신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을 해결하려면 먼저 학교폭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이 SNS나 카톡 등으로 변질 수 있으니까요. (G지역)

학교폭력이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 (A지역)

(3)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사이버폭력 관련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우선 유해사이트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누구나 사이버폭력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유해한 웹사이트나 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에 접속할 수 있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웹사이트나 앱을 막는 수 밖에 없습니다. (I지역)

아동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험할 만한 사이트, 웹 등을 확실히 파악 후 차단하기 (J지역)

앱 자체에 사이버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신고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꼽혔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메시지 옆이나 카톡 옆에 놔두면 좋겠습니다. (A지역)

단체 채팅방에서 그 방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려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를 허용하냐고 물어봐 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능이 생긴다면 추가 허용을 거절하고 일단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고 말을 해서 사이버폭력까지 가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다. (F지역)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많은 게임이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한글과 영어를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비속어 등은 쉽게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터링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강화하고 카카오톡 등의 채팅메신저에도 비슷한 기능을 생성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채팅 필터를 강화시키고 한글 욕을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쓰면 채팅이 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욕이나 비속어가 가끔 채팅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B지역)

카카오톡에 클린봇 생성 (E지역)

사이버 환경 모니터링 강화 (J지역)

(4)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른들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약 어른이 편견을 가지고 아동을 대하거나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에도 어른에게 알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아동들은 어른들이 아동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이든, 정치인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모두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피해 학생들을 대한 편견은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더욱 숨기게 되

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G지역)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이 당한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지 않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 피해 학생들은 빨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G지역)

아동들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주기적으로 아동의 인터넷 생활을 들여다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른의 눈에 장난이나 사소한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아동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며,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아동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라서 어른들이 피해의 정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B지역)

학교에서나 학원, 집에서 어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는 하시지만 어른의 상황에 맞는 관심만 가져주는 것 같다. (C지역)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이여도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지역)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잘 들어주세요. 그냥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G지역)

아동들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가끔씩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A지역)

부모님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아주 가끔이라도 신경 써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해 잘 알려주면 좋겠다. (D지역)

어른들이 가끔씩 아이들의 대화 내용을 검사하거나 자주 비공개로 설문조사를 해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검사한다. (E지역)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가정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아동들은 양육자가 아동의 인터넷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주고, 평소에 자녀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F지역)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SNS 등을 사용할 때 중간중간에 사이버폭력을 당하는지, 사이버폭력을 행하는지를 재차 물어봐서 그 아이에게 사이버폭력은 이런 것이며, 이런 짓은 사이버폭력이나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과 사이버폭력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똑같이 사이버폭력을 같이 행하면 안되고, 그때는 부모님이나 주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F지역)

(5) 아동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개개인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접근하기 전에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르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진 사이트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호기심은 곧 위험이 됩니다. (B지역)

아동들이 사이버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그럴 시에는 부모님께 알리도록 하고 만약 부모님께 알릴 수 없는 내용이라거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라면 이 사이트가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다면 들어가는 게 맞고 부적절하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 (H지역)

아동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행위를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은 가벼운 장난이지만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심코 저지른 폭력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아동들은 사이버 공간에

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3초만 생각해보라는 성폭력 관련 포스터처럼 폭력을 하기 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C지역)

자신은 가볍다고 시작한 장난이 순식간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사이버폭력을 가하지 말고. (F지역)

3인칭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이란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물기라도 하지만 정신적 학대는 아물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의 남은 30~40년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G지역)

사이버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동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 또한 언제든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가상 사이버폭력 앱을 실행해본 아동은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며 '가슴이 덜컹'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사이버폭력 가상 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를 보내고 욕설이 오는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H지역)

나도 언젠간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의 친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C지역)

다른 아동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또한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방관자는 처벌이 없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고 해도 폭력 가해자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G지역)

아동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하였다.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도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생길 수 있다. 결국 상처를 입히는 것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이므로, 개인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보였다.

저는 아동들이 사이버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

각합니다. SNS를 아예 안 한다거나 법 강화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폭력을 행할 사람은 행할 것입니다. 아동들의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F지역)

다른 아동들에게는 서로의 다른 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I지역)

여러분 사이버상에서는 비록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이고, 나의 모습이나 신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양심을 속이면서 우리가 비속어 또는 따돌림을 하면 상대방의 인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인생과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지역)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을 목격했다면 이를 방관하지 말고 다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신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혹시나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학생을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F지역)

혹시나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공공대지 말고 주변 어른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F지역)

아동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고민하지 않고 어른들 전문 기관에 알린다면 더 큰 일이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이버폭력을 당한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지역)

4. 결론 및 논의

1) 양적연구 결론 및 논의

폐쇄형 설문조사에 대한 아동의 답변을 부모, 친구관계 및 인터넷 이용 특성,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경험 및 피해 특성,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혐오표현 및 성착취물 시청, 사이버폭력 원인 및 대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와 평일 및 주말/휴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었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온라인 게임이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의 이용도 빈번하였다. 남자아동들은 90%가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였고, 여자아동들은 60~70%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에서의 위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는 인터넷 위험행동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 시간과 서비스의 차이, 그리고 부모 관계와 인터넷 상 위험행동의 부적 상관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25~30%를 차지하여, 사이버폭력 교육이 아동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사이버따돌림 피해경험을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많이 경험하였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자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는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피해가 많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온라인 게임 이외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여학생들의 피해가 많았고, 이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피해도 남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는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모두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였지만, 이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스토킹, 성폭력, 따돌림 피해는 중학생들에게서 월등히 많이 보고되었다. SNS에서의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피해가 많았다. 중학생들이 특히 사이버폭력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동들이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성별, 학교급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여학생들은 선배나 후배로부터의 사이버폭력 피해가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폭력 가해에 있어서도 언어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이버 따돌림 가해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가해는 남자아동이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혹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은 중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초등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자아동은 사이버폭력 가해 사실을 주변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여자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가해 행동에서 역시, 성별이나 학교급이 어떤 행동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가해 이후 누구와 가해 사실을 공유하는지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 보다 15%이상 많았고,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발생 이유를 가해자가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나쁜 생각, 행동을 하기 때문, 혹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대책도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의 순서로 선호하였다.

2) 질적연구 결론 및 논의

개방형 설문조사에 대한 아동의 서술형 답변을 ‘사이버폭력 현황’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질적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을 고립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채팅 메신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기존 채팅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주로 피해자를 채팅방에 가두어 욕설을 퍼붓거나 홀로 남겨 놓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여기에 괴롭힘을 전시한다는 특징을 더한다. 타인에게 공개된 곳에서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누구나 가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가해가 발생하면 이를 또다시 전시하면서 피해자를 고립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결국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익명 질문을 기반으로 한 ‘에스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스크는 차단, 삭제 기능과 계정 이용자가 지정한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단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질문 내용을 모두 읽을 수밖에 없다는 맹점을 가진다. 또한 일부 에스크 서비스는 이용자가 답하기 전에 질문이 타인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단체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집단적 괴롭힘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대처 방안은 ‘어른에게 알린다’와 ‘알리지 않는다’로 나뉘었다. 어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의견의 기저에는 어른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어른이 사이버폭력에 둔감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오히려 어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고자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목할 점은 해당 아동이 어른에게서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말한 아동 중 일부는 어른에게 문제를 알렸을 때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커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어른이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향후 사이버폭력 발생 시 아동의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동시에 아동들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의 인터넷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알리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도 하였다. 아동이 어른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없애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셋째, 사이버폭력의 기준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위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인터넷, 스마트폰 등)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따돌림·갈취·강요, 신상정보유출 등을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이는 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지루한 수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법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법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이 교내 학생으로 한정되고 처벌은 교내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최진웅, 2022). 이로 인해 아동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5. 제언

연구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폭력 관련 이론적,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폭력 유형과 폭력 공간(이용 서비스) 등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들이 특히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와

경험을 많이 보고한다는 점, 온라인게임에서 남학생들의 가해와 피해가 많다는 점,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에서 여학생의 피해가 많다는 점, 메타버스에서는 초등학생의 피해가 많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아동청소년의 개별 특성 및 인터넷 이용 행태에 따른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이해할 수 있겠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효과적인 대책 및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아동들이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신고하거나 상담할 곳을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이 안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많았다.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교육의 내용이 반복적인데다 수업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어 지루하고 집중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핀란드는 2006년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인 키바 코울루(KiVa Koulu)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괴롭힘의 방관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론을 교육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토론, 협동과업 수행, 역할극 등의 총체적인 행동 패키지를 제공한다(김병찬, 2021). 키바 프로그램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내 실정에 적합하되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인터넷 사용 환경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하위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사이버교육의 강조점을 세분화하고, 개별 아동에게 보다 관련이 깊은 예시와 상황을 제시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 및 사후대처 과정에서 아동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가정에서 독려하고, 학교에서 교육 및 또래집단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배우고 연습해 보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교사도 단순히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이버폭력 피해 혹은 가해가 발생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함께 문제상황을 대처해 갈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어른들을 믿고 신뢰하여 필요한 도움을 걱정없이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나 교사들이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발생 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대하기보다, 아동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식과 태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교육도 필요하겠다.

넷째, 사이버폭력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아동 간에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인이 가하는 사이버폭력은 유형에 따라 각자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교묘한 형태로 위법적 구성요건을 피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새롭게 생겨나는 유형의 사이버폭력 처벌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다(최진웅, 2022).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사이버폭력 피해기록물 삭제 등의 피해자 구제 조치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조치가 지자체나 정부 부처의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별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으로 지목된 ‘에스크’ 서비스 중 국내에 업체를 둔 ‘Asked 익명질문’의 경우 이용약관에 청소년보호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현재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서비스인 ‘푸송 ASK 익명질문’은 메인화면에 유해성 질문을 차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약관이나 방침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에스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각자의 규제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신고 및 삭제 등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율 방침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가해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쉽게 이용 가능한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이후 플랫폼 사업자의 사후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찬 (2012).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KiVa Koulu) 프로그램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최진웅 (2022).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197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토 론 문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박주한 (푸른나무재단 예방교육본부 본부장)
유희주 (용인백현중학교 3학년)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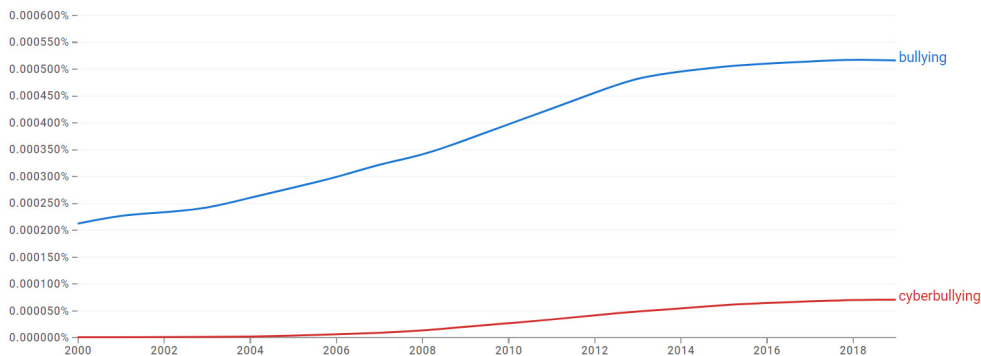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와 전망 -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인간이 지닌 공격성이나 폭력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주제다. 실제로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로제 다둔(Roger Dadoun)은 인간을 폭력적 인간이라는 의미로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s)라 칭하기도 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폭력에 의해서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무분별한 폭력은 항상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며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하는 악으로 규정되어 왔다. 사회가 문명화되어 가는 추세와 더불어 폭력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진다. 과거에는 큰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던 작고 사소한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근절하고 예방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 북스의 NGram Viewer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영어로 발간된 책 중에서 학교폭력을 의미하는 Bullying과 사이버폭력을 의미하는 CyberBullying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0년 대비 2019년에 Bullying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은 1.43배 증가했다. 반면, Cyberbullying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책은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2006년 기준으로 무려 24배나 급증했다. 정보통신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 Cyberbully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 발간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Bullying 및 Cyberbullying 관련 서적 발간 빈도

사이버폭력은 흔히 ‘사이버(인터넷, 스마트폰 등)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사이버 언어 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따돌림·갈취·강요·신상정보유출 등이 대표적인 사이버폭력의 유형이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보면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7%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5%p 하락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0.7%p 증가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0.6%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푸른나무재단 조사 결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7%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1.6%,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2.9%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4.4%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는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은 23.4%, 가해 경험률은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는 사이버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략 10명 중 3명의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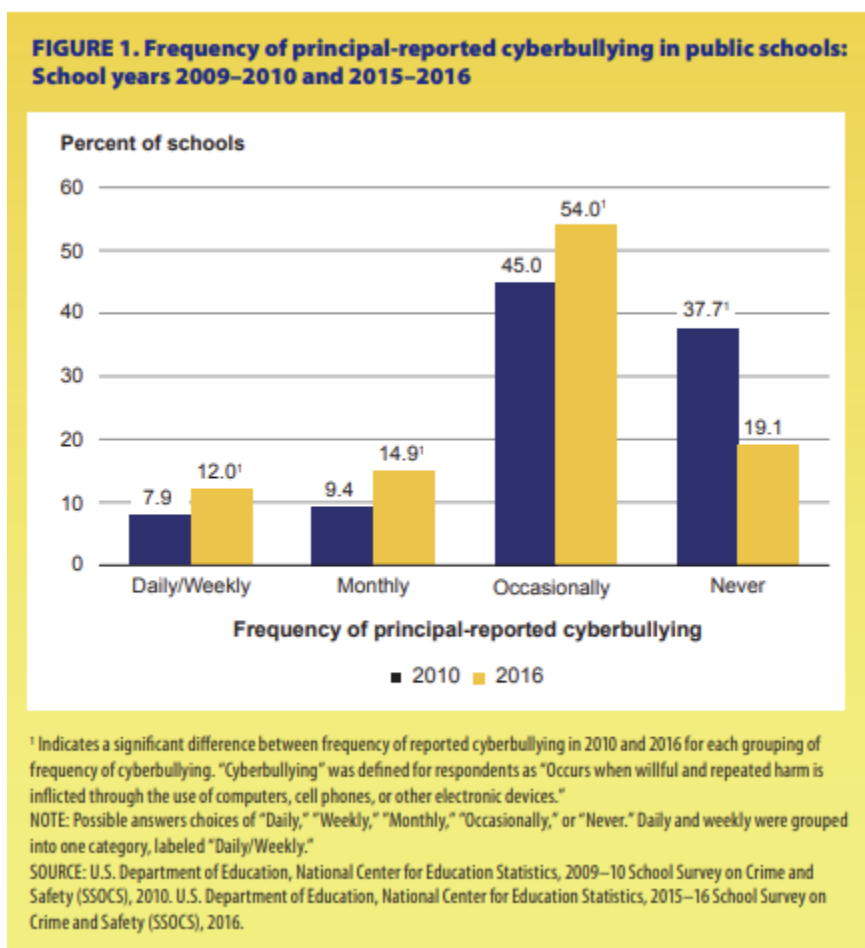
이처럼 사이버폭력 실태와 관련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폭력 경험률을 산출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여부를 먼저 묻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 해 가·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을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로 산출한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 중 하나

라도 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도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푸른나무재단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사이버폭력은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이버폭력 실태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사이버폭력이 정확히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영어로 표현된 사이버불링은 특정 집단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불링 현상을 처음 확인한 스웨덴 의사 하이네멘의 정리에 따른 것이다.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는 현상은 Cyber Aggression, Cyber Harassment 등이 있다. 디지털 혐오 표현도 특정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이버불링과 구분된다. 따라서 현재의 사이버폭력 경험을 조사할 때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이버불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134명중 피해 경험자 367명의 27.5%인 119명 정도만이 실제 의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27.5%와 10.5%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링 현상을 처음으로 규정한 올웨우스에 따르면 불링은 지속성, 의도성, 힘의 불균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조사시 가·피해 경험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사이버폭력 경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가해자가 1회 가해했지만, 제 3자에 의한 복사와 불여넣기를 통해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사이버폭력을 적용한다면 현재 국내외에서 조사하는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아무래도 현재의 비율보다는 훨씬 낮아진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지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기법을 통해 사이버폭력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은 현상을 매우 축소해서 볼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 교육부가 2010년과 2016년 두 해에 3,000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범죄 및 안전에 대한 학교 조사(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폭력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는 학교는 2016년에 10개 학교 중 2개 학교에

불과했다. 2010년 37.7%의 학교가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결과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의 26.9%는 ‘매월’에서 ‘거의 매일’ 사이버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생이 보고한 사이버폭력 실태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학생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는 현실보다 축소하여 보여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미국 초·중·고등학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사이버폭력 실태가 갖는 의미 보다 사이버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은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힌두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복수 응답으로 보고한 피해 양상은 “자신에 대한 좌절감(43%), 분노를 느꼈다(40%), 학업 부진(32%), 슬픔(27%), 별다른 심리적 문제를 못 느낌(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사이버폭력 경험과 연관된 자살 충동 및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중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중학생보다 자살 충동뿐만 아니라 자살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이버폭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대중화가 사이버폭력의 발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폭력성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표된 사이버폭력 관련 논문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북미와 유럽에서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80.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이들 지역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 지역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가 발달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사이버폭력 관련 논문이 341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더욱 다변화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이버폭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ASK나 블라인드와 같이 신종 익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등이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폭력도 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특정 행위는 다양한 사이버폭력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모 등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처럼 사이

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단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을 하며 괴롭히는 때카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단순히 청소년기에 겪는 성장통이며 성장하는데 피할 수 없고 교훈적인 측면이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많다. 또한, 사이버폭력을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소수의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이며, 청소년의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할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도 팽배하다. 청소년 간의 갈등은 통과의례이며 문자 등을 통한 괴롭힘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인식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사이버폭력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SNS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괴롭힘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폭력에 동원되는 플랫폼도 다양해질 것이다. 선제적으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성인에 대한 신뢰도가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대응법과 예방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토론문

- 아동·청소년 사이버폭력문제 대응방안 -



박주한 (푸른나무재단 예방교육본부 본부장)

1. 글로벌 디지털 기반 이용현황

유엔국제전기통신연합(ITU)¹⁾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19년 41억명(세계인구의 54%)에서 2021년 49억명(세계인구의 6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선동적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범죄가 크게 증가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²⁾ 한편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모두 젊을수록, 고학년 일수록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층은 고령층 보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³⁾ 최근 선진국에서는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보유 연령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신흥 경제국에서는 여전히 젊은 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했던 디지털 역기능 현상 또한 신흥 경제국의 디지털 문명 발달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역기능인 사이버폭력 또한 양상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유엔국제전기통신연합(ITU) : UN 산하 IT 분야 전문 국제기구, 191개국 회원국 활동(1865년 설립) (ITU : Internet uptake has accelerated during the pandemic).

2)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As Internet user numbers swell due to pandemic, UN Forum discusses measures to improve safety of cyberspace(2021.12).

3) Pew Research Center : Smartphone Ownership Is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but Not Always Equally (2019.2.5.).

2. 대한민국 디지털 기반 이용현황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대간, 소득 계층간 인터넷 또는 핸드폰 사용격차 가장 적고, 세대간 SNS 사용률 격차도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⁴⁾ 대한민국 전 연령이 온라인 기반 생활을 영위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역기능은 아동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 합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대한민국 디지털 기반 이용현황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98%로 나타났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0대 청소년의 일주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27.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교육이나 학습, 여가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통계청, 2021).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90%를 상회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를 통제하는 것보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현황

주제발표 자료 중 <표1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비율을 보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피해를 주었냐는 질문에 전체 1,134명 중 608명, 54%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2021년 학교폭력 피해율은 7%로 나타났고, 이중 사이버폭력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습니다. 2019년 5.3% 대비 6배, 2020년 16.3%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제발표 자료와 유사하게

4) Pew Research Center : In most advanced economies, smartphones have been ubiquitous among young adults for years, but older cohorts are catching up (2019.2.4.).

메시지 기반 플랫폼과 SNS 플랫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최근 사이버폭력 피해 양상이 다양해 졌다는 것입니다. 배달앱을 통한 대량주문 피해, 전통 킥보드 대리결제, 중고거래 강매/협박 등 디지털 플랫폼 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명을 경험한 현생 인류(Born-Digital)에게 디지털 환경은 현실세계와 비견되는 또 다른 세계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푸른나무재단 상담사례 중에 또래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누구와 관계가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 '어디서요'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현실세계와 디지털 세계 중 어느 곳인지 묻는 질문 이었습니다. 현생 인류에게 현실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얻는 효능감과 디지털 세계의 효능감은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동의 규칙이 필요 합니다. 시민성(市民性)의 정의가 어떤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이라고 보았을 때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세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즉,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시민의 지위에 걸맞은 자질과 행동 양식, 기질, 가치관 등으로 보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규범 또는 윤리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능력' 등의 가치지향적인 개념보다 인위적 개입, 즉 교육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5. 아동·청소년 사이버폭력문제 대응방안

첫째는 아동·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을 살

해보면 ‘사이버폭력’의 개념은 제2조 정의에서 ‘사이버 따돌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⁵⁾의 정의는 주로 심리적 공격,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물리적 폭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돌림, 혐오, 배제 등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계적 폭력의 개념을 포함하여 재정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이버괴롭힘, 명예훼손, 따돌림, 스토킹, 그루밍 등 새로운 사이버폭력 유형의 개념을 반영하여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 및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학폭법 제15조에 명시된 예방교육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일부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는데 사이버 폭력은 비대면성, 즉시성, 익명성 등 오프라인 폭력과 다른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의 특수성과 하위 유형을 고려한 별도의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 재정립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사안처리 절차,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등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명을 경험한 Born-digital 세대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본권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회성 대집단 강의식 교육이나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일방적인 정보전달 교육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사이버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편 타당한 새로운 규범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급 단위 교육 의무화, 강사 자격규정,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육방식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매체를 통제하는 방식보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 더불어 사이버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가피 할 경우 이를 초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피해아동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디지털 피해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피해기록 삭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배상 등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의 쟁점 중 하나는 디지털 피해아동 일상회복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입니다. 디지털 피해를 입힌 가해자, 가해 행위를 촬영한 제작자,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책임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피해 일상회복’의 기준도 필요 합니다. 현행 학폭법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의 자원, 학교장의 의지 등에 따라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디지털 피해아동 사후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회복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단위로 회복 수준을 전수조사 하여 이를 공표해야 피해 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 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Top10 기업 중 절반 이상이 IT 기업이며,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주제발표에서도 SNS,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매체에서 높은 피해 경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 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사이버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매번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 가입자 보호 방안, 플랫폼 사업자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보호 및 디지털 피해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 또한 관련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민간 · 기업 · 정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토론문



유희주 (용인백현중학교 3학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는 더 낮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현대 사회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 일상에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가 부쩍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활성화된 온라인 생활들이 이 변화를 가속화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며,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전자기기로 필기하고 발표하는 모습은 요즘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없을 땐 어떻게 지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주변 친구들도 동의하는 이야기이며 아마 많은 아동들도 저와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이버 공간은 현대 아동들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SNS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는 현대 아동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동들 간 대부분의 소통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들이 만나고, 놀고,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장소는 놀이터나 학교 등 현실 공간이었습니다. 대화나 다툼 등도 현실에서 만나 서로의 얼굴 표정을 보며 감정 표현을 주고받아 사회성을 길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지인들과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이 장점들이 역으로 나쁘게 이용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는 지금부터, 이 자리에 참석한 아동 대표로서, 제가 보고, 들었던,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사이버 공간의 매우 빠른 정보 전달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소문 등이 순식간에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됩니다. 물론, 빠른 정보 전달력은 아동 간의 활발한 소통에 도움을 주지만, 이 소통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익명 게시판을 통해 친구를 비방하는 일종의 사이버 명예훼손인 일명 ‘저격 글’, 잘못된 정보로 아동들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 등이 현재 아동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곧 채팅창 속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체 채팅방에 한 친구를 초대해 지속적으로 헐박, 욕설, 조롱 등을 하는 사이버 따돌림은, 스마트폰 화면 속 고통 받는 친구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며 화면 너머로 나의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안도감에 기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SNS의 활성화 등으로, 속어의 사용의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아동들이 많아 사이버상에서의 언어 폭력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성을 잘 자각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자신들의 SNS에 다양한 정보를 노출시킵니다. 재학 중인 학교, 나이,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사이버 강요나 갈취,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겠다는 헐박을 한다면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은 스스로 이런 사이버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들은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동들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화됩니다. 학교에서 사이버 범죄 대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어른들도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사이버 폭력을 단순한 형식적 교육으로 대처법을 배운 아동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이버 폭력의 해결을 위해선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보다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에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농담이나, 한두 번의 속어 사용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익명성에 기대 폭력을 정당화하던 아동들에겐 화면 너머에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음을 일깨워주어야 하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와 말 한마디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마치 빛처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상현실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는 요즘엔 더욱 나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정확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곧 아동들이 스스로 사이버 폭력을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사회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금의 아동들이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닌 어른으로 자라나 지금보다 더욱 더 성숙한 사이버 공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권역별 사례발표



권역별 사례발표



백재희, 윤원형 (LENS, 경기 2권역)

학교 밖 청소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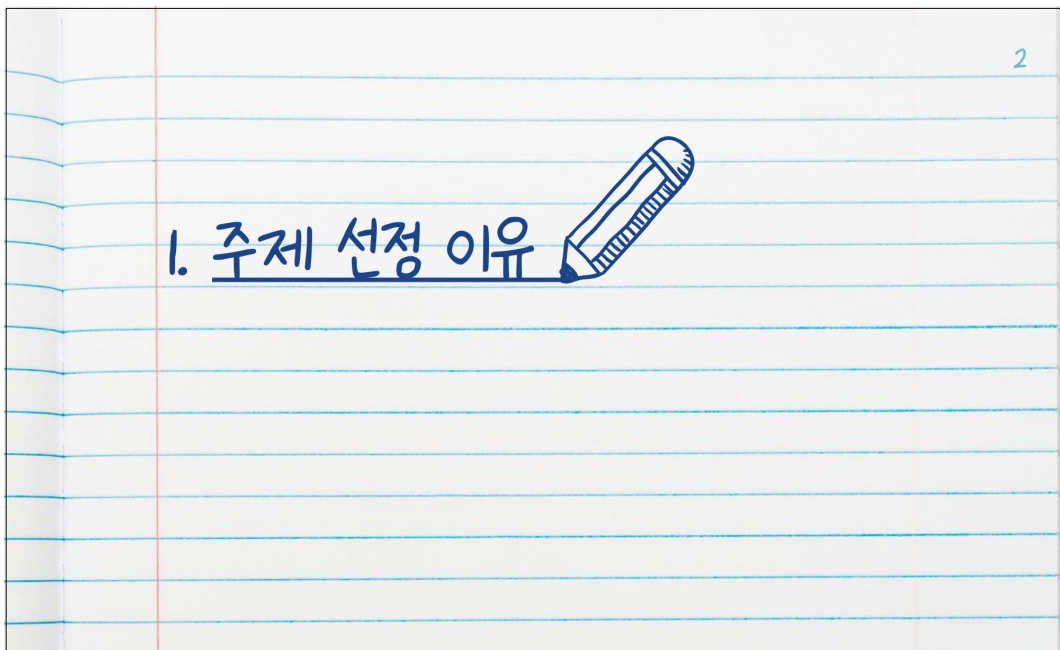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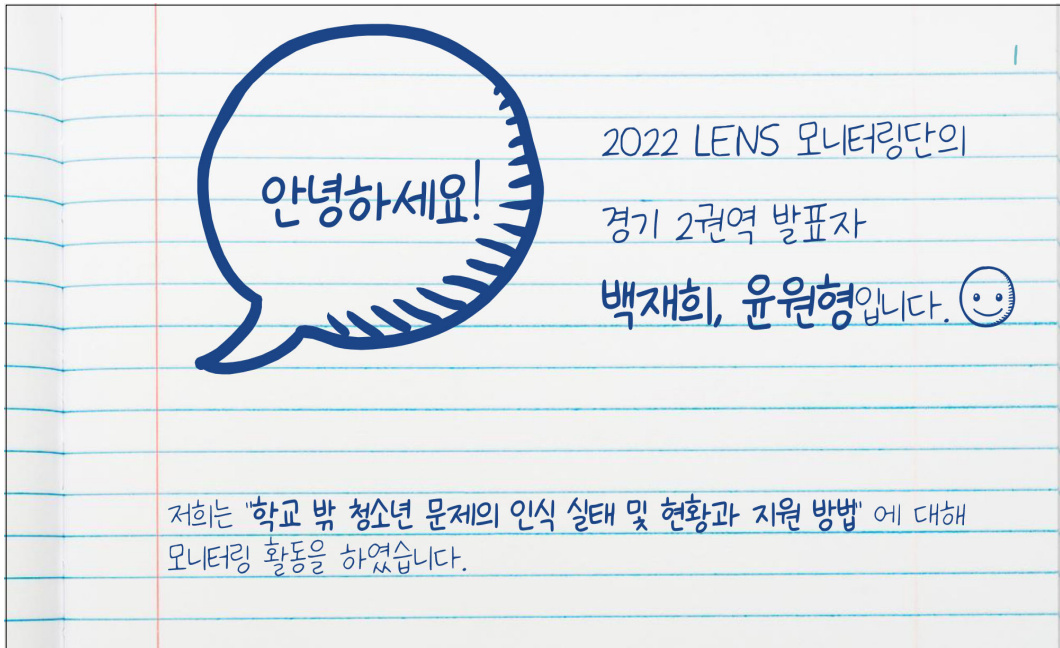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경기2 권역

발표자:



백재희, 윤원형







주제 선정 이유

3

-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 ✓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 ✓ 그들의 안전한 성장이 저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의 현황,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4

2. 9~10월 활동 개요





9~10월 활동 개요

5

9 월

10 월

- 8/13(토): 첫 번째 ZOOM 회의:

선정된 주제에 대한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4개의 소주제로 분류함.

- 8/27(토): 두 번째 ZOOM 회의:

각자 맡은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설문지의 질문 내용 정함.

- 9/11(토): 세 번째 ZOOM 회의:

설문조사 답변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최종

활동 보고서를 작성함.

- 9/24(토): 네 번째 ZOOM 회의:

2차 활동의 조사를 4개의 소주제로 분류함.

- 10/8(토): 다섯 번째 ZOOM 회의:

각자 맡은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캠페인 아이디어에 대해 토의함.

- 10/22(토): 여섯 번째 ZOOM 회의:

나만의 캠페인 활동을 공유하고 최종 활동

보고서를 작성함.

6

3. 1차 활동 조사결과 & 설문조사





1차 활동 - 설문조사 질문과 답변

7

* 소주제 1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1-1)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소주제 2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2-1)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생각하나요?

(2-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소주제 3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3-1)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3-2)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소주제 4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사업 / 지원정책에 대하여

(4-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부사업 또는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4-2) 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차 활동 - 설문조사 질문과 답변

8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1.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3.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4.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부사업 또는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6. 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7.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생각하나요? 8.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9.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10.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1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부사업 또는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12. 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13.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생각하나요? 14.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설문조사 질문 15.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16.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차 활동 -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9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조사

- 1)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대학 준비**하면서 학교를 그만둔다.
- 2)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다.
- 3)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둔다.
- 4) **가출**해서 청소년쉼터에 있는 경우
- 5)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이 대다수.
- 원인으로 **가정 형편, 공교육과 안 맞아서** 라는 답변이 대다수.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지원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대다수.



1차 활동 - (2)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10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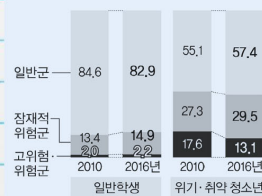
- 2017 경찰청 자료: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3,877명에서 2016년 12,80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소년범중 학교밖 청소년은 2012년 전국 **35%**에서 2016년 **42%**로 증가
- 부산, 강릉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성폭력 노출 위험이 높음

- 전국 단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고위험군 위기·취약 청소년 10명 중 2명이
아르바이트 등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행 피해

청소년 위기수준 분포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차 활동 - (2)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11



도박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2017~2021년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19세)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 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 이상
-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학생 대상 상담실적 비율은 2%가 되지 않음.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합계	83	71	72	91	64	381
재학중	45	31	33	43	37	189
학교밖	38	40	39	48	27	192
학교밖비율	45.8%	56.3%	54.2%	52.7%	42.2%	50.4%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합계	1,513	2,339	3,400	3,126	2,572	12,950
재학중	1,499	2,286	3,309	3,185	2,538	12,817
학교밖	14	53	91	59	34	251
학교밖비율	0.9%	2.3%	2.7%	1.9%	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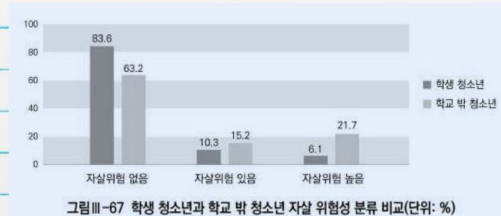
[청소년 도박관련 상담 실적]



1차 활동 - (3)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12

- 2022년 기준, 학교를 다니는 학생 10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남.
- 반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적어도 3명은 우울, 불안, 자살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구체적으로 35%는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 29%가 경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겪고 있으며 36.8%는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었음.





1차 활동 - (4)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13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그 외의 여러 가지 자원:

-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취업을 위한 훈련비의 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그 밖에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자립을 위한 비용의 지원

14

4. 2차 활동 조사결과 & 캠페인





2차 활동 - (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15

[1]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만15세~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
- 단기(3~6개월), 장기(6개월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처를 **알선**하고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 훈련기관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함.



2차 활동 - (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16

[2] 교육부의 지원사업

1)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시범운영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차 활동 - (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17

[3] 시도 교육청의 지원사업

2019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진행 중

1) 서울, 대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 운영

- 목적: **개인별 맞춤형 학습, 상담, 진로**를 지원

2)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 시행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복지요건** 조성

3)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동행카드**를 실시하여 10만원씩 연 5회까지 충전

-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 식비** 등을 보태주기 위해서

- 이외에도 **검정고시 및 진로진학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



2차 활동 - (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18

[4] 시행기관 간 협업

- 학교,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등이 협력 중임.

- 각 학교에서는 학업 중단 1주 이내에 교육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여부를 고지하고, 교육청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꿈드림 정보망**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연계함.

- 이후 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연락함.

- 결창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연계함.



2차 활동 - (2) 지원 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9

[1] 대상자 발굴의 문제

-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음. 학교밖 청소년은 약 39만명이나, 지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2019년 48250명 정도에 그침.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참여하기 힘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임.
- 해결방안: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소외된 청소년 없이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차 활동 - (2) 지원 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20

[2] 미흡한 성과의 문제

- 문제: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는 점점 늘고 있지만 취업, 진학, 학업 복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음.
- 해결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평가가 필요함. 평가하여 가장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해 확산함. 평가 기준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타당성, 공평성, 호응성, 적합성이 있음.



2차 활동 - (2) 지원 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21

[3] 자원격차 해소의 필요성

- 문제: 청소년의 거주지역, 혹은 지자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해결방안: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른 청소년들과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함. 다른 학생들과 평등하게 대해주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차 활동 - (2) 지원 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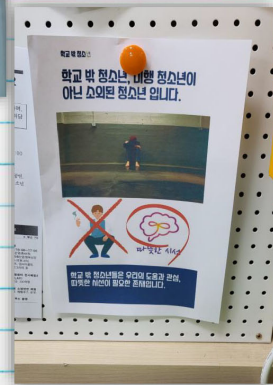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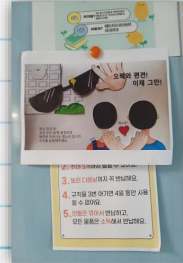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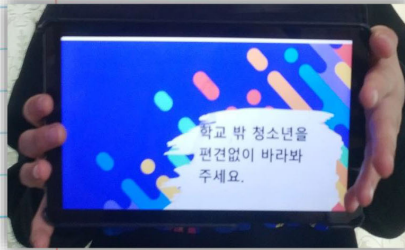
[4] 부처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

-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 및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나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미흡함.
- 해결방안: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위원회가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정부의 관계 부처와 민간단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2차 활동 - 나만의 캠페인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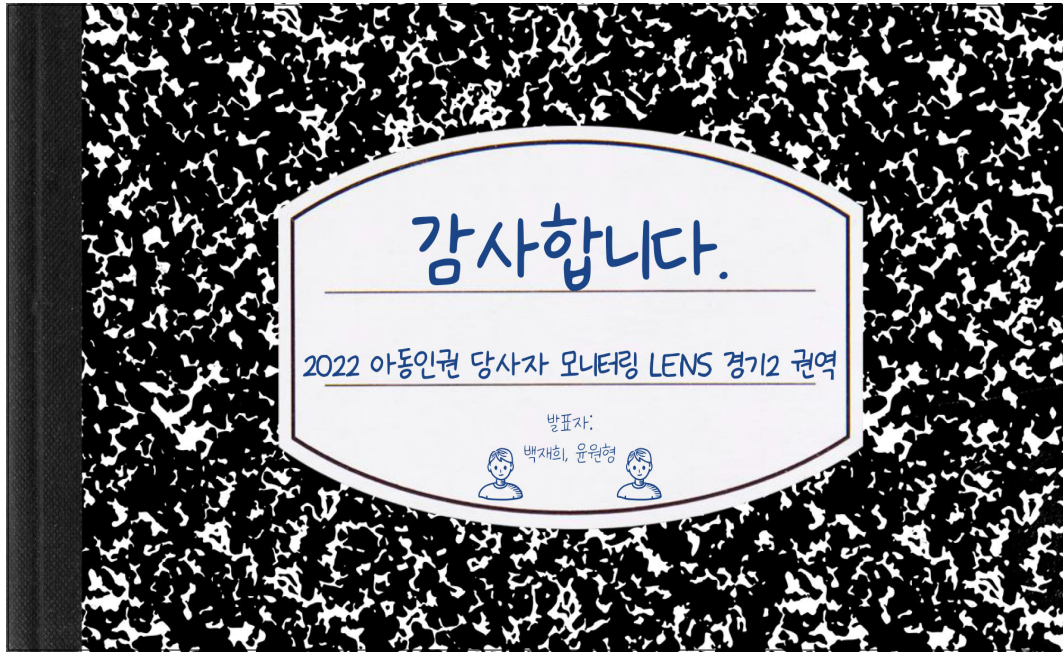
24

5. 느낀 점 & 모니터링 활동 소감



	느낀 점 25
	남동은: 학교를 그만 둔 뒤 아이들이 경험하는 선입견, 편견, 무시가 충격적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도 안하고 선입견을 가져선 안된다.
	백재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협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을 제대로 알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윤원형: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보호 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더 효과적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장서원: 부산, 강릉 청소년 폭행 같은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만 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활동 소감 26
	남동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듣기만 하고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LENS 활동 덕분에 좋은 배움을 얻었다.
	백재희: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직접 설문하고, 조사하고, 회의하니까 배워가는 과정이 더 즐겁고 뿌듯했다. 하지만 비대면이라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윤원형: 학교에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아동들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대해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고, 내 주변에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아동은 없는지 더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서원: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역별 사례발표



김민서, 성리교 (LENS, 부산 경남 권역)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 LENS - 결과보고

부산 경남 권역

나이에 맞지 않는 사이트 (성인, 도
박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지금까지의 활동정리

■ 권역주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인,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사이트에 대한 규제

■ 8~9월의 활동 :

zoom회의 및 SNS단체대화방을 통해 조사대상 및 방법, 질문 정하기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10월의 활동 :

설문조사 진행 및 캠페인 카드뉴스 선정 및 홍보

■ 11월 활동 :

결과 정리 및 포스터 만들어 인스타그램 게시



9월 활동보고서

1. 주제 조사 및 방법 정하기

- 네이버폼을 통한 설문조사

- 대상 : 초,중,고등학생 50명

2. 설문조사 문항 만들기

- 각자 설문조사 내용 5개씩 작성하여

그 중 10-15개 선별

-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으로 제작

설문조사

나이에 세 상별 ☐ 미 ☐ 초 ☐ 중 ☐ 고

* 문항을 읽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문항을 ☐ 해당주제로

1. 어떤 중, 고등학생이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2.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3.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4.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5.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6.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7.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8.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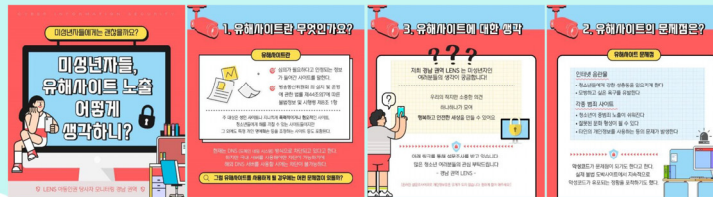
9.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나요?
☐ 미 ☐ 초 ☐ 중 ☐ 고



9월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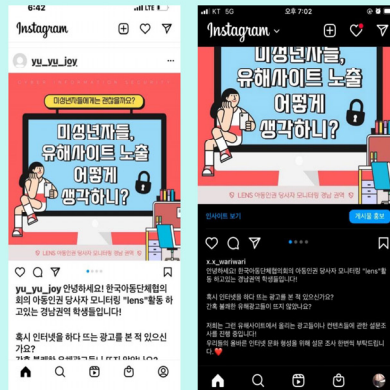
3.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인스타 그램이나 홍보물을 게시함 : 캠페인카드뉴스 제작



9월 활동보고서

- 주변 지인들을 이용한 홍보활동
- 지인 친구들에게 공유함



10~11월 활동보고서

1. 10월 한달동안 설문조사 진행

- 네이버폼으로 제작된 설문을

주변 지인들에게 요청함

2. 11월 설문조사 결과도출

청소년 유해사이트 노출에 대한 생 각

청소년 유해사이트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베팅사이트 등) 청소년의 나이에 알지 못하는 자국적인 사이트 또는 광고가 많아 노출되고 있는 그 결과로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을 청소년이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3월 3일까지 설문조사에 응하시면 설문조사에 응한 분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응답 기간 : 2022.09.08(목) ~ 2022.10.31(월)
※는 필수항목입니다.

나이 *

선택

성별 *

☐ 여자
☐ 남자

1.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0 / 15 응답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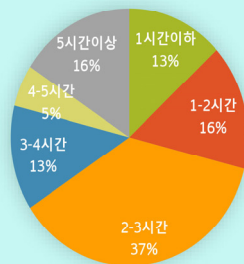
1시간이하

가까 form.office.naver.com

설문조사

1.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사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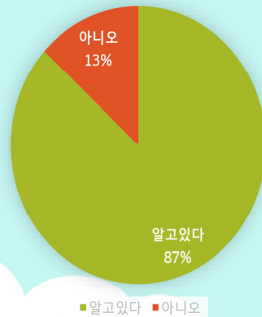
■ 1시간이하 ■ 1-2시간 ■ 2-3시간
■ 3-4시간 ■ 4-5시간 ■ 5시간이상

사용시간	응답수	응답률
1시간이하	5	13.2%
1~2시간	6	15.8%
2~3시간	14	36.8%
3~4시간	5	13.2%
4~5시간	2	5.3%
5시간이상	6	15.8%

설문조사

2. 유해사이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유해사이트 인지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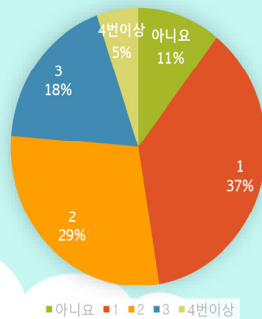
응답수

알고있다	33	13.2%
모른다	5	15.8%

설문조사

3. 인터넷 사용 중 유해사이트 광고가 자주 뜨나요?

유해사이트 광고노출



광고노출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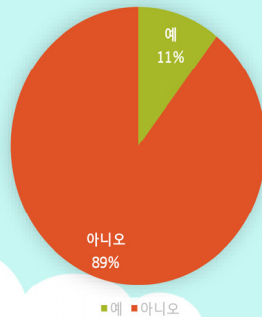
응답수

아니오	4	10.5%
1	14	36.8%
2	11	28.9%
3	7	18.4%
4번이상	2	5.3%

설문조사

4.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나요?

유해사이트 접속한 경험



응답수		
예	4	10.5%
아니오	34	89.5%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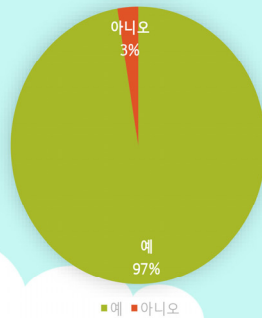
4-1. 유해사이트를 접해봤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불쾌하고 광고를 지우거나 닫아도 짹짹한 기분이 든다
- 더러워서 나온다
- 기분이 좋지 않다
- 이것은 무엇인가 당황스럽다
- 이런 게 왜 뜨는지 기분이 이상했다
-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 죄책감이 든다
- 불법적인 느낌이 강하다
- 찾고 싶은 정보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도박이나 유해사이트가 뜨면 이걸 접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건데 호기심에 들어가서 나쁜 영향이나 좋지않은 방향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설문조사

5. 유해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유해사이트 부정적 인식



응답수		
예	37	97.4%
아니오	1	2.6%

설문조사

5-1. "예"라고 대답했다면 유해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동들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 삶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준다.
- 내가 찾는 정보도 아니고 보기에 불편하다.
- 자극적인 광고는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하다.
- 청소년들이 시청하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사이트들이 있어서.
- 청소년들이 모르고 들어가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다.
-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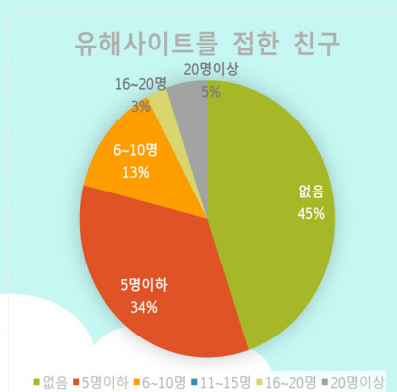
설문조사

5-1. "예"라고 대답했다면 유해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들로 인해 여러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 같다.
- 도박사이트도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것에 빠져들 수 있다.
- 일단 청소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적으로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유인물로 유혹하는 유혹의 높이라 생각한다.
- 궁금하게 한다.
-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하나 콘텐츠에 접할 수 있고 자극적인 내용에 한번 중독되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만 찾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방으로 이어져 안 좋을 거 같다.
-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6. 주변에 유해사이트를 접해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응답수		
없음	17	44.7%
5명이하	13	34.2%
6~10명	5	13.2%
11~15명	0	0%
16~20명	1	2.6%
20명이상	2	5.3%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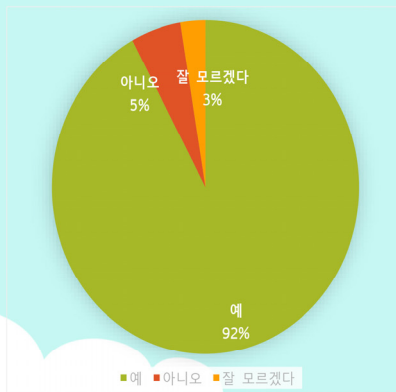
7. 유해사이트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응답수		
전혀 그렇지 않다	30	78.9%
그렇지 않다	7	18.4%
보통이다	1	2.6%
그렇다	0	0%
매우 그렇다	0	0%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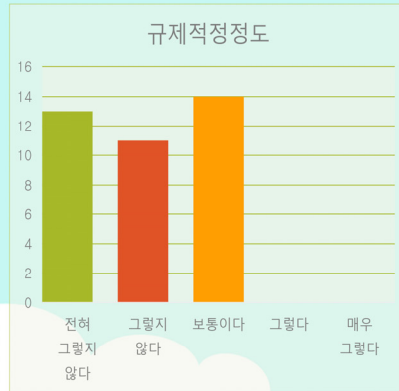
8. 유해사이트가 청소년 사이에서 잘못된 문화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니까?



응답수		
예	35	92.1%
아니오	2	5.3%
잘 모르겠다	1	2.6%

설문조사

9. 현재 규제사이트에 대해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답수		
전혀 그렇지 않다	13	34.2%
그렇지 않다	11	28.9%
보통이다	14	36.8%
그렇다	0	0%
매우 그렇다	0	0%

설문조사

11. 유해사이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청소년에게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쉽게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광고를 조금 줄인다거나 사이트를 들어가도 무조건 회원가입과 나이를 공개하는 본인인증이 통과되어야만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등)
- 공공인터넷 등에서 유해사이트 차단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 유해사이트를 알리는 경고분과 함께 차단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 성인 인증 하는 부분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 부모 관리 어플을 좀더 강하게 규제하거나 사이트 접속시 나이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 좀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단속과 감시가 강화되어야한다.
- 적발시 엄중한 벌을 내렸으면 한다.
- 유해사이트를 없애야한다.

10~11월 활동보고서

3. 카드뉴스형식 포스터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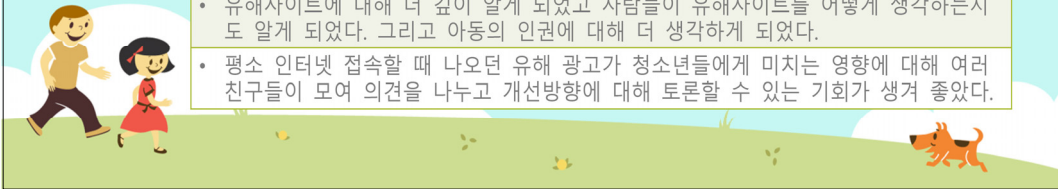
10~11월 활동보고서

4. 인스타그램 게시 및 홍보



LENS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 우리의 생각을 함께 토론하며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들이 실천되면 좋겠다.
- 이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의 생각이나 뜻을 퍼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 다들 시간이 안 맞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모이는 시간을 정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자신이 맡은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잘 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아동이 아동 스스로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
- 유해사이트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유해사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 평소 인터넷 접속할 때 나오던 유해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친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다.



감사합니다



권역별 사례발표



염리초등학교 5학년 1반 (LENS, 서울 권역)

권역별 사례발표



정나래, 김도연, 김규린 (LENS, 전남 권역)



모니터링 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부산청소년문화의집

우리의 발자취

< 8월 >

01. 권역 주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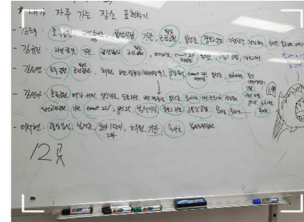
- ▶ 현재 6명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광주 남구**에 거주하며 **초등 4~5학년**으로 구성
- ▶ 참여 아동 대부분 **봉선1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세히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 살펴본 적이 없었음**
- ▶ 통학로, 학원, 놀이터, 공원 등 자신이 자주 가는 장소는 많았지만, **자신의 생활 환경이 안전한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음
- ▶ **참여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환경**을 주제 선정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부산청소년문화의집

< 8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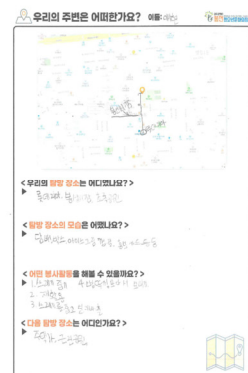


- 

북선청소년문화의집

< 9월 >

 우리의 주변은 어떠한가요? 예를: 대안학교



- 

북선청소년문화의집

우리의 발자취

< 10월 >

04. 광주 남구 재활용 가능자원 요일별, 품목별 배출하고 있음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전시

2022년부터 재활용 가능자원은
요일별·품목별로 배출해 주세요!



- ▶ 광주 남구는 1월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를 증대를 위해 '품목별 요일제 수거'를 실시
- ▶ 우리 동네 봉선동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 상가, 주택도 많이 있는데,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를 많음**
- ▶ 요일별로 품목별로 다르게 배출해야 한다는 **올바른 정보를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에게 전달**



우리 동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배출 방법 홍보물 폐박스와 우드락을 활용하여 제작 후
기관 내 홍보 및 전시

봉안청소년문화의집

우리의 발자취

< 10월 >

05.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의견 조사 및 공통주제 설문을 위한 준비 활동



- ▶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 확대 출력** 및 **설문에 대한 설명 이젤** 칠판을 활용하여 게시
- ▶ 기관 1층, 2층 게시판 및 프로그램실을 벽면을 활용하여 **공통주제 설문 조사 홍보**
- ▶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의견 조사판 제작**



남구청청소년어울림마당 부스에 참여하여 공통주제 설문 홍보 및 독려 활동과
권역주제인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인가요?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전개

봉안청소년문화의집

우리의 발자취

< 10월 >

06.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의견 조사 및 공통주제 설문 활동



▶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22.10.22) 부스에 참여

-> X배너 활용하여 공통주제 설문 홍보 및 독려 활동

->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 전개 -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인가요?

봉안청소년문화의집

우리의 발자취

< 10월 >

07.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의견 조사 결과



38개 의견

-> 불법주정차,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문제,

쓰레기 문제, 담배와 매연 문제, 시설 부족(놀이터 등)의 문제가

봉선동에서 아동들에게 위협을 주는 환경에 대한 의견

-> 추후 해당 장소 탐방 후 세세한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

봉안청소년문화의집

우리의 변화



일상 속 지속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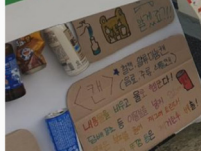
→ 동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어 볼 수 있었음

→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직접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음



우리 마을에서
청소년의 목소리
를 내는 것!

청소년 기후행동 동아리





권역별 사례발표



김은성, 문시은, 박하윤 (LENS, 경북 1권역)



목차	
01 경북1권역 주제 소개	02 9월 활동 소개
03 10월 활동 소개	04 활동소감

경북1권역 주제	
자유학기제	
01 자유학기제란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지 않고, 토론 실습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교육을 선택하여 받는 제도 - 학생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체험활동	02 자유학기제 문제점 - 다양한 과목 개설 X -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X - 2학년 이후 시험부담 증가

9월 활동

설문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1위 학업에 미치는 부담감 증가

2위 학교에서 정해주는 수업

3위 다양하지 않은 수업



10월 활동

비대면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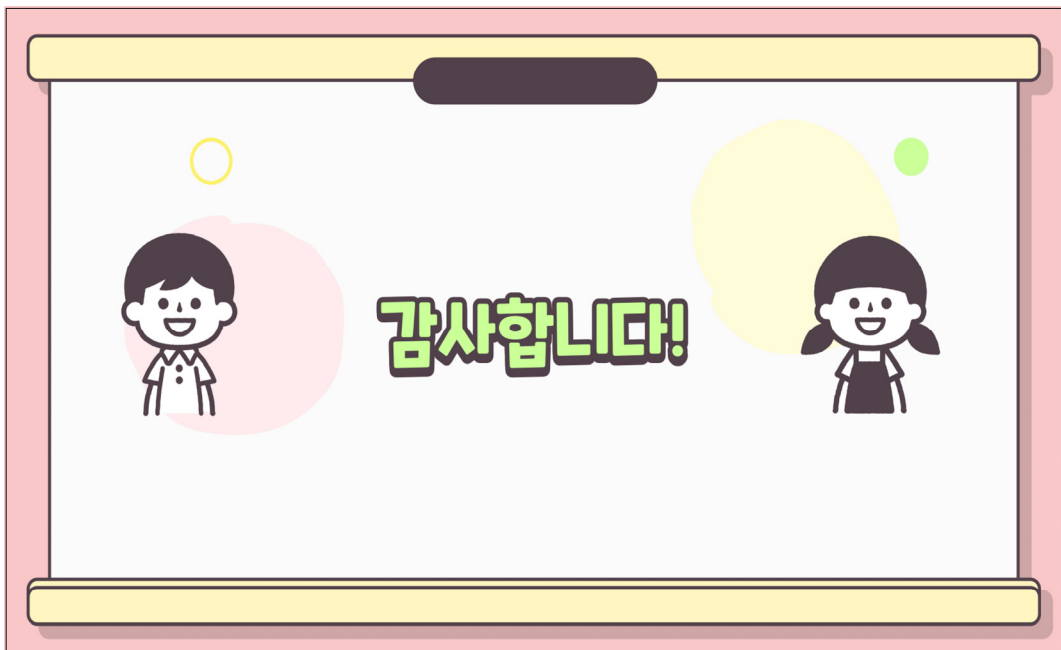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비대면 캠페인 활동 진행

활동 소개

LENS 소개, 자유학기제 소개, 자유학기제
의 실태, 설문조사 활동 소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교육감님께
바라는 점

활동 내용





권역별 사례발표



장서연, 최아라 (LENS, 전북 권역)

LENS 활동결과보고

주제 :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서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해보자!

- 전북권역 -

발표자: 장서연, 최아라

목차

1. 첫만남
2. 활동 계획
3. 활동시작
4. 활동결과
5.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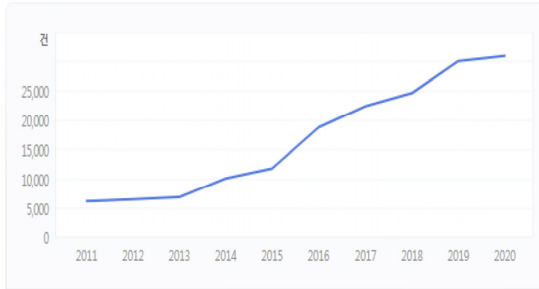
1. 첫만남

렌즈, 프렌즈



2. 활동계획

아동학대건수 —
3만 905건 '20



8월 17일

익산 청소년 문화의 집



1) 의견 나누기

2022년 9월 6일

이리남성여자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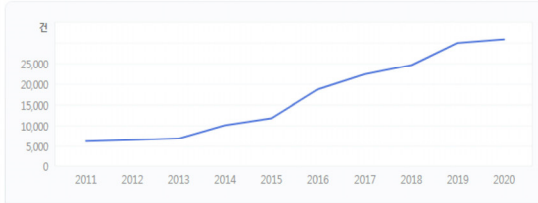


권역별 활동계획서

권역	전북	참여아동 성명 (현원 기재)	박윤아, 임하영, 최효주, 유정주, 임규리, 송나리, 최아리, 김윤주, 최민선, 윤예은, 최지우, 채지우, 이재은, 장서연, 최봄, 장해빈
담당교사	김지유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공동주제 관련 설문조사 진행(설문지 받아칠 제공) → 공동주제 관련 서면 인터뷰		
권역주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서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권역주제 선정이유	유튜브, V로그 등 시청각 자료 외 연구, 사례지간 가족 간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정신적으로 우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일상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의 종류와 예시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통해 아동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시민들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활동계획	구분	활동 기간	내용
	계획	8월	권역별 주제 선정, 세부 활동 내용 및 일정 정하기,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학대 사례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9월	1. 몰랐지만 어렸을 때 또는 현재 '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 2. 어렸을 때, 또는 현재 현재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경험한 아동학대 사례'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10월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활동내용 전시
	조사 대상 및 방법	본인 및 주변 지인들 인터뷰	1.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란?' 2. 몰랐지만 어렸을 때 또는 현재 '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 3. 어렸을 때, 또는 현재 현재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경험한 아동학대 사례' 4.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제출일	2022년 8월 14일		

2) 활동 목표

아동학대건수 —
3만 905건 '20



1. 아동학대의 **종류와 사례** 알리기

2. 훈육과 아동학대 구분하기

3. 내가 '**행하는**' 또는
내가 '**당하는**' 아동학대 인지하기

3. 활동시작

- 10월 1일 익산 청소년 문화의 집 – 자료 만들기
- 10월 19일 이리남성여자중학교 – 아동학대 캠페인
- 10월 22일 영등동 청소년 거리 – 아동학대 캠페인

1) 자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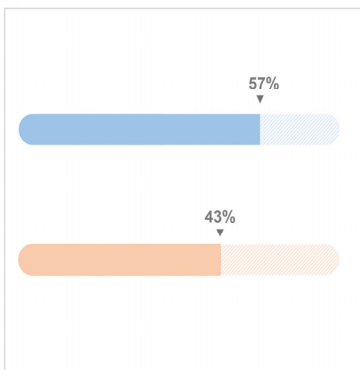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대상 캠페인 활동



3) 익산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



‘늦은 시간 이성친구에게 셀카를 보낸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 아동학대이다 VS 훈육이다



학대

이성친구여도 친구끼리 얼마든지 셀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학원, 자습 시간 등의 일정으로 시간이 나는 건 늦은 시간 뿐이고 그때 야겨우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친구와 노는 것 뿐인데 때린 것은 학대이다.

훈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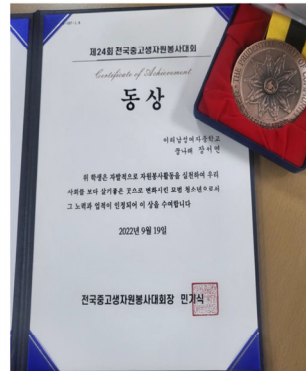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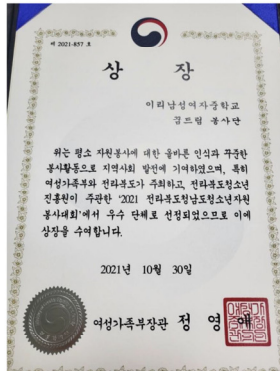
늦은 시간이 12시 이후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에 이성에게 셀카를 보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셀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 범죄 악용도 우려되고 격정되어 훈육으로 볼 수 있다.



4. 활동 결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서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기

목표 달성!



마지막 활동

하지만!
'전북'은 '전국'으로 나아갑니다.

5. 마무리

- 이번 활동이 사회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 사회의 문제를 아동들이 직접 함께 의논하며, 캠페인도 하게 되어서 너무나 뜻 깊고 뿌듯했습니다.
- 이제는 더 관심을 가져 렌즈 활동 때 배우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 아동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고,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 참여도가 낮을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LENS!

Learn - 많은 것을 배우고

Escape - 틀에서 벗어나

Nest - 새로운 시도에 동지를 틀었고

Start -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렌즈, 프렌즈

감사합니다!

-전북 LENS-

권역별 사례발표



안지상, 김미진, 이서진 (LENS, 충북 권역)

9월 활동 내용

- ① 인터뷰 질문, 기간, 방법, 인원수 논의
- ② 선정된 인터뷰 질문에 대한 LENS 단원들의 생각 토의

인터뷰 질문	하단부에 볼드체로 서술
인터뷰 기간	09.18~10.22 (2차 모임일 전날)
인터뷰 방법	각 학급에서 1:1 대면으로 진행

1차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아동들과 문답을 진행하며 인터뷰 질문, 기간, 방법을 선정 후 직접 만든 질문에 대한 아동들 본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정된 인터뷰 질문과 질문별 아동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Q. 0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잘 하는 것이 다른데 똑같은 것으로만 배우는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 저한테 맞지 않는 수업을 들으려 하니까 공부가 더 싫어지는 것 같다
-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니까 적성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 너무 선생님 의견대로만 진행되는 것 같다

Q. 자율 시간표를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을까요?

- 예체능 쪽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자유시간에 자기가 맞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 과목을 진로에 맞추어 선택해 듣거나 학교에서 적성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자기 진로에 맞고 원하는 과목 위주로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 교과는 배워야 한다. 무조건 문제풀고 강압적인 게 아닌 자율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Q. 이런 방식으로 자율 시간표를 시행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나요?

- 자기한테 맞는 진로를 더 빨리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맞는 진로에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 이하 동의

10월 활동내용

- ① 인터뷰 결과 공유
- ② 인터뷰 답변에 대한 LENS 단원들의 견해 추가 토의
- ③ 최종 발표 관련 안내

(인터뷰 결과)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해

-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한다. 쉬는시간에 비해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
- 우리학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때 골고루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학교는 좋다고 생각한다.
- 현재 수업방식에 불만이 있다.
- 잘하고 있다. 아직은 쉬는 시간에 대해 만족 중이다.
- 별로다. 체육이 2개밖에 없고 너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미진

- 5명중 4명은 괜찮다, 적절하다고 답했고 1명은 조금 힘들다고 답했다.

서진

- 만족스럽다.
- 수업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 수학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다.
- 배우고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 체육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다.

지상

- 수업 시간이 45분인 건 너무 긴 것 같다.
- 창체 시간이 있지만 담임 선생님의 과목과 관련된 공부나 게임을 하거나 교장 선생님 연설을 들어야 해서 재미가 없다.
- 자유시간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하거나 영상으로 된 연설을 듣는 것이 재미가 없어 다들 좋아하지는 않는다.

진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 방식은 학생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주입식 교육이 많이 첨가된 것 같다
- 사교육을 유도하는 수업인 것 같다.
- 너무 많은 양을 빠르게 가르친다.
- 의미가 없는 교육 방식인 것 같다. 모두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교육해 맘에 들지 않는다.

Q. 자율 시간표를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을까요?

다해

- 자유시간이 시간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자유시간때 체육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 자유시간이 시간표에 들어가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 체육시간 한교시만 더 주면 좋겠고, 재밌게 놀면서 진행되면 좋겠다.
- 자유롭게 본인 적성맞게 진행되면 좋겠다.

미진

- 상관없이 해도 괜찮다 (2명)
- 학생들끼리 모여 동아리처럼 활동하면 친목에 더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서진

-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재미있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고 싶다.
- 각 반에서 투표로 시간표를 정하고 싶다. (단체 시간표)
- 자유롭게 하고싶은 대로 수업을 듣고 싶다.

지상

- 수업 중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자유시간을 동아리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

+) 해당 인터뷰에 대한 지상 학생의 의견 추가

운호중의 경우 월요일을 제외하면 마지막 교시를 동아리 시간으로 운영 중이다. 애니메이션 동아리, 국악 동아리, 바느질 동아리 등 학기 초에 한 번씩 결정한다. 하지만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데, 아이들이 하고싶어 하는 것은 E스포츠 등 몸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동아리별로 인원 제한이 있어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들어야 한다.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림 동아리에 든 친구들도 있어 동아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진솔

- 선택 과목이나 예체능 등 여러 활동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정해진 시간 만큼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처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선택할 수 있는 수업, 대학교 수강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Q. 이런 방식으로 자율 시간표를 시행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나요?

다해

- 정말 놀면서 수업하면서 하면 자유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 자유시간표를 시행하면 불만사항이 없어질 것 같다

진솔

- 수업 시간에 잠이 덜 올 것 같다.
-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니 흥미로울 것 같다.
- 더 재미있어질 뿐더러 학습효과가 올라갈 것 같다.
- 재미있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미래의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 같다.

미진, 서진, 지상 인터뷰 학생 모두 그럴 것 같다고 답함.

1.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차이가 큰 학교 재학생 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하 창체시간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토의 진행

- ▶ 그렇다면 현재의 비효율적인 동아리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지상

- 대체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을 분류해 미술 선생님에게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신청자가 적은 동아리는 폐기하고 몰리는 동아리를 한 두반 정도 더 개설하게 나올 것 같다.

- ▶ 운동중에 비해 한솔초가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과목)나 동아리 활동 면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여요. 두 학교 간 동아리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미진

- 한솔초의 경우 동아리 별 인원 제한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동아리를 우리가 직접 개설하고 친구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이나 칼처럼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동아리만 (요리 동아리) 활동 시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그 외 홍보 등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진행한다.

지상

- 운호중도 학교에 건의해서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는 했었지만 개설된 동아리들이 빠르게 다시 없어졌다.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유도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유도 동아리를 개설하고자 여쭙어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유도는 위험한 만큼 전문적인 강사나 관장님을 불러올 수 없어 진행이 어렵다며 기각되었다.

한솔초의 경우 기타 활동에 대해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인다. 다양한 기회가 많아 보여 부럽다.

활동 결과 및 소감

이러한 아동의 수업 참여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에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 대학교처럼 듣고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창체시간에 현재보다 유익한 진로 관련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한솔초처럼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한솔초는 학생들이 동아리 설립부터 활동, 홍보까지 직접 하는 방식)
- 학생들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더 많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김미진: 저는 이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같이 합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서진: 자율시간표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았고, 평소에는 해본 적 없던 인터뷰도 직접 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안지상: 친구들이 인터뷰라면 장난처럼 받아들였는데,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니 협조를 해주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역별 사례발표



노정현, 차수빈, 이서다비 (LENS, 제주 1권역)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결과 보고서 -
SNS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제주 권역 1 [노정현, 차수빈, 이서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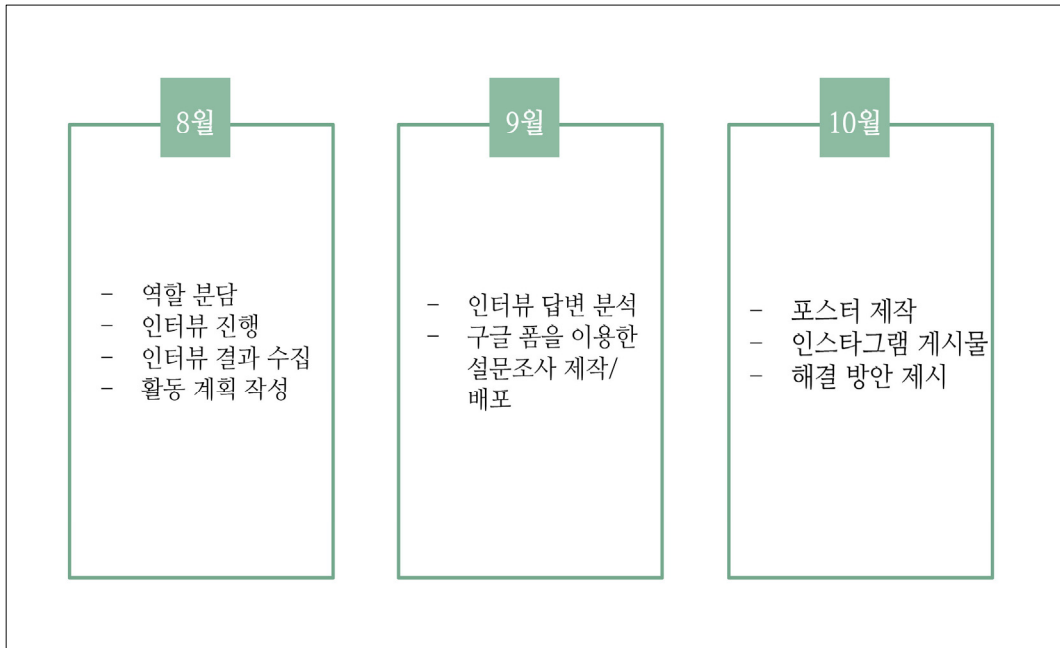
목차	01	02
	활동내용 설명	조사 결과 분석
	03	04
	중요 활동	결과 발표 및 마무리

01	
주제 접근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소셜미디어의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악영향
 - **유해컨텐츠** (선정적/폭력적 광고 노출)
2. SNS 자체로 인한 아동의 수면권, 학습권, 건강권 침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
 - '아동의 인권이 어떠한 형태로 **저지되고있는가**' 를 따른 대응방법 제시
 - 신체적/정신적 휴식의 보장을 위한 **SNS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한 활동
3. SNS 과의존의 심각성, 그리고 해결방안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02 활동 내용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인터뷰

1.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 인가요?
2.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 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7학년 학생들>

- 1) 인터넷 상의 따돌림, SNS의 **강한 중독성**
- 2)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어사용 증가, SNS의 **다중성**으로 인한 앱 발전 (폰중독)
- 3) 비속어 사용을 습관화 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스크린 타임**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화면을 멀리하기

<8학년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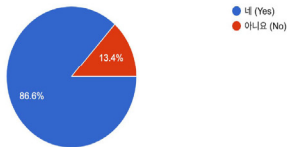
- 1) 허위사실 혹은 거짓 정보의 **빠른 확산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범죄** 사례
- 2) **익명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 사용
- 3)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이버범죄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방법, 익명 보안 강화

<9학년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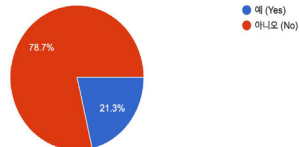
- 1)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 **광고**로 나타나는 자극적인 영상들, 크리에이터들의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
- 2) 편리성을 위한 약한 나이 제약, 보장되는 익명성, 어린 연령층에게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들이 심의 규정에 자주 적발되지 않아 **검열**이 되지 않기 때문
- 3) 자극적이고 시청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한번 더 재생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는 시스템과 검열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 **익명성** 보장 억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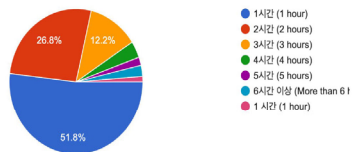
SNS를 사용하시나요? (Do you use social media?)
16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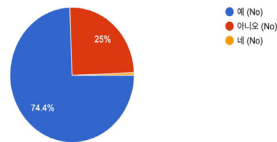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Do you consider yourself an Internet addict?)
164 responses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얼마인가요? (Average social media usage time per day)
16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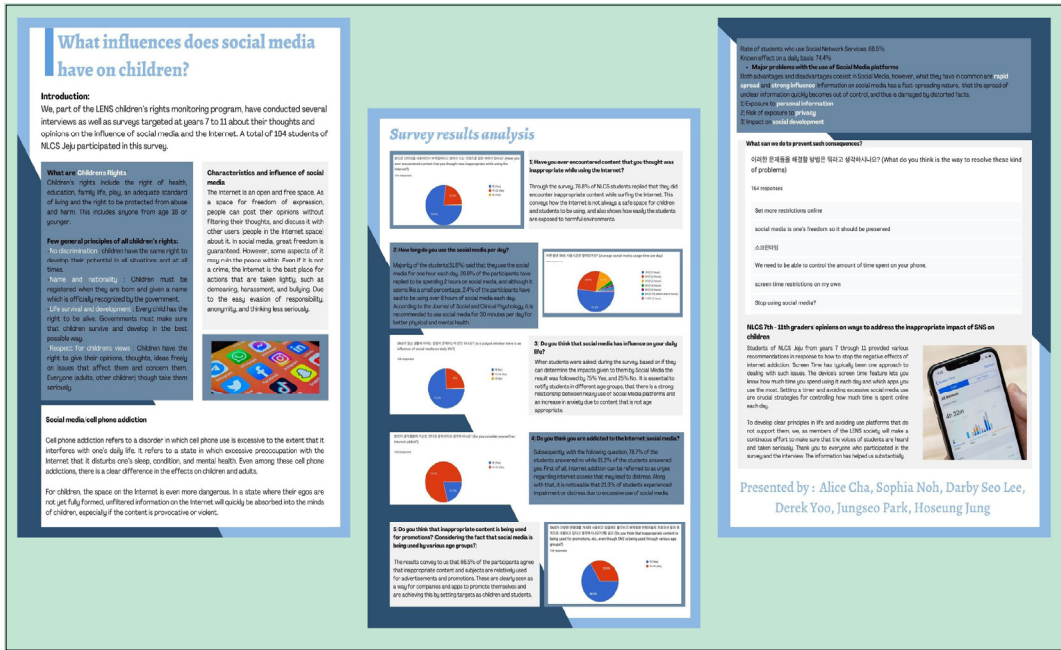


SNS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 판단 하세요? (Is it judged whether there is an influence of social media on daily life?)
16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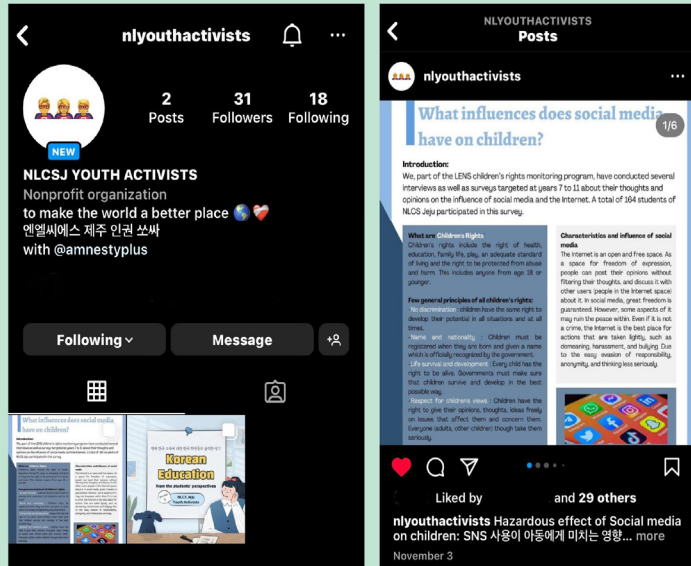
04 결과물 소개

포스터 제작



SNS 계정을 만든 계기

- 1) 중등팀과 고등팀의 활동 결과물 발표 + 영향력
- 2)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수있음



06 결과 발표

결과발표 및 활동정리

결과발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SNS사용의 문제점으로 '폰중독' 등의 답변을 공유
- 아동이 인지하고있지 못하고있는 아동인권 침해사례
- SNS를 통해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눈여겨 보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활동

인스타 계정 및 포스터 제작

- 설문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리서치를 통해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스터 만들
-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저희 LENS 그룹이 만든 결과물 발표

07

활동 평가

새로 알게된 것들 + 좋았던 점 + 노력해야하는 점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된 점:

-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 학생들이 sns와 인터넷 대해서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다
-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부정적인 영향을 그나마 멈출수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해결방안)



좋았던 점

- 활동 초반에는 자주 만나 주제 토론과 활동 계획을 세웠다
- 그리고 한 몇달후 부터는 개인으로 맡은 일을 하고, 궁금한 점은 카톡으로 물어봐서 조금 더 자기 중심으로 활동 할수있었다
- 인터뷰랑 설문 조사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노력해야하는 점

-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시간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다른 학년이고 팀 활동이다 보니 미팅시간 결정이 힘들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노정현, 차수빈, 이서다비

권역별 사례발표



김해인, 김건이, 신채윤 (LENS, 제주 2권역)

청소년의 자아와 가치관 형성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실태



제주 권역 고등부: 김건이, 신채윤, 김해인

주제 선정 계기



우리가 진행한 활동들



설문 조사

QuestionsResponses240Settings

Section 1 of 5

청소년의 자아와 가치관 형성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실태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저희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인권 모니터링 프로그램 LENS의 제주 권역 팀입니다.

본 설문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한국 교육의 실태와 학생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집계된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문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40 responses

Not accepting responses

Message for respondents

This form is no longer accepting responses

학교 시간표에 교과 외 관심사를 넣힐 수 있는 수업이 제공되고 있다.*

매우 비동의 1 2 3 4 5 매우 동의

자신이 원하는 교과 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Long answer text

학교 내 선생님과 진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매우 비동의 1 2 3 4 5 매우 동의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수행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 등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매우 비동의 1 2 3 4 5 매우 동의

설문 조사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 입시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다.

〈설문조사 답변〉

이런 의견이나 의견이 있을 때 그 취합을 위해서 그 의견에 대한 대답이나 토론이 아닌 그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공부만 지속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개인이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자신의 생각을 해본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게 되는 것 같다. 때로는 교육과정 차의 내용이며 그저 넘어갈 강행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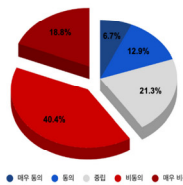
구체적이진 않지만 선생님의 의견이 우선시되 보니 자발적인 사정도 다 감안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전공이 미술인데도 불구하고 지리화고는 인문계라는 이유로 야자시간 때 미술학원에 가서 도움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작업을 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서 어찌보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정확히 존중받지 않는다는 보다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관심사를 포기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은 하나의 진로를 위해 하나의 길로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을 추구하기에 자신이 하고싶은 활동, 동아리, 발표, 수행평가 주제 선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완벽히 맞추어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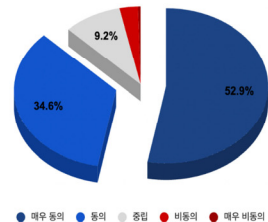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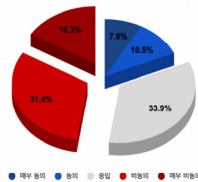
내사상 또는 의견에 대해 존중받지 않지는 않았지만 학교 내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인문계에 다니고 있고 애견미용사가 꿈인 저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신은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고1이 된 후 방향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벌써 진로를 정하고 그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을 쟁기고, 진로로 등 진로활동을 진행하는데 자란 것이 없이 등물여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 자신을 자책하고 우울함이 커 공부도, 운동도 없이 무력감만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중2 때부터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은 해 왔던 애견미용사 라는 진로로 나아가고자 하였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전문적이기도 하고 대학교도 사립(전문대)을 가야 취업이 빨리 되기에 그 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1은 많은 활동을 중학때에 할용이할 거성이라해 때 본인의 진로를 꼭 적는 편이 좋게하더군요. 저는 제가 지금도 보고대위하리 앞당겨야 하겠고, 그 다음저를 끌어가신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말투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곤 했습니다. 많은 우울을 펼쳐내고 친구들의 응원과 위로로 인해 제가 하고싶은 것을 찾았는데, 이론과 실생활, 연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미용은 누구나 다 하는 일, 공부 못 하는 애가 하는 일로만 인식이 되어 더 이상 큰 우울을 겪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압박에 이기지 못 하고 애견미용사를 포기할 고2 가 되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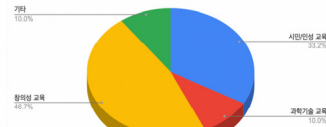
학교 시간표에 교과 외 관심사를 넣힐 수 있는 수업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수행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 등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



카드 뉴스 제작 및 배포



nlyouthactivists

2 posts 30 followers 18 following

30

30

NLCSJ YOUTH ACTIVISTS

Nonprofit organizatio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

엔엘씨에스 제주 인진 쏘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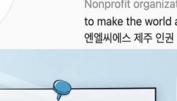
Like

Comment

Share

Liked by thekoniestway and 91 others

OCTOBER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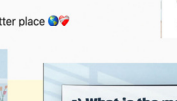


현재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

Korean Education

from the students' persp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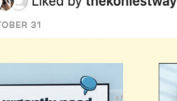
NLCSJ Jeju Youth Activists



4) What is the most urgently need addition to Korean education?

한국 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추가해야 할 교육은 무엇일까요?

46.7%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education designed to develop **creativity** is most urgently needed in Korean schools. 33.2% agreed that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promoted, implying that schools are currently only focusing on academic matters. The results overall suggest that the students feel that they are unable to acquire skills needed when they become adults in their current education system.



5) Do you agree with the claim that Korean education is a form of 'indoctrination' only aimed at university entrance tests?

대한민국 교육은 대학 입시만을 위한 형태의 교육이다.

37.5% of respondents agreed, and 52.9% strongly agreed. It demonstrates that most Korean students feel a lot of pressure on the current Korean curriculum, and illustrates the limits of Korean education that inculcates in students that admission into a good university is the only goal.

추가적인 조사

일반 학교에서 학교 외부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음

- 공공교의 평등성과 대입 공정성 확보 위해 외부 활동은 학생부에 가능하지 않음
- 4월말~5월초 중 4월말~5월초 중간고사 중 2과목 가산점, 시도교육청 주관 경시대회를 들이옴
- 6~8학년의 각 과목에서 4월말에는 교육과정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9월에는 학생부에 반영되는 과목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외부인원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음 → 그러나 학생부에 기록이 불가하기 때문여로 인해 학생부에 반영이 없고 결국 가산점에 대한 학생부 반영 불가여로 문제가 조짐됨
- 공립공공형 학교 개편이 진행됨 원형전 이드레치 못한다는 점이나 현재는 학생 개개인이 특별히 참여하지 않는 외부 활동이 없고 학생부외 기록을 쓸 수 없으므로 학생들은 이를 안 함
- 학교들은 자의 지점을 확대해서 통째서 사지옴을 안고, 교내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되보다 학생들의 사지옴을 수 없고 더 많은 학생과 교로할 수 없음

학생부 기재금지 항목 중 교외활동 관련 항목

1.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
2. 교외대회 참여
3. 교외 기관에서 수상한 상
4. 어학연수 등 해외 활동실적

교외활동이 대인에 미치는 영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Tl4QeMrl4pcwK3-oqK67T0ec-q/edit?usp=sharing>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xLO1dAU-y0Jprcn4bfqyp-DPkFIdit?usp=sharing>

현재 대한민국 교과 과정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TSHkj6cramyNxzb0qwRgBnB1U/edit?usp=sharing>

대한민국 고교학점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azLkBxW3cc0RxfYEMQ6Z2k/edit?usp=sharing>

특목고/자사고 조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yhKdST7JsXog6UZ5WxG8XMoEI-lh9EpRAvGWX59e0U/edit?usp=sharing>

문제점을 바꾸기 위한 노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1vyMixyWyJHChBCuu6zT1woxAfLF2SWMevjGLwRFNs/edit?usp=sharing>

2024년부터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인해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못함

- 청소년 단체활동, 수상경력, 독서 활동 대입 미반영
- 개인 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으나 입시에 반영되는 실적은 반영할 가능
-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이외의 고교내계정활동을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바꾸고, 봉사활동 실적을 10% 반영하며는 논술수사 전형에서 15%를 반영함
- 고교, 교외의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학생부 기재, 대입 자료 X) →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다른 이들과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함

현재 대한민국 교과 과정에 대한 조사: 기본적인 시간표 구성과 필수 과목

현재 적용되는 교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시

- 단위 수업 시간은 60분
- 현재 한국사 과목만이 필수 이수 교과이며, 나머지는 전부 선택 과목
- 공통 교과는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됨
- 선택 교과는 고등학교 2~3학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며 학생과 진로에 맞게

국제 교육

- 국어: 0단위로 찍어짐
- 통합사회: 8단위로 찍어짐
- 한국사: 6단위로 찍어짐
- 수학: 8단위로 찍어짐
- 통합과학: 8단위로 찍어짐
- 영어: 8단위로 찍어짐

선택 교과

일반교과:

[illegible]

우리는 무얼 배웠는가?



알게 된 사실



- 1 현재 한국 학생들이 마주하는 교육은 몇몇 체계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온전한 자아 구현을 제한하고 있다.
- 2 생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
- 3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배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얼어가는 값진 교훈



- 1 교육의 본질이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모두가 갈구하는 한정된 가치들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
- 2 학교에서 배우는 학술적인 지식을 자신의 인생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
- 3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

"인간은 저마다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마땅한 사회 및 교육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HUMAN RIGHTS



“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시급하다."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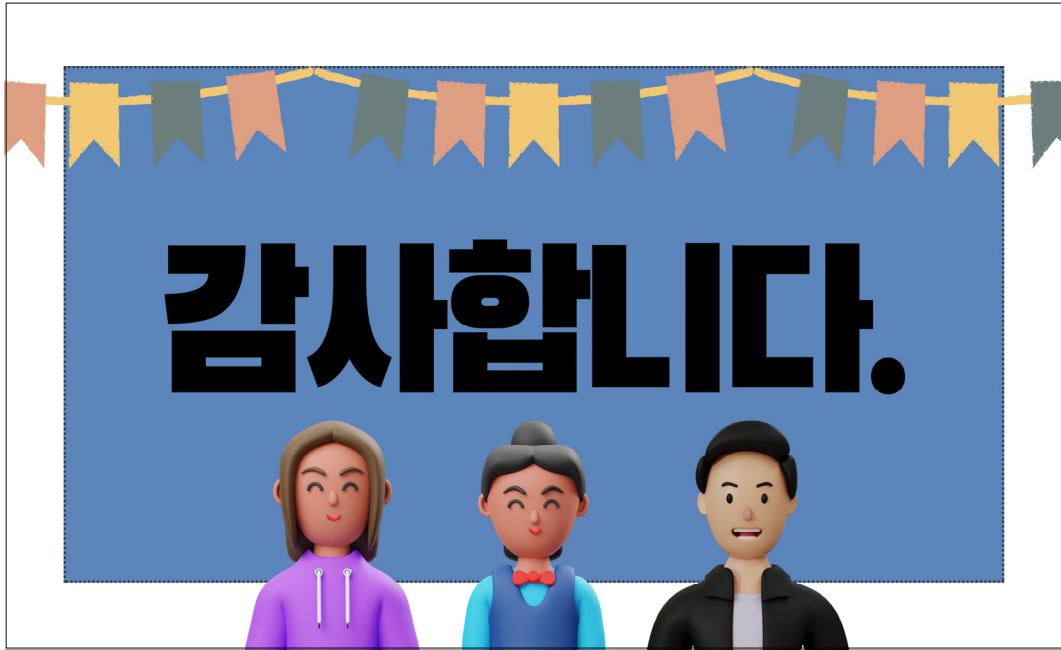
인간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고력 증진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공동체성 함양
인간은 개성을 가진 존재다	자아 형성
인간은 고등 동물이다	생존과 적응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화

“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을 위한
실용적 지식 교육을 확대하고 더불어 창의성과 시
민/인성 교육을 증진하여 청소년의 자아실현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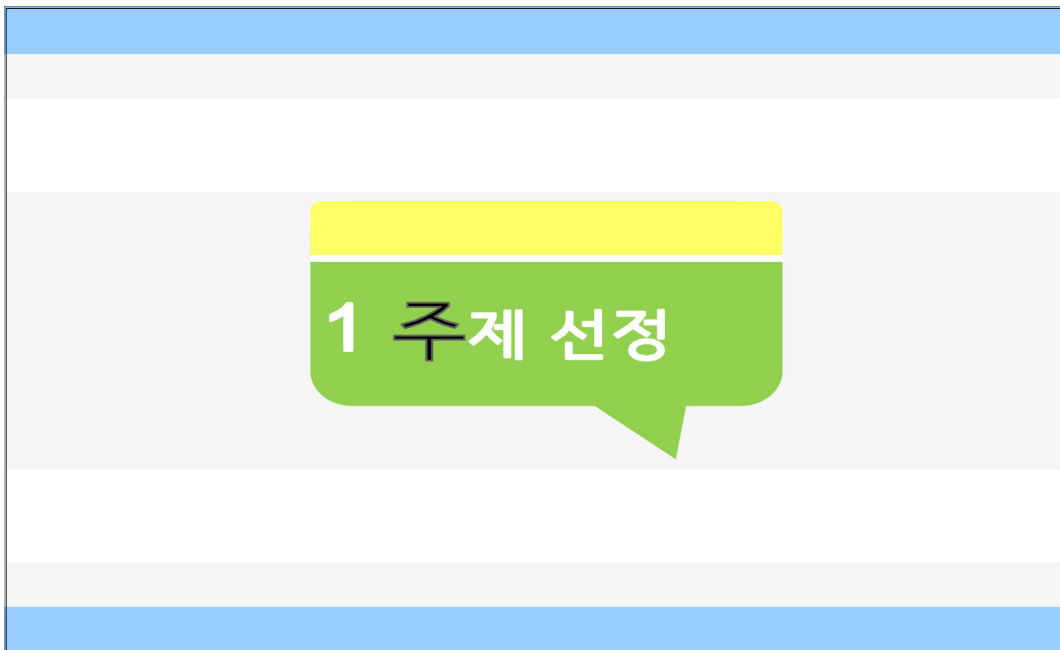
권역별 사례발표



반기병 (LENS, 강원 권역)

강원권역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주제 도출

지역 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아동친화도
 아동은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교통약자!!
 민간시설보다 공공시설을 위주로 변화 유도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유해환경
 무심코 접하는 사이버 유해환경의 실태
 아동의 안전은 아동이 지킨다! 유해매체 신고, 계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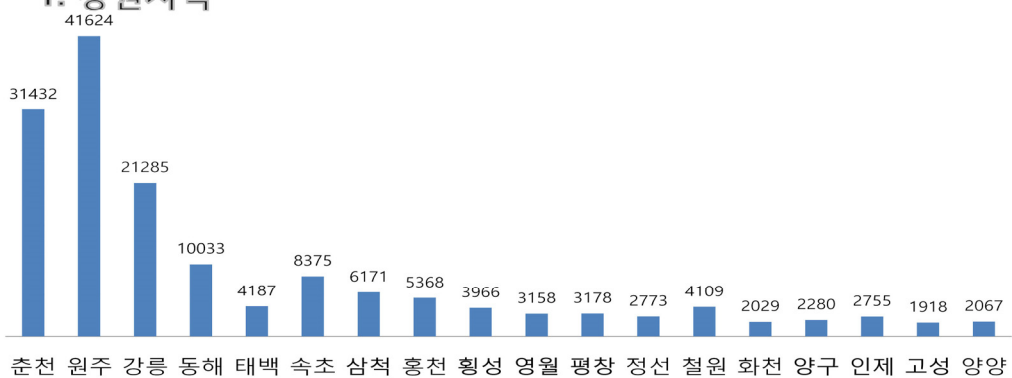
2 아동 이용시설

아동 이용시설 실태

PART
2

1.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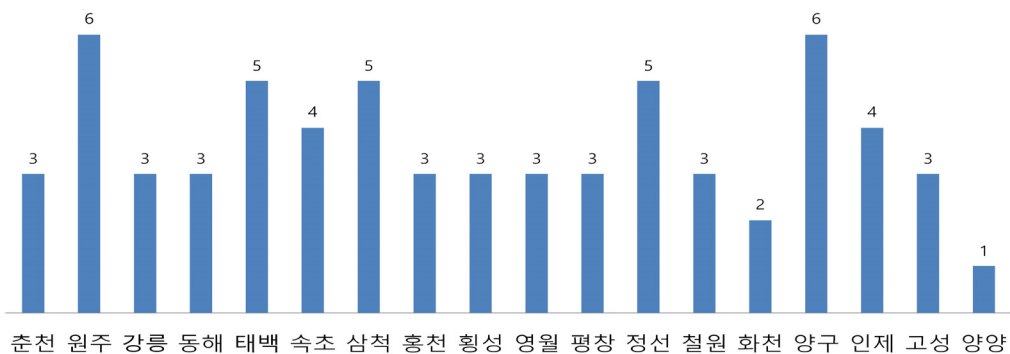
8~19세 인구



아동 이용시설 실태

1.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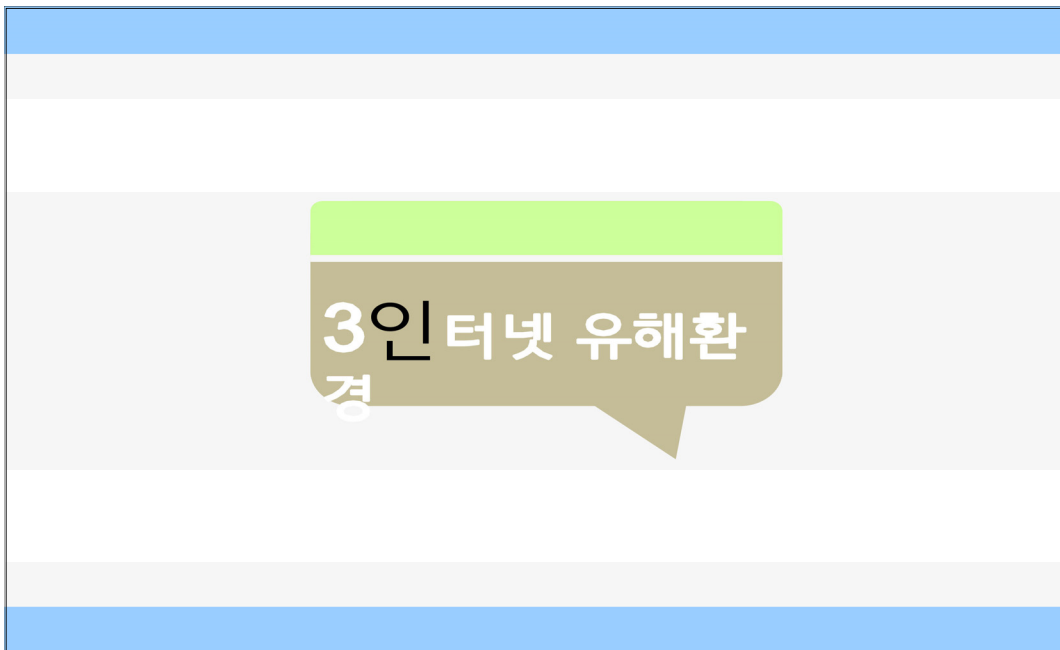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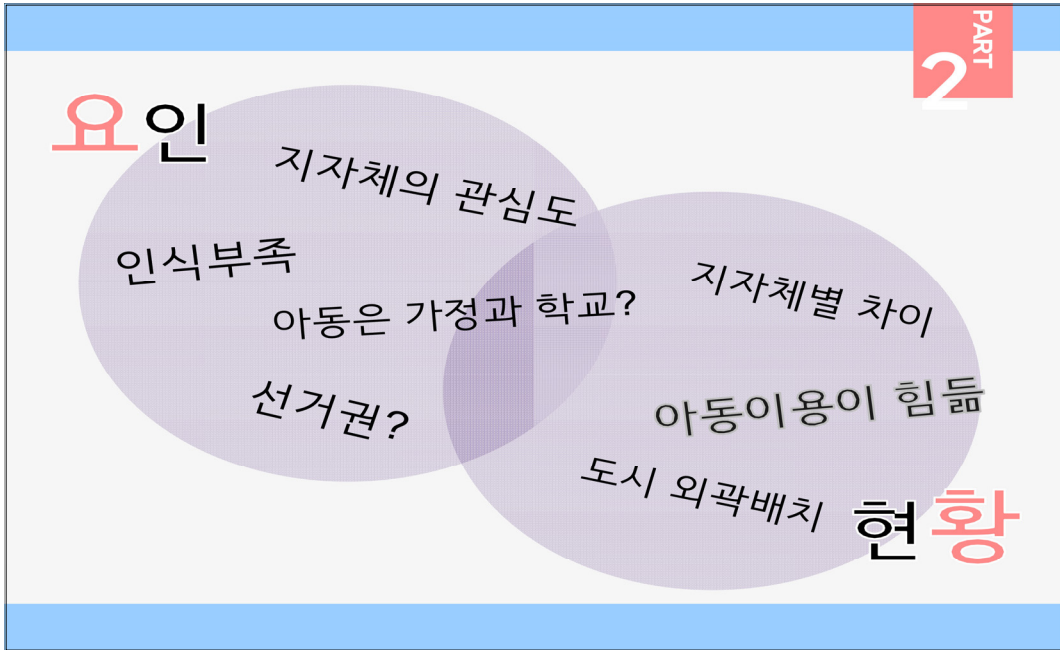
청소년시설



아동 이용시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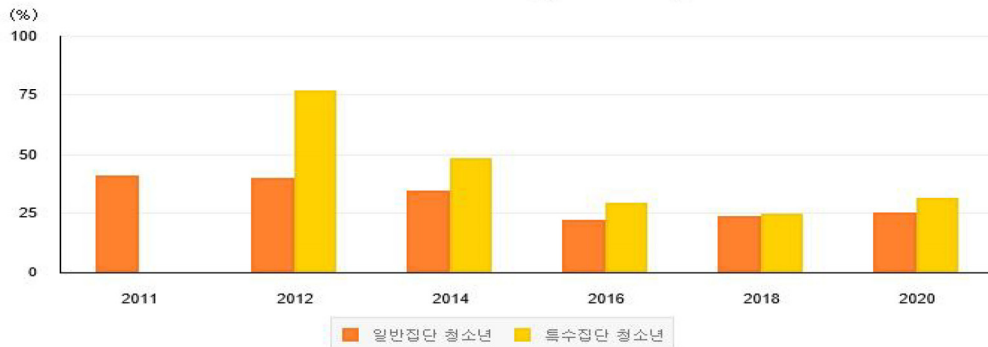
2. 춘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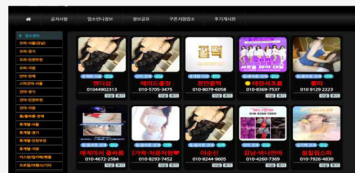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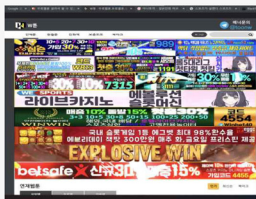
온라인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 유해매체 경험률(성인응답행률)



출처 : 여성가족부『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2014년 이전)
여성가족부『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6년 이후)

온라인 유해매체 신고



3^{RT}

[illegible]

첫째 성인의 아동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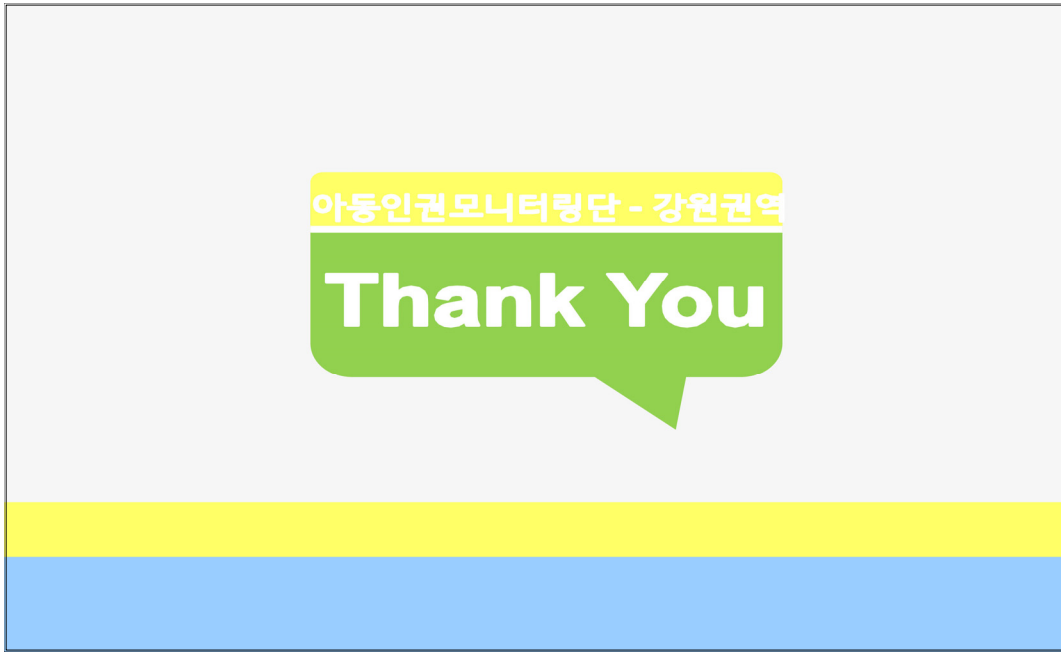
둘째

아동 스스로의 관심

셋째

아동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환경조성

넷째 유해환경조성 및 제공에 따른 법적 처벌 강화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2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발표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항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항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홍관표(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미령(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목차 I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규정 분석
2. 아동분리조치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통합 조치 분석
3. 시사점

III.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2. 주요국(미국, 영국)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3.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목차 II

IV. 즉각 분리 등 아동분리 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 분리 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보호자, 실무자, 전문가)과 시설방문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분석
3. 시사점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1. 아동인권 관점의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 조치 과정과 분리 보호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I. 서론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학대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차 판단 후,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아동과 면담을 통해 분리 집행
-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대상황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권리 침해 가능성 높음
- 분리 이후 아동은 원가정과 다른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갈등상황과 문제 해결 상황에 직면
-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지는 분리보호이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주변의 거부감,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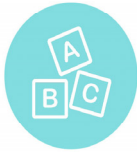
I. 서론 I

- 이에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분리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분리조치 전 절차와 과정,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 등 아동 인권 관점의 분리보호 과정을 마련하고 분리보호 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학대로 인한 아동의 희생이 최소화되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된 아동의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임
- 이 외에도 원가족 복귀 후 재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4

I. 서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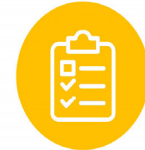
연구내용 및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아동의 분리조치 및 피해아동 원가족 복귀에 관한 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법 및 관련제도 분석



관련제도 분석



외국 사례 분석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현장으로부터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과 이후 아동의 생활 환경 분석
- 피해아동의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과 원가정 복귀 사례 분석

FGI, 시설방문 조사 및 양적조사(설문조사) 분석



5

I. 서론 I

FGI 및 시설방문 조사

<표 1-1> FGI 및 시설방문 조사

조사방법	조사대상	목적
FGI 조사	- 분리 조치 경험 아동 4명 - 분리 조치 경험 부모(보호자) 4명 - 분리 조치 관련 실무자·전문가 12명 - 총 20명	학대 상황 및 분리 조치 이후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양육시설 방문조사	- 서울 2곳, 경기도 1곳, 포항 1곳 총 4곳	분리 이후 아동이 보호되는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

6

분리조치 아동, 보호자, 실무자 전문가 양적조사

<표 1-2> 설문조사

조사대상	분석자료 수	조사내용
분리조치 아동	134부	- 양육환경 0문항 - 사회환경 0문항 - 참여 및 의사표현 기회
분리조치 부모(보호자)	90부	- 아동보호 조사과정 및 아동분리보호 조치 경험 - 아동 분리보호 기간 경험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지원 - 보호자/부모 지원 및 옹호 - 아동 분리보호 조치 담당자에 관한 인식
분리조치 관련 실무자·전문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80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치료보호시설 실무자 171명	- 양육환경 - 사회환경 - 아동 분리보호 과정의 참여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

7

<표 1-3> 아동과 보호자 대상 FGI 질문

1. 아동 분리가 이루어진 배경(왜 분리되었는지?)
2. 분리보호 결정과정에 당사자(아동, 부모)가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어떻게 참여했는지?
3. 아동의 분리 결정에 대한 안내나 설명 등을 들었는지?
4.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 대해 / 분리 이후의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5. 아동 분리 이후 아동을 어디에서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6.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7.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 중 누구와 만났고, 누구를 만나지 못했는지?
8. 분리 이후 아동은 가족 중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었고, 어떤 가족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는지?
9.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10.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11.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 느낌을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12.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걱정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13. 분리보호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4. 분리보호로 인해 도움이 된 점 /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15. 분리 이후의 과정은 어땠는지?
16. 현재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곳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아동, 가족)의 참여가 있었는지?
17.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의 환경 등은 어떤 곳이며 지내기에 어떤지?
18.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19.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20.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점, 가장 걱정이 되는 점?
21. 아동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2.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언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23.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어떤 도움(지원)을 받고 있는가?
24. 현재 보호받고 있는 곳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지원)은 무엇인지?
25.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어떤 도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6. (부모에게)분리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의 부모가 갖는 의무, 권리, 역할에 관해 들어보았는지, 들어보았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27. (부모에게)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2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8

<표 1-4> 실무자·전문가 대상 FGI 질문

1.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파악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분리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 외 보호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대받은 아동의 분리에 있어 주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분리조치 과정에서 (실무자가)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7.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 외 보호체계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8.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 외 보호체계를 결정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지요? (예) 가정 외 보호체계가 아동이 살아온 지역과 가까운지, 아동이 가족과 접촉하기 좋은 조건인지, 형제자매가 함께 분리되었을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보호되는지 등을 고려하는지 등.
9.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10. 분리조치 이후 아동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지요?
11.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13.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뤄진 내용 이외에 현장에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격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표 1-5> (시설방문 시) 시설환경 파악을 위한 질문

1. 귀 시설은 개인 시설인지, 법인 시설인지? 법인이라면 어떤 법인이며 법인 산하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2. 귀 시설(법인시설이라면 법인에 대해서도)의 연혁(최초 설립일, 설립과정, 그동안의 간략한 역사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귀 시설의 운영자(시설장)는 어떤 분이시고, 종교적 배경, 운영철학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귀 시설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로 운영되어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처음부터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는지?)
5. 귀 시설은 학대피해아동만 보호하고 있는지요? 학대피해아동 이외의 아동도 보호하고 있다면 어떤 아동들인지요?
6. 현재 보호하고 계신 아이들은 몇 명이며 어떤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지요?
8.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 외 보호체계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9.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 외 보호체계를 결정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지요?
10. 학대피해아동이 시설에 처음 오게 되면 아동은 보통 어떤 상태인지요?
11. 학대피해아동이 처음 시설에 오면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어떤 조치(제공되는 물리적 환경, 제공되는 서비스 등)를 하나요?
12. 학대피해아동이 처음 입소한 이후 시설에서 지내면서 보통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13.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입장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14. 아이들은 시설장과 종사자를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나요?
15. 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자기가 살던 집이나 지역이 가까운 편인가요? 먼 편인가요?
16. 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경우 얼마나 자주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나요?
17. 귀 시설에서 지내는 학대피해아동은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누구와 얼마나 접촉(전화통화 또는 가정방문이나 만남 등) 하나요?
18. 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19. 귀 시설은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20.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분리, 가정 외 보호, 가정으로의 복귀 등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I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분석

○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전반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분리조치는 아동복지법에, 사법적 분리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산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분리조치에 관한 사항도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 전반에 대한 규정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고유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혼재

○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이 '업무 매뉴얼'에 의존

- 부모의 양육책임, 원가정 복귀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 ➡ 업무 매뉴얼에 의존
- 분리조치된 아동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 ➡ 업무 매뉴얼에 의존

11

II.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I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결정의 원칙이 소홀히 다루어짐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의 주기가 지나치게 장기로 규정되어 있음

○ 절차의 전반에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있음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실행 가능성 여부

○ 아동학대 등의 통보의무(아동복지법 제27조의 2)를 사법경찰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12

IV. 즉각분리 등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족 복귀 실태조사 결과

FGI 및 시설방문 조사결과 분석

<표 4-2> 방문조사한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시설유형	방문한 시설
공동생활가정	P그룹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 •O아동 •S아동
	공동생활가정Y그룹홈 •수도권 지역에 소재, 남자 아동만 •올해 1명 자립함(22세, 부산대학교 재학) •전문대 재학중, 기숙사 생활, 18세 •B아동 - 13세, 중학교 2학년 •C아동 - 7세, 미취학 •위와 같이 4명이 그룹홈에 있으며, 현재 그룹홈에는 2명의 아동만 지내고 있음
양육시설	D양육시설 •수도권 지역에 소재 •아동이나 보호자 개별 인터뷰는 없었음
	양육시설E양육시설 •수도권 지역에 소재

13

IV. 즉각분리 등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족 복귀 실태조사 결과

<표 4-2> 방문조사한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시설유형	방문한 시설
공동생활가정	P그룹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 •O아동 •S아동
	공동생활가정Y그룹홈 •수도권 지역에 소재, 남자 아동만 •올해 1명 자립함(22세, 부산대학교 재학) •전문대 재학중, 기숙사 생활, 18세 •B아동 - 13세, 중학교 2학년 •C아동 - 7세, 미취학 •위와 같이 4명이 그룹홈에 있으며, 현재 그룹홈에는 2명의 아동만 지내고 있음
양육시설	D양육시설 •수도권 지역에 소재 •아동이나 보호자 개별 인터뷰는 없었음
	양육시설E양육시설 •수도권 지역에 소재 •K아동

14

IV. 즉각분리 등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족 복귀 실태조사 결과

<표 4-3> 생태체계 분석들의 체계수준과 시간 구분에 따른 교차표

체계수준	분리 이전	분리 당시	분리 이후
아동 개인	분리 이전 아동의 학대 경험	아동이 분리될 때의 경험	분리 이후 보호체계에서의 아동 경험
아동의 가족	분리 이전 학대와 관련한 가족 상황	아동분리와 관련된 가족의 경험과 상황	아동 분리 이후 가족의 경험과 상황
지역사회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자체)의 노력	아동분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지자체)의 개입과 절차	아동 분리 이후 지역사회 (지자체)의 개입과 절차
국가	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제도	학대피해아동의 분리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과 제도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외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과 제도

15

분리 이전

<표 4-4> 생태체계 분석들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 분리 이전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부 또는 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함	“(보호자) 학교 안 보내고, 아이를 때리고...” “(보호자) 아빠는 (가정폭력으로) 교도소 가고...”
아동의 가족	심각한 질환과 파탄난 가족관계	“(보호자) 아빠가 이제 자살하려는 그제. 애 태어날 때 전부터 아파 있었어요. (중략) 엄마가 바람도 살짝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 오고 이러니까, 딸의 목에 칼을 대고 전화기로 빨리 오라 그래...”
지역 사회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보호자)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그 히스토리를 다 아는 거죠. ○○이 엄마가 못 키우겠다. 이러니까 뭐 ‘잘됐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아동을 입소시켜라 (이렇게 된 거지요)’”
국가	법의 허점을 노림-아동을 이용해 수급비를 받고자 함	“(보호자) 이혼하고... 이 엄마가 (아이를) 자기한테 올려서, 이제 수급비 받고, 아빠한테 생활비 받고,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쓰는 거죠.”

16

분리 당시

<표 4-5>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 분리 당시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기대도 희망도 없고, 슬프고 거부감 있음	“(보호자) 낙담조차 안 하고 그것을 넘어서 아무런, 애한테는 생각이 없고 기대도 없고요. 자포자기요. 내가 여기서 어떠한 거부를 해도 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거다, 라는 거를 이미 벌써 우리 ○○이 알았을 거예요. 그전에 엄마한테 무수히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확대한 모친 걱정을 많이 하고 보고 싶어함	“(보호자) '엄마가 집에 왔는데 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하지 않을까요?' 엄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요, 원장님...' '그래, 왜?'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동의 가족	심각한 방임과 정서학대로 아보전에 의해 분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짐	“(보호자) 엄마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된 거죠.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안 된 거죠. 아보전에서 관리를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분리시키자. 최종.”

17

분리 당시

<표 4-6>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 분리 당시

수준	범주	사례
지역 사회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 아동의 의사 반영되지 않음	“(보호자) 참 이상한데, 이렇게 애를 배치시키는데, 이제 수민센터에서 저희 연락처를 알고 '이런 아동이 있으니까 자리가 있냐?' 이래서 그때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아이를 받고...”
국가	인프라의 부족으로 규정을 위배하여 아동을 보호함	“(보호자) ○○이가 아동 장애인인데, 그런데 지금 어른 장애인 시설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넘었는데 좀 (아이들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의논해서 '오케이 와라' 어른들 장애인 시설에 있으면 재가, 또 다른 학대죠.”
	담당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보에 대한 편차가 발생함	“그 담당자가 어떻게 아동 카드를 기술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또 변수가 또 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와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아이는 주무관님이 노력을 해 주시니까 빨리 가요. (중략) 어떤 구청은 연락도 없으시고, (중략) 담당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업무가 조금 좌지우지된다는 느낌...”

18

분리 이후

<표 4-7>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 분리 이후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끊을 수 없는 관계, 사무친 그리움	“우리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네 식구만, 우리 식구만. 옛날처럼 우리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어떻게요?’, ‘엄마가 화가 풀렸으면 자기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들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집에 갈 생각도 있다’라고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동의 가족	변하지 않는 가정,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	“어쨌든 가정 환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 지금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저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너무 원론적으로만 (하는 것 아닌가...)”

19

분리 이후

<표 4-8>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 분리 이후

수준	범주	사례
지역 사회	다양한 기관,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	“퇴소를 하고 싶은데 퇴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답답함이... (중략) 지금 구청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략)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은 아보전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아보전 의견에 따를 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국가	아동의 보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내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음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결과만 알려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충분히 설명을 못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략) ‘거기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는 걸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거기에 선생님들은 나를 어쨌든 물건 취급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안ดี까운 것 같고요.”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 필요	“(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 없고요. ... 사실은 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도 법제화되어 있거나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입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20

<표 4-9> 실무자·전문가 FGI 자료 분석 요약

범주	내용
아동의 원가정 분리와 관련된 이슈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야 함 • 분리 시 아동과 가족의 자기결정권과 결정권의 제한 • 아동의 이익과 업무 부담 사이의 딜레마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이슈	• 처음부터 가족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의 문제점 • 원가정 복귀는 지자체, 경찰, 아보전, 시설 등의 공조와 협력으로 이뤄져야 함
법률과 관련된 이슈	• 법률적인 판단과 사법부 개입의 필요성 • (원가정 복귀에 대한) 법률 상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 없음
전문가들의 제안	• 아동보호조치의 공정성 확립 •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 정립 • 아동보호시설별 역할 정립 • 지자체와 경찰, 아보전, 시설 등의 역할과 협력을 위한 규정 마련 •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부모의 의무 부과 •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과 지침(매뉴얼) 개발

21

탈북 청소년 원가정 복귀 사례

<표 4-10> 원가정 복귀 과정 분석결과 요약

수준	범주	사례
원가정 복귀 과정	가족과의 잦은 교류를 주선	가족과의 잦은 교류 주선하는 그룹홈
		부모 모임을 주선함
		밴드(SNS)를 통해 소식을 교류함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	다시 가정(현실)로 돌아간다는 두려움
		엄마와의 갈등에 대한 걱정
	원가정 복귀 후에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	원가정 복귀 후에도 연락하고 교류하는 그룹홈

22

IV. 즉각분리 등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족 복귀 실태조사 결과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분석

<표 4-11> 설문조사 계획

구분	분석자료 수	조사내용
분리조치 아동	134부	- 양육환경 - 사회환경 - 참여 및 의사표현 기회
분리조치 보호자	90부	- 아동보호 조사과정 및 아동분리보호 조치 경험 - 아동 분리보호 기간 경험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지원 - 보호자/부모 지원 및 옹호 - 아동 분리보호 조치 담당자에 관한 인식
분리조치 관계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80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치료보호시설 실무자 171명	- 양육환경 - 사회환경 - 아동 분리보호 과정의 참여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

'아동'

- '부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이곳(분리보호 시설 혹은 기관 등)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
- 반면, '부모'와 헤어지는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
-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이 지내게 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

➡ 분리보호 조사 과정에서 '아동 자신'의 관련된 회의에 참석이 부족하고 '아동 자신'이 지낼 곳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음

<표 4-12>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N=134)

문항	남자	여자
9. 이곳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	118 88.1	16 11.9
10.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지내게 될 곳(시설, 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	67 50.0	67 50.0
1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121 90.3	13 9.7
14.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은 믿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지 않도록 돌만 안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16 86.6	18 13.4
15.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56 41.8	78 58.2

'아동'

-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연락하고(만나고) 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아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등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2.7%~67.2%
-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는 연 1~2회가 39.6%(53명), 월 1~2회가 26.1%(35명), 주 1~2회 이상이 15.7%(21명), 주 3회 이상이 18.7%(25명)으로 나타남

▶ '부모'와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3> 분리조치 된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

(N=134)

문항	예		아니오	
	n	%	n	%
8.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연락하고(만나고) 있다.	90	67.2	44	32.8
9.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아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85	63.4	49	36.6
10.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85	63.4	49	36.6
부모님과 의 관계	① 연 1~2회		53(39.6%)	
	② 월 1~2회		35(26.1%)	
	③ 주 1~2회		21(15.7%)	
	④ 주 3회 이상		25(18.7%)	
11. '부모님'(어느 한분이라도)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만났고) 있나요?				

25

'아동'



Q. 양육환경에서
'받고 있는 보살핌'이
달라질 수 있다면?

A. 개인방, 자유, 개인 공간,
핸드폰, 개인 노트북,
방배치, 등

26

‘아동’



Q.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바꿀 수 있다면?

A. 가로등, CCTV, 놀이터, 담배(금연구역), 술집이나 유흥업소 줄이기, 등

27

‘아동’



Q.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A. 친밀, 친구, 화목, 가족 같은 관계, 사생활 보호, 평등 관계, 등

28

'아동'



Q.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살핌'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A. 사랑받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자주 만나고 싶다,
칭찬 받기 원한다, 등

29

'아동'

-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4점 만점에서 "보호자"와의 관계' 3.51점,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3.49점, '거주지 안전', '규칙적인 생활', '아동에 대한 관심'은 3.23점~3.40점으로 나타남
- "부모님"과 관계,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표 4-14> 분리조치 된 아동의 양육환경 만족도

(N=134)

양육환경	M	SD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3.49	0.62	2 (1.5%)	3 (2.2%)	56 (41.8%)	73 (54.5%)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3.40	0.61	1 (0.7%)	6 (4.5%)	66 (49.3%)	61 (45.5%)
'보호자'(현재 돌봐주시는 분)와의 관계	3.51	0.55	0 (0%)	3 (2.2%)	60 (44.8%)	71 (53.0%)
'부모님'과의 관계	2.86	1.13	24 (17.9%)	24 (17.9%)	33 (24.6%)	53 (39.6%)
규칙적인 생활	3.33	0.59	1 (0.7%)	5 (3.7%)	77 (57.5%)	51 (38.1%)
나에 대한 관심	3.23	0.65	2 (1.5%)	10 (7.5%)	77 (57.5%)	45 (33.6%)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2.83	0.99	18 (13.4%)	24 (17.9%)	55 (41.0%)	37 (27.6%)

30

'아동'

- 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 실태 결과, 학교에서 분리보호 아동의 생활환경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다', 등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49.3%~53.7%로 나타났다.

➡ 분리보호 되면서 학교를 옮기게 된 참여자는 절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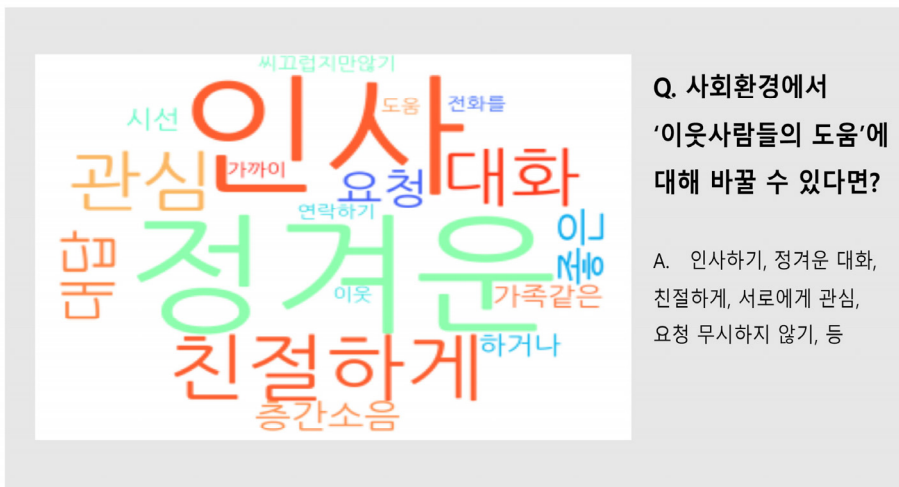
➡ 그로 인해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와 연락하는 것이 변화된 것을 확인

<표 4-15> 분리조치 된 아동의 사회환경 실태

(N=134)

문항		예		아니오	
		n	%	n	%
학교생활	9.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다.	69	51.5	65	48.5
	10. 현재 학교생활이 즐겁다.	118	88.1	16	11.9
	11.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것(운동, 미술, 음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128	95.5	6	4.5
	12. 학교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126	94.0	8	6.0
친구관계	13.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66	49.3	68	50.7
	14. 현재 친한 친구가 있다.	128	95.5	6	4.5

'아동'



32

‘실무자’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한 빈도는 월 1~2회 비율이 40.6%로 가장 많았고, 주 3회 이상이 6.4%로 가장 낮았음

<표 4-16> 실무자가 인식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N=251)

내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1.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08	82.9	13	5.2	30	12.0
2.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3	76.9	14	5.6	44	17.5
3.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중점 두는 서비스(활동)가 있다.	137	54.6	58	23.1	56	22.3
4.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	154	61.4	3	14.7	60	23.9
5.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자/부모에게 안내를 하였다.	160	63.7	16	6.4	75	29.9

33

‘실무자’

<표 4-17> 실무자가 인식한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 상호연락 빈도

(N=251)

구분	n	%
연 1-2회	31	12.4
월 1-2회	104	40.6
주 1-2회	44	17.5
주 3회 이상	16	6.4
해당사항 없음	58	23.1

Q.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A. 정기적인 만남, 전화

Q.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A. 보호자 연락 두절, 아동 거부, 등의 이유

34

A. '부모'의 인식,
변하지 않는 '부모', 양육 의지,
재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

35

‘부모·보호자’

- 아동 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참여도를 '항상', '자주' 참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55.6%(50명)
 - 조사과정에서 주요 회의 전과 회의 중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항상',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1명)
- ▶ 아동 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부모 및 보호자'는 의견 나눌 기회 및 참여 기회에 대해 응답자 절반 정도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아동 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 및 보호자'의 회의 참여 및 의견 나눌 기회가 좀 더 보장되어야 할 것

문항	M (SD)	항상	자주	드물게	전혀	해당 없음
아동 분리보호 조사 결과 과정에 참여	2.74 (1.05)	24 (26.7%)	26 (28.9%)	19 (21.1%)	13 (14.4%)	8 (8.9%)
아동 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주요 회의 전과 회의 중 의견 나눌 기회	2.51 (0.97)	15 (16.7%)	25 (27.8%)	29 (32.2%)	13 (14.4%)	8 (8.9%)
아동 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담당자가 존중함	3.02 (0.99)	31 (34.4%)	30 (33.3%)	11 (12.2%)	9 (10.0%)	9 (10.0%)

36

'부모·보호자'

Q. 조사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건강에 영향을 줌
솔직히 나에게 크게 다가온 피해는 없었다. 다소 심적으로 힘든 기간이었을 뿐..
죄인입니다.
자존감 저하, 자존감에 영향, 자존감이 떨어짐
'조사를 받는다고 자존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조식 질문 지양 요청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해당기관으로 문의를 일일이 하고 데리고 다니는 과정이 어려웠었다.
조사기간 지원이 없었다
아동의 의견만 수용됨
아동인권 존중에 비해 어른 인권 비존중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했음 좋겠음

<표 4-19> 분리 보호조치 기간

(n=90)

구분	n	%
3개월 미만	21	23.3
3개월 이상 ~1년 미만	9	10.0
1년 이상 ~2년 미만	13	14.4
2년 이상	47	52.2

37

'부모·보호자'

- 분리조치 후 도움 받은 경험 56.7%(51명), 가정 복귀 후 도움 받은 경험 50.0%(45명)

▶ 분리보호 조치 이후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표 4-20> 아동 분리보호 조치 된 이후 '부모 및 보호자'의 도움 받은 경험

(N=90)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분리조치 된 이후 도움 받은 경험	51	56.7	21	23.3	18	20.0
가정복귀 후 도움 받은 경험	45	50.0	26	28.9	19	21.1

<표 4-21> 아동 분리보호 기간 '부모 및 보호자'의 연락

(N=90)

문항	예		아니오	
	n	%	n	%
분리조치 기간, '자녀'와 연락한 경험	70	77.8	20	22.2
'자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연락	52	57.8	38	42.2

<표 4-22>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

(N=90)

구분	n	%
연 1~2회	21	23.3
월 1~2회	39	43.3
주 1~2회	13	14.4
주 3회 이상	17	18.9

A. 경제적 여건, 양육태도,
책임감, 가정 환경,
질병 치료, 등

39

A.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해서,
취업활동 어려움,
시간상 문제, 참여 시간,
등으로 인해

40

IV. 즉각분리 등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족 복귀 실태조사 결과

3. 시사점

- 아동의 연령, 개별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가정복귀 판단 척도가 마련되어야 함
-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갈 수 있는 시설의 물리적 구조, 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
-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의 분리, 보호, 가정복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하고 준수해야 할 인권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이 필요
- 관련 관계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시스템)이 필요
- 원가정 복귀에 대한 지원 활성화

41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등에 관한 처벌법' 조항의 연관성 명시와 분절문제 해소

- 아동의 분리보호에서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도록 규정 ➡ 중첩적용 혹은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는 각하되는 현실 개선 필요
- 조사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매뉴얼 중심의 업무지침보다 상위의 시행령이나 훈령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
- 매뉴얼 의존 현실과 미공개 개선
- 매뉴얼에 관련기관 간의 협업과 책임, 역할에 대한 사항 명시 필요

42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2) 명확한 아동분리기준 마련과 법률상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빈약한 법률 사항 보강

- 분리조치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 재량이 너무 큼 → 분리판단에 대한 다학제적 확인 절차 필요
- 아동에 대한 모든 시설 분리 보호 결정은 사법적 절차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분리시 분리필요성에 대한 평가 요구(부모의 인식과 양육역량 및 아동의 행동 등 포괄)
- 학대 피해아동 보호기간(일시보호, 장기보호) 별률 명시 필요

3) 아동보호 관련 담당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과 서비스 통합

- 현재의 분리조치(행정적, 사법적) 체제는 자칫 서비스의 분절과 파편화로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다른 부처와 협력을 도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플랫폼 필요
- 다양한 서비스 전달기관의 서비스 제공체계 통합이 필요

43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4) 취약가정의 발달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 전략 수립

- 취약위기 아동의 생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음
- 요보호 유형에 따른 아동발달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아동의 시설 분리 이후 발달 성취 등에 대한 지원과 팔로우 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취약위기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와 발달지원 계획 수립 필요

→ 이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통합이 가능할 것

→ 아동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추가적인 도움 여부 판단에 도움

44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5) 위기가족에 대한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3대(우울 등 정신질환, 실직상태의 가족, 알콜 등 중독) 가족 위기유형을 가진 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수립
- 아동분리 이후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다학제적 원가정 복귀 평가 기준 마련
- 원가정 복귀 훈련 과정의 정교화 및 전문가 지원·평가
- 원가정 복귀이후 가족기능 지지 서비스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고도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지지·지원 서비스 매뉴얼 마련
- 가정에 대한 다학제적 양육역량 평가

45

가족지원 체계 구축: 가족 허브 네트워크(가칭)

- 3대(우울 등 정신질환, 실직상태의 가족, 알콜 등 중독) 가족 위기유형을 가진 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수립
- 아동분리 이후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다학제적 원가정 복귀 평가 기준 마련
 - : 가정의 안정성에 대한 다면 평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원가정 복귀 훈련 과정의 정교화 및 전문가 지원, 그리고 평가
- 출산전후 개별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
 - : 출산전후 우울감 등 예방, 지지 서비스, 및 양육유능감
- 조산아, 중증질환의 아동, 장애나 발달지연 아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지원
- 원가정 복귀이후 가족기능 지지 서비스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고도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지지/지원 서비스 매뉴얼 마련
- 가정에 대한 다학제적 양육역량 평가
 - : 부모의 편리와 욕구로 인해 아동을 분리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필요

46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6) 데이터에 근거한 아동보호체계 작동 및 정보 공유

- 정부가 정책 설계 및 실행상황 보고, 그리고 서비스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은 중요
-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관간의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의 여러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

7)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와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 개발

- 아동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아동의 발달상황과 개인적 특성이 고려된 보호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 보호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 등 서비스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과 교육

47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 조치 과정과 분리 보호

1) 아동의견 표현과 청취 등의 참여권의 보장

- 보호조치계획 수립시 아동의 의견 청취·진술권 보장
- 보호조치를 결정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진술권 보장
- 아동에게 가정복귀 신청을 위한 권리 보장
- 퇴소결정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의 의견 청취·진술권 등 보장
- 퇴소 취소 결정시 아동의 의견 청취·진술권 등 보장
- 분리보호과정에서 분리 보호 상황과 이후 생활에 대해 아동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가능할 수 있어야 함

48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2)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기관의 명료한 역할과 책임 규정

- 관련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연관성을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제공이 필요

3) 분리 이후 아동의 부모 면접권 보장 명시

- 아동의 분리보호 이후 부모의 면접권을 보장해야 할 것
- 아동의 분리보호 이후 부모는 아동을 면접해야 할 책임 명시

4) 분리 이후 학교 등 아동의 생활환경 유지 관련 규정 마련

- 분리보호 이후 학교 등 아동의 생활 환경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분리보호 이후 학교 등 전학으로 인하여 생활 환경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마련

49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5) 가해 부모 분리 방안

- 보호중심의 아동복지적 관점에 대한 과몰입으로 인한 가해자가 아닌 아동 분리를 강화
- 행위자 분리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및 사법체계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가해자에 대한 분리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가해자 체포와 아동안전장치 마련, 가해자 임시조치 중 유치 처분 적용, 가해자 접근 금지 조항 및 사건관리 회의 조항 개정, 감호 위탁시설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일시거주 시설 확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 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50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6) 분리 보호시설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지원과 평가

- 아동이 시설의 보호자와 맺는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 필요
- 상담치료 외에도 정서적 안정과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지역사회 전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 마련

7) 가해 부모의 보호

- 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주변으로부터 충분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

51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1) 아동분리 보호 직후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시작 프로그램

- 부모 면접 책임 규정
- 아동·부모 면접 권리 규정

2) 시설 분리 보호 기간 동안 부모 등 가족과의 관계 유지 프로그램 및 보호 시설에 대한 평가

- 대안가족 발굴
- 관계의 질, 행동변화,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과 평가, 피드백
- 아동생활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평가 절차 마련

52

V. 분리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 보호정책 방안

3) 원가정 복귀 직전 원가정 복귀 평가 프로그램

- 관련기관 망라한 심사절차와 과정 체계화
- 심의사항 : ①학대 유발 요인 해소 정도, ②재학대 유발수준 평가, ③아동과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 수준 (원가정 복귀 후 갈등상황 대처 역량), ④재애착 발달 수준, ⑤소득 안정성, ⑥부모문제 해결 수준, ⑦자녀 문제 해결 수준, ⑧기타 학대 유발 요인 상존 수준, ⑨위기 시 대응방안, 등

4) 원가정 복귀이후 아동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원가정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절차와 과정 명시적 규정
- 고려사항 예시 : 가족 실직여부, 경제적/주거여건/건강상의 안전, 아동학대 유발요인 등

53



감사합니다

54

토 론 문

김민애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김정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김형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팀장)



토론문



김민애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부터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 과정에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수많은 아동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들이 남긴 유산으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꾸어 놓은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우리사회는 더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문제를 접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 물음에 실천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들은 어떤 선택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시사점과 제언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아직은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하는 전담공무원들과 아보전 상담원들에게는 아동의 보호권을 실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동의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와 아동분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현장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변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아보전 위탁법인인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마련하였고 법인 위탁 아보전들은 아동의 청문권을 사업에 반영하여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학대문제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은 성인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미성숙함과 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발달권이 부가된 특별한 이슈이기에 오늘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아동인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오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께 아보전 현장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같이 힘써주셔야 할 일들과 사회가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국가책임제로 아동학대현장조사와 판단, 그리고 사례종결의 업무를 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과 행위자,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분리 보호된 아동들의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지원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수행하는 체계로 변화되었고, 몇몇 지자체들은 20년부터 공공과 민간이 분리되어 업무를 시작하여 3년차에 접어든 곳도 있으나 일부 아보전은 현재까지도 현장조사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지원업무가 끝나는 내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온전히 전문사례관리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수행했던 아보전에서는 현장조사 업무, 사건처리, 분리보호 등 수많은 공적업무들을 수행하면서 특화된 전문성이 쌓여고, 어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법적 체계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조사 이후 사례관리업무는 행위자들이 징벌적 패널티 처럼 느끼는 감정을 갖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아보전에 대한 반감, 저항,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아동의 생사확인 정도만 겨우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환경과 양육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보전들의 사례개입을 거부하는 당사자들로 인해 상담원들의 감정적 소진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례관리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현장을 떠나는 상담원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

습니다. 아보전 상담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2.3년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아동학대대응업무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공무원 영역으로 분리하고 아보전들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사례관리기관들과는 달리 비순응적이고 저항적인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분리 조치는 아동복지법과 처벌법으로 적용되는 법적 이행속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우리현장에서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일시보호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의 변경 청구 시 ‘아동의 의사 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보전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첫째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둘째로 원가정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 셋째로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하는 것과 네 번째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로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원칙에 따라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담, 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 4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도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를 1. 상담, 조사, 사정 2.보호계획 및 결정, 3. 보호조치, 4. 종결, 5. 사후관리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욕구조사표, 아동상황점검표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2단계 보호계획 및 결정에서는 만 12세 이상 아동일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사항이 사례결정위원회 보고사항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3단계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보호조치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4 단계 원가정복귀에 대한 아동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야 하고, 종결계획에서도 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법의 아동학대사건에서도 특례법 21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이 있고,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임시조치 기간 동안 후견인 임무를 임시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때에도, 판사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 아동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명령의 취소나 신청, 기간 연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시에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 보호시설의 종류, 특징, 시설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반드시 안내하고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매뉴얼이 있으나 분리보호에 있어서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아동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보전들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동학대발견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보전들이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 발견, 조사, 보호 업무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재학대예방, 아동의 안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가도 이러한 목표를 갖고 아보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에서 무엇이 최상의 이익일까

무조건 아동의 의견에 따라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안전을 기준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으며, 아동의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견보다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 해왔습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듣는 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법정에서 학대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로 인해 또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아동의견의 청취와 안전을 위한 보호

아동분리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때 시설보호에 대해 특히 학령기 아동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생활환경에서 벗어나는 부담, 핸드폰 사용의 제약, 학교전학 문제 등 피해는 아동이 받았는데 아동이 가정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부담함을 호소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의 가출, 비행행동으로 인한 재학대로 아동이 여러 번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보호시설로 분리되기를 강력하게 원했을 때, 보호시설에서도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서도 아동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렵다고 강제 퇴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동의견을 반영하여 분리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흡연, 음주 문제가 있는 아동 경우는 보호시설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후 보호시설에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가? 충분히 듣기 어려운 업무 환경의 문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을 보호할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보호시설 또한 아동 친화적인 환

경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들의 스킬 부족으로 아동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는데 피해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내기 어려운 어린 아동이 의견을 자주 바꾸는 경우, 스스로가 자기 의견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견을 내는 경우,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의견존중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원들이 관리하는 케이스 수가 많게는 60건이 넘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4.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 상충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행위자,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시구군의 학대전담공무원, 보호전담공무원, 아보전 상담원, 피해 쉼터 종사자가 있습니다.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아동과 재결합하기에는 시기상조임에도 전담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민감성으로 행위자의 강력한 민원 제기가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보호전담공무원과 아보전 상담원, 쉼터 종사들은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사례 관리권한을 일부씩 갖고 있으나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아 어떤 기관이 주사례 기관인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5. 판단에 따른 부담감.

사례판단, 원가정복귀판단에서 상담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아보전과 상담원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동의 안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관련 판단의 책임을 특정인, 기관에게 지우는 문화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다양한 사례관리기관 연계의 어려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아동들과 가정들은 대부분 비순응적이고 저항적이라 타기관 연계가 어렵습니다. 분리보호 그 당시에는 행위자들은 아동과 재결합을 위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가정복귀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아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도 어렵고,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분리 이후 재결합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감정적인 어려움을 상담원이 시간을 갖고 해소해주기가 어렵습니다.

7.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위치한 곳에 있는 아보전에서 가족재결합프로그램을 지원

피해아동이 A아보전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분리보호되어 다른 지역 B쉼터로 보호되는 경우 쉼터가 있는 지역 C아보전에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동과 가정에 대해 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아동에게는 사례관리자가 변경됨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상담원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의 규정과 권한 확대필요

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조치를 결정하고 난 후 부터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에게 맞는 시설을 찾아 배치하고 아보전은 행위자의 양육태도에 대한 변화와 가정환경을 변화시켜 최대한 아동이 빠른 시일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보호전담요원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사례관리와 원가정복귀시점을 아보전과 논의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배치 보호전담요원의 숫자도 적고, 매뉴얼도 모호하여 아보전이 알

고 있는 보호전담요원의 역할과 보호전담요원들이 알고 있는 업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아동분리보다는 가해부모 분리방안 필요

가해부모 분리방안이 있다면 비가해 부모나 친척에게 아동이 살던 곳에서 아동을 돌보게 하고 가해부모에 대한 일시거주 시설이나, 감호위탁과 같은 형태의 분리방안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행위자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부양을 위해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면접교섭권 실시

분리초기부터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가정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분리보호된 아동들에게 빠른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아동의 의견청취가 가능하지만, 보호전담요원, 아보전상담원, 시설담당자들의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편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전방 기관입니다.

우리 상담원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성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하여 아동의 의사와 견해를 확인하고 의사 결정을 도울 때 궁극적인 아동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아동보호절차의 단계에서 아동의 연령, 발달수준에 맞게 아동의 의견을 듣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아동의 의견을 중재할 옴부즈퍼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보전상담원들이 그 일을 해오고 있었으나 제3자를 통해 입장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아동보호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여 배치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영아전담, 청소년 전담 등 아동보호 관련시설의 다양화와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전담쉼터라든지, 피해아동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것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상담원들의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고, 이런 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 수퍼비전의 체계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인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은 아동들에게 2차적 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분리조치에 있어서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현장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인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아동보호 전문사례를 다루는 상담원들이 인권감수성을 갖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항적이고 거부적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에서 가족회복을 돕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상담원들의 노력에 대해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 인정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동과 가족, 아동보호업무를 하는 실무자와 아동학대사건처리를 하는 법조인,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아동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보장해나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문



김정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1. 들어가며

우선, 아동인권과 아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2022년 아동인권 보고대회라는 뜻 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옥경 교수님의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는, 아동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분리조치의 근거와 그 절차, 분리이후의 원가정 복귀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아동인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아동분리 시스템을 통하여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법적, 절차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 실질적, 실천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특히 교수님의 발제중 아동분리에 있어서 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함) 조항의 연관성 명시와 분절문제의 해소, ② 아동보호관련 담당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과 서비스 통합 및 협력, ③ 분리조치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권 보장 등의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연관성 명시와 분절문제 해소

- 발제자께서는 아동을 가정 외 분리 보호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으로서 제15조의 보호조치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서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이 중첩 적용되거나 혹은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는 각하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조치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 분리규정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분리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즉시분리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응급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조치)** 먼저,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2020. 4. 7. 신설된 아동복지법 22조의 4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제15조의 제1항의 보호조치가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보호조치로서, ①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보호대상 아동을 ② 친족에게 위탁, ③ 가정위탁, ④ 아동복지시설 입소 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소, ⑥ 입양 관련 조치 등입니다.

- **(즉시분리조치)** 특히, 최근 2021. 3. 30. 시행된 아동복지법 상의 ‘즉시분리조치’에 대해 보면,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검사의 사후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③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④ 그 밖에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는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조 제6항).

- **(응급조치)**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①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②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③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입니다(법 제 12조 제1항).

그런데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분리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에 따라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제15조, 사후 임시조치).

위 임시조치로서, 학대행위자에게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 ⑥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위탁,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피해아동은 응급조치로 보호시

설로 인도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상담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⑥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⑦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⑧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⑨ 후견인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⑩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피해자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분리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학대현장을 발견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과정에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리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즉시분리조치 등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으로도 분리조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분리조치를 할 수 있어 여러 분리제도를 통해 피해아동을 중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분리조치 중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후의 긴급임시조치는 그 신청권자가 사법경찰관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의 주체가 법원으로서 각각 피해아동의 분리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즉시분리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피해아동 분리 이외에 사법적 처분으로서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법제14조 제2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조치로서 아동을 분리했을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여 피해아동 분리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의 피해아동 보호와는 별개로,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 보호절차가 공백없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분리규정의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응급조치 효력 기간 문제)**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 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사후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3항, 제4항).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이후 피해아동 분리의 효력과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피해아동을 계속하

여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응급조치의 기간 제한 규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응급조치 효력 기간 경과 후에 보호시설에서 피해아동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간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 문제)** 다음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학대처벌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등의 분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 47조).

그런데 법률상 청구권자로 검사(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과정,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판과 보호처분 등의 과정에서 피해아동 분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소년부송치하는 경우 이미 행해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어(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2020. 10.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에 검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예에 따라, 검사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 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보호관련 담당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과 유관기관의 협력

○ 발제자께서는 분리보호과정, 분리보호 이후 및 가정복귀 이후 등 과정에 따라 아동인권에 기반한 보호서비스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제공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기 가족에 대한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아동보호체계 작동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저는 특히 아동보호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서비스의 통합,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논함에 있어 사법 영역을 담당하는 검사와 법원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검사와 법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처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는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반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중요성)**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특히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제4조)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① 아동학대처벌법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수탁기관장(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아동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피해자지원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에서는 아동학대사망, 중상해 등 중요사건, 피해아동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피해아동 보호방안,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합니다. 즉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피해아동의 심리,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복지담당 기관으로부터는 향후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계획에 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태도 및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취하고,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위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 법원을 포함한 유관 기관 간에 상호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에 수집된 정보, 제공된 서비스 내용,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처분 등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되어 각 기관 간에 피해아동 보호라는 역할수행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정보공유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한 더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분리조치과정에서의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발제자께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분리절차에서 아동의견 표현과 청취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12조 제1항), 위 법 시행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령 제5조).

- 또,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할 경우와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를 함으로써 아동분리조치를 할 경우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15조 제5항).

○ 그러나 아동분리에 있어 아동의사 존중에 대한 위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위와 같이 선언적, 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실무상으로도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존중되는 지에 대해서는 담당자마다 차이가 크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와 피해아동 보호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등의 이유로 대체적으로 아동 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아동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학대피해를 당한 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는 재학대의 위협으로

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피해아동의 의사뿐만 아니라 개별 사례마다 당해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학대 위험의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 학대행위자의 성향과 태도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리조치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아동이 말을 할 수 없거나, 진지한 의사를 표시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분리 조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데 학대행위자가 동의하였다는 의사를 반영하여 분리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로 재학대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피해아동이 시설의 규율과 통제에 따르기 싫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여 다시 분리조치를 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 아동분리에 있어서 분리를 통한 아동의 안전 보장과 원가정의 유지 또는 복귀라는, 일응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치 중 어떠한 가치에 우선을 두어 분리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례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아동 분리는 결국 아동복지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아동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에 이르렀다면, 분리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아동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고, 아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분리조치의 상황과 그 의미, 이유, 예상되는 구체적 환경변화,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분리조치를 결정하거나, 분리조치를 결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결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아동분리에 있어서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진지한 의사를 청취하여 아동분리여부, 원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중요한 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

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 규정의 마련과 함께 저를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은 분리조치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상황 및 이유에 대한 설명, 분리조치에 대한 의견 청취, 의사 존중이 단순히 선언적, 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나오며

이번 2022년 아동인권보고대회 황옥경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하여 아동분리 조치에 있어서의 아동의 안전과 원가정 복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복지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유관기관 간 협력의 강화, 아동분리조치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와 아동인권 보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김형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팀장)

- 본 연구는 학대피해아동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현장 실무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와 현행 법제도 분석 등 관련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었고, 행정적, 법적 차원의 미비한 부분, 보호조치와 관련한 정서적,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성과는 크다고 생각된다.
- 본 토론에서는 분리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당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특히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도대체 지원체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대기업의 서비스 체계까지 요구하는가?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아동의 참여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동의 의견존중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주저와 망설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묻고, 끝까지 듣고,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계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지원에서 여기까지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 학대가 이루어졌고, 아동은 명백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안 속에 살아야 했고, 그 결과 생존하기 위해 아동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보호자와 분리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분리 이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환경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 과정 어느 한 순간 한 순간 모두 아동은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 그래서 모든 행정적, 사법적 과정에서 당사자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관점은 관련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인식의 내용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즉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한다. 아동인권 분야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분리조치의 대원칙은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 인권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차별없는 지원,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원, 관련 조치가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아동의 의견존중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동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관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본 연구 제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차별 없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설배치, 시설 환경에 따른 지역 격차 문제 해소 등, 발달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특성과 상황(형제자매, 장애, 교육문제, 지역 이동 등)을 고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견존중과 참여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절차 등에 있어 설명책임과 선택권 부여,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담당자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감안하여 당사자 의견에 대한 통찰, 즉 아동의 의견대로 한다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동의 의견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분별한 의견인지(이 경우 아동의 의견이 무분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의견의 원인은 일회적 설명에만 그쳤는지 등 설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성찰이 필요), 오히려 그 의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통찰하는 힘이 업무부담과 고충, 행정적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종사자들에게 요구된다.

- 본 연구의 연구진, 본 연구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등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과정 과정상의 아동의견의 중요성을 직,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는 누구의 시간과 누구를 위한 장소, 아동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할 것인지 등 이에 따른 행정력의 투입과 사전 이해, 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에 채택되고 1991년에 정부 비준을 거쳤으니 30년이 지나고, 아동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이야기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조금씩 변화의 모습은 보이나 아동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환경이 각 분야, 각 기관 등에서 준비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늘 기획되고 행사에 동원되지 않았던가.
- 분리조치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실효성을 따질 문제도 하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도 늘 한꺼번에 바뀔 적은 없으니 이 중에서 무엇이 앞으로 개선될지, 가용자원의 최대한과 더불어 더 많은 지원책 마련과 관심, 체계를 정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환경이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마지막으로 분리보다 일상으로의 회복과 복귀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점이다.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때로는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강제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회피나 의지 부족(연구진이 분석한 보호자들이 편함에 익숙해지는 문제 등)가정으로의 복귀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 끝.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3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 2022 아동인권 정책 모니터링 사업 연계



발표 1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모니터링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모니터링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서 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아동 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모두 27차례 개정(2008.09. 전부 개정 포함)되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¹⁾로 정의하고, 그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해서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등을 통해 규정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 포함)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폭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이와 함께 따돌림(1의 2)과 사이버 따돌림(1의 3)을 정의하고 있음.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아동이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국가 행위자 포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박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를 금지·예방·대응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19조 제1항).”

이는 다시 모든 아동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²⁾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13호 일반논평³⁾에서는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⁴⁾”는 전제 아래,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1차 예방(공중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및 여타의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짐)은 가장 중요하다(para 3 g).”고 강조한다. 이때 아동폭력에는 “아동 특히 아동집단이 다른 아동에게 자행하는 집단따돌림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등 학교폭력”(para 27)⁵⁾이 포함된다. 즉, 학교폭력을 포함한 아동폭력 문제 역시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강력한 의지로 해결해야 하며, 교육과 사회서비스 등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방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적 조치’(일반논평 제13호 para 4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바탕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제13호), 그리고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생명 및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 견해 존중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하는 일반논평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021년까지 모두 25개 일반논평이 발표되었다.

4) 일반논평 제13호 para 3(개관) (a)의 이 내용은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 보고’(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A/61/299), 제1항(para 1.)를 근거로 제시.

5) 제13호 일반논평 para 27(아동 사이의 폭력) - 이것은 아동, 특히 아동집단이 다른 아동에게 자행하는 집단 따돌림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 집단 따돌림은 단기적으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보전과 복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교육 및 사회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 폭력집단은 피해자로서 또는 참여자로서의 아동에게 심각한 희생을 초래한다. 비록 아동이 행위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시도에 있어서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 대응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는 처벌적 접근법을 택한다든지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하여 폭력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의 권고 등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황

1. 권고 및 실태조사 결과

1)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5·6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최종 견해)에서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 등을 참고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폭력 및 학대신고 장려”를 위한 노력을 권고했다.

2) 학교폭력 피해 응답 증가…초등학교(3.8%), 언어폭력(41.8%) 유형 가장 많아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로 2021년 1.1%에 비해 0.6%p, 2019년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전국의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진행(4.11~5.8)한 조사의 참여율은 82.9%(약 321만 명)이다.

6)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미포함.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회 조사를 1회로 축소 진행.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의 순이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신체폭력’의 경우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에서, ‘집단따돌림’의 경우 고등학교(15.4%)에서 언어폭력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2차례 실시(4월 전수조사, 9월 표본조사)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9월에 1차례 전수조사(조사 참여율 82.6%)로 축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2022년 실태조사 자료에는 비교치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자료(2021.01.21.)에선 피해유형별 비중이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난 점, 학교급별로 비교할 때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한편, 2019년과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비교한 경우, 언어 폭력은 35.6%에서 41.7%로 증가했다. 학교밖 폭력은 2019년 24.3%에서 2021년 40.6%로 크게 늘었다가, 22년에는 34.3%로 감소했다.

2. 2022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어울림프로그램 통한 학급 단위·교과과정 연계 교육 내실화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의 책임 아래 진행되며, 동법 시행령(제17조7)에 따라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 정책 방향은 2020년 1월 발표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⁸⁾과 2022년 3월 24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학생에 대한 예방 교육 외에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5호),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6호)고 규정하고 있음.

2022 시행계획(안)⁹⁾을 따른다. 이밖에 지난 9월 6일 발표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계획에도 예방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정책 영역¹⁰⁾ 중 예방 교육과 관련한 영역은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와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에 해당한다. 관련한 추진 과제는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대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교과과정 속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계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2년에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각 학교에서 연간 8차시 이상 편성·운영하되, 초등 3학년 이상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2~3차시)을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수업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교과연계) 어울림프로그램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아래 그림 참조)을 활용하게 된다.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교육부에서 2020. 01. 15 발표함.

9)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으로, 4차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 과제에 더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2021.12.15.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통해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음.

10) ①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 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 학생 교육·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이며, 4차 기본계획은 이들 5개 영역별 추진 과제로 구성됨.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opbullying.re.kr/mps)의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화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¹¹⁾은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자기존중감·갈등해결·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으로 세분화한 자료를 제공한다. 역량별 자료는 또 학교급별(초·중·고교), 수준별(기본·심층) 구성으로 학교, 학급 특성에 맞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¹²⁾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버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상의 6대 역량에 사이버 자기조절과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을 더한 세분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추세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을 키우기

11) 교육부는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2022.02)에서 2022년 2월 말까지 어울림프로그램 총 142종(어울림 90종, 사이버어울림 52종)의 개발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1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의 학교급별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지속적으로, 6년간 역량을 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반영. 중학교의 경우, 공격성과 적대감 등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발달시기를 고려해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고교는 입시 준비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철저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위해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홍보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교구 개발(초·중등 각 1종), 민간 협업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및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지정·운영 등을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으로 시행 중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초등 학년군별(초 1~2/초3~4/초5~6)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급도 신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22.1.17. 개정, 3.1. 시행)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민감성¹³⁾ 향상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2) 어깨동무활동 통한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제4차 기본계획은 일회성 집합 교육 형태의 예방 교육을 학급 단위로 전환하고, 학생 참여·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3차 기본계획과 연속성을 갖는 예방 교육 정책으로는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과 함께 어깨동무활동을 꼽을 수 있다. (왼쪽 그림 참조)

어깨동무활동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topbullying.re.kr)의 어깨동무활동 소개 화면.

13) 타인 이해 및 정서적 공감 정도, 의사소통 기술 및 타협과 설득 능력, 갈등 상황 인식 및 합리적 대처 능력, 소속감과 자신감, 정서 인식 및 부정적 정서 조절능력 향상 정도, 언어 사용 습관 정도 등.

고자 도입된 프로그램¹⁴⁾으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서도 또래가 참여하는 유사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어깨동무활동은 학교의 특색에 맞춰 또래활동(또래활동 프로그램, 또래상담),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언어폭력 및 언어문화개선 활동, 학교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가운데 또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적 또래관계 개선과 올바른 또래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친구알기, 친구와 소통하기, 친구되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6차시로 구성해, 학교급별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지원 학생을 선발해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또래상담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예방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학교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학생 서포터스단’을 2021년 21개 팀(초등~고교)에서 2022년에는 34개 팀으로 확대 운영해, 학생자치회와 동아리 등이 중심이 되어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캠페인 등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3)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 인식 제고¹⁵⁾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학교예방법(제15조 2항)에서부터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예방법과 시행령에서는 또 학부모 교육에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는 이에 따라 초등 저·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 학부모용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은 학생 대상 어울림프로그램과 같이 6대 역량별로 2차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 원격 콘텐츠로 ‘공감 및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자녀의 감정을 읽는 대화기술 감성코칭하기’,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갈등해결’ 등 모두 5차시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학부모 On누리’(www.parents.go.kr)를

14)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어깨동무활동 소개 내용 참조

www.stopbullying.re.kr/board?menuId=MENU00390에서 2022.10.31. 인출.

15)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에서 밝힌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 방향 제목과 같음.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클릭! 미디어리터러시(5차시)’ 콘텐츠 개발과 함께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보호자)의 자녀(아동) 이해와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한 학부모 소식지(분기별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 2020년~)도 지속해서 배포한다고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문제점

앞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한 현황에서는 최근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제4차 기본계획 및 2022년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은 학급 단위로 8차시 이상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깨동무활동을 통해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별 변화로 볼 때, 2020년부터는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이 개인 역량 강화와 학교 문화 조성으로 구별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울림프로그램이,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어깨동무활동이 중심(박지현, 2021)이라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학교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예방 교육 정책의 목표로 정한 것은 당연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부합한다. 이를 위한 교육 정책 즉 교과과목과 연계한 어울림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학급 단위 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학생 참여·체험형 활동 강화는 기획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망의 씨줄과 날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수정되었는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동 모두가 차별 없이 권리의 주체로서 학습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의 미비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로 정착시키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족한 교육 시간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가장 큰 한계는 교육 시간의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기준 시수를 학급별로 연간 8차시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에는 연간 6차시였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운영 예시를 통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프로그램의 지속적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 개개인의 학교폭력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속적인 교육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최소라고는 하지만 연간 8차시로선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상황은 초등학교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과연계 어울림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교육 시간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 시간 부족은 단적으로는 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비롯한 문제다. 이 때문에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학교 교육 현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학교폭력의 인과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김철, 2022)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 현실이 ‘차이를 차별로 구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분위기가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도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제13호 등)을 참고해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 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존중, 아동 견해 존중 등의 일반원칙과 아동의 놀 권리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개인별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프로그램 부재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정도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록과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학

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 민감성을 평가해 기록하는 것만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어울림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구성되었더라도 교과목과의 연계로 인한 부작용, 즉 수업을 받은 학생이 어울림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6대 역량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적을 위한 교과 수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권장했지만 강제력이 없기에 이를 담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울림프로그램이 학생 개개인의 민감성 정도를 고려한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과 현장 교육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예방교육과 참여활동 간 연계 부족

올해 교육부는 학생 참여·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효과성뿐 아니라 아동 인권 당사자로서 아동의 참여권 실현이란 측면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래상담 운영학교는 2018년 8205개교에서 2021년에는 8012개교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학생 또래상담자는 2018년 36만 7876명에서 2021년 30만 1985명으로 감소했으며,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2018년 6219명에서 2021년 3319명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가 학생 주도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꼽은 ‘학생 서포터스단’은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 일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며, 시범운영학교는 2021년 21개에서 2022년 34개로 증가하지만 ‘강화’라고 내세울 정도의 숫자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민간 협업으로 지역단위의 문화예술공연이나 영상제작, 캠페인 등 학생 중심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투게더프로젝트 운영 134개교, 뮤지컬 공연사업 7개 지역, 뮤지컬 연습 등 다목적 동아리방 조성 지원 8개교 등에 그

친다. 교육 시간의 부족과 더불어 실질적인 학생 참여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별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이나 학생 참여 활동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즉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으로 습득한 아동 권리 이해와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권감수성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실천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 민감성을 키워가는 순환적인 학습과 참여 활동이 정책적으로 연관을 맺고 제시되지 못한 이유라 판단된다.

정책의 부재뿐 아니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지 않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성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교육 현실 역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천적 참여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벽이 될 수 있다.

4. 형식적 학부모 교육과 현장의 어려움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학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이러한 의무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이 결과 학부모 교육은 여전히 집단교육과 소식지 등을 통한 방식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진 못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차이가 있으며 학부모 가운데 일부만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집단교육에 참여하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학교급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지속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어울림 프로그램을 4년 이상 지속한 학교는 신규운영학교나 2~3년 운영한 학교에 비해 6대 역량 평균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운숙 외, 2020).

학부모 교육이나 학교장의 의지와 관련한 문제를 교육부나 교육청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 해결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충분한 예산 지원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일지라도 실제로는 학교에 부담만 전가하는 탁상행정으로 그치고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선 방안

1. 어울림프로그램과 아동 참여 보장하는 어깨동무활동 간 연계 강화

이제까지 살펴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종합하면,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나 방향성과 같은 큰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단기적으로는 세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학생 다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인권 존중 중심의 예방교육과 참여 활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다 많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시간에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은 필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생의 참여 활동은 앞서 본 것처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분절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활동은 각각 적용 대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학교폭력 민감성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현재 상황에서 개인별, 학년별 핵심 역량이 단계별로 발전될 수 있는 교육과 참여 활동 연계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아동 인권적 요소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고려할 것도 제안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는 현재와 같은 교육 시간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이론적 예방 교육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 교육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과 참여 활동이 연계된 프로그램은 유용하다.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알게된 지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체(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학급이나 모둠 또는 동아리 단위)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고, 회의를 통해 예상 가능한 갈등 상황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등을 논의하는 등의 참여 활동을 생활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시민 단체와 기초 지자체 등에서는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동 정책 마련을 위한 아동 주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으로 2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역시 아동의,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참여의 장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다.

교육과 참여 활동의 연계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학교폭력 민감성을 발달 단계에 맞춰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춰 학년별, 학교급별 교육과 참여 활동을 발달시킴으로써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뿐 아니라 아동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감수성의 실천의지가 향상되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정보제공자, 지지자로서 학생과 함께하는 학부모 활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교육의 연계에서 학부모의 역할도 필요하다. 학부모가 지지자이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관련 정보를 담임 교사 등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문제처럼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활동의 참여 역시 쉽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동적 교육 참가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이자 지지자로서 학부모가 자녀들의 권리 옹호 활동에 함께하는 경험은 자발적 의지를 자극할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학부모의 지지와 퍼실리테이팅 속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참여 활동 간의 연계는 학생 인성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 정착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2019)¹⁶⁾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로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모두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문화 ▲학생 인성 중심의 문화 ▲학생 인권 중심의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학교폭력의 관계자로서 스스로 갈등 상황에서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실천적 인권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학급 단위로

16) 2019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으로 진행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중 설문 결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생활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권 옹호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감과 실천의지 고취 등은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 (2022).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 교육부 (202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제1차~6차)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 권리위원회 일반논 평.
- 국무조정실 (2022).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 력으로부터 안전하 게 지키겠습니다’.
- 김철 (2022). 노르웨이 올베우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OBPP)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 연구, 제28권 제2 호, 243-284p.
- 김하영, 최석환, 심승보 (2022). 국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분석연구. 학구체육과학 회지, 제31권 제2호, 487-497p.
- 권순정, 강하영 (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의미: 인권, 관계성을 중 심으로 한 평화의 학교문화 전환.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제31호, 1-29p.
- 박지현 (2021). 학교폭력 정책 및 법률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와 과 제. 월간교육정책포럼. 제337호, 14-19p.
- 성윤숙, 구분호, 김현수 (2020).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방안 탐 색. 청소년학연구, 27(2), 363-383p.
- 장명선, 김용수, 박수희, 박현미, 이상균, (2019)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 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정책 모니터링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정책 모니터링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1. 들어가며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안 조사는 학교(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판단 및 조치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원화하여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지만,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여전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 현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 접수 및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 사안 조사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
- 사안 조사 결과보고 - 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 내용
학교폭력 사건 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 및 보고	• 신고 접수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관련 학생 안전조치(피해 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원 진료 등, 가해 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 학생 긴급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긴급 선도조치 가능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 -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 조사, 신체, 정신적 진단서, 사진, 동영상, 음성자료, 사이버상 증거, CCTV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 피해 및 가해 학생 심층 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자체해결 요건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

3.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가. 현황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나. 취약점

-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어도 교사가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하여 불신이 발생하곤 한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사안의 축소, 은폐에 대한 의심. 가해학생 보호자는 조기에 사건을 인지,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원망을 학교에 하게 된다.
-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양측에 통보해야 하는데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위반’(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 사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뿐 아니라, 가해학생 측 보호자도 문제 행동에 대해 지도,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학교에 불신이 발생한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가해학생 측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정확히 알려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 이미 학생 확인서 작성 등 사안 조사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 보호자는 왜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내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학생에게 진술서를 받았나며 절차상 하자를 제기한다.

다. 개선방안

- 사건 초기에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사건을 공유하는 것이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신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교사가 임의로 경미성을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건 발생 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고 사안 자체는 ‘비밀누설금지의무’ 조항의 비밀이 아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신고 사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학생을 사안 조사하기 전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내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사안 조사 시 사전 통보가 의무는 아니나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 유지를 위해 사안 통보 시 학생 확인서 등 사안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함께 통보, 안내하는 것이 좋다.

4. 가해자, 피해자 즉시 분리

가. 현황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은 대체로 가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원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까지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면 피해학생 보호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마련된 것이 가해자, 피해학생 즉시 분리 제도이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하기 위함이다.
- 실제 즉시 분리를 통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은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 잠재적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 ‘즉시 분리’는 최대 3일 범위 내*에 실시하며 학교는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즉시 분리 기간 동안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즉시 분리는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의 우선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¹⁾
-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물리적 분리를 원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분리가 미흡하였는데, 즉시분리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다.

나. 취약점

- 그러나 즉시 분리는 최대 3일 이내에서만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피해학생이 같은 반인 경우 3일 후부터는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즉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학생 측에서도 쌍방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쌍방이 즉시 분리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해학생 측에서 보복성 내지는 황당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안내, 2021. 6. 21.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2022. 교육부 발간

를 하여도 피해학생이 즉시 분리당하기도 한다.

- 학교장은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재량이 없다. 그런데 가해학생 보호자는 즉시 분리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가해학생으로 낙인찍는다면 학교에 불만을 토로한다.
-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도 즉시 분리가 되다 보니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에 감정적 갈등이 증폭된다.
- 가, 피해사실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분리하는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 즉시 분리 기간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내 별도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리적 분리 공간 확보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습권 침해라는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다. 개선방안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습권의 권리 충돌 발생 시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에 따른 프로그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즉시 분리제도의 취지와 임시조치적 성격임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학생을 보호하되, 사건 초기 단계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가해학생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가. 현황

-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긴급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교 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예: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피해학생측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경우 인정결석에 해당되어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 선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나. 취약점

- 현실적으로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조치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 피해학생 측에서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학교에서 먼저 이를 설명하고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 현장에서 긴급 선도조치로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기란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로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협박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협박 금지 조치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접촉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조치로서 2호 일시 보호를 요청하여 등교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 모든 권한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학교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다. 학교장의 책임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학교장으로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탓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 긴급조치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이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지침이 필요하다.
-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과정과 긴급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긴급조치가 왜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단체 생활에 대한 경직성에 대해 유연화를 도모하여, 즉시분리, 자발적 학급교체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장의 방법이 되리라 제안한다.

6.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가. 현황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가, 피해학생 조사, 목격학생 조사, CCTV, 사진, 진단서 등 증거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으로²⁾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견해존중(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조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사안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학교폭력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³⁾
- 학교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만큼 관련 학생들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2. 교육부 발간

나. 취약점

- 2주 이내 사안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학교 학사 일정들에 따라 시일이 촉박한 경우가 있다.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량, 의지에 사안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사안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학생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로 CCTV 확보, 열람의 문제도 있다. 학교폭력 장면이 촬영된 CCTV에 대해 학교나 CCTV 관리자 측에서는 경찰에서의 확보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거액이 발생한다며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사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나, 정작 화면 속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는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학부모들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등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 간 회복적 대화의 기회가 부족하여 관계 회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모든 사안 처리 전 과정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교과 담당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까지 맡다 보니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안 조사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학생과 보호자, 학교 간의 갈등도 발생한다.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 개선방안

- 사안조사 절차 진행 시 전담기구가 보호자에게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등에 대

한 안내와 소통으로 불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CCTV 화면에 사생활의 침해 내지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내용이라면, 법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증거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전문 조사 인력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 전문 조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의 일정 학교폭력 유형 사건에서는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 하거나, 수사와 학교폭력 조사의 일원화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7. 학교장 자체해결

가. 현황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미피해 또는 즉각 복구 ▲비지속성 ▲비보복행위 등 4가지 조건을 갖추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학교장 자체해결의 도입 취지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고,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 실제 학교장 자체해결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64.1%, 2021학년도 전반 기에는 74.5%를 기록하였다⁴⁾. 2021년 교육부 내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 대비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64%,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2021년 비율은 77%에 달하였다.
- 심의위원회까지 원하지 않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면 학교장 자체해

4) 교육플러스 2021. 7. 19. 단독기사 보도자료

결을 원하는 피해학생 측이 상당수 존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로서 종결하고자 하는 가해학생 측의 조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 낸다는 점, 가해학생의 양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의 종결 등 관계 회복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 또한 학교에서 임의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하지 않도록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점에서도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폭력 해결의 선택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가 재량권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책을 마련해주는 경우 사안처리 보다 학생들의 회복이 우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나. 취약점

-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조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막는다는 문제로 지적된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증세에 대해서도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이후 학생들과 보호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번 진단서가 제출되어 버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다.
-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 학교 현장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적 지도 프로그램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신고 후 2주 이내에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다. 개선방안

-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피해학생 측에서 원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의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과 별개로 관계 회복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을 양성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반에 걸쳐 학교 현장에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 인식을 통한 관계 회복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높을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관계 회복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수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더라도 가, 피해학생의 해결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에서 다양한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장 자체해결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발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내용 및 개선 필요 사항

황태륜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내용 및 개선 필요 사항



황태륜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1. 서언

학교폭력이라는 갈등유형은 2004. 1.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면서, 위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제정 이후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개념의 변경, 사안 처리 절차의 대대적인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미있는 개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2019. 8. 20. 개정되어 2020. 3. 1.부터 시행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학교폭력 해당성과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사실상 결정하는 단계인 만큼 그 구성과 운영의 적법성과 적절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인 ① 피해학생의 보호, ②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④ 이를 통한 학생 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비롯한 학교폭력과 관련 제도는 여러 사회 구성원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인권 보장, 학교폭력 예방, 행정적인 완결성,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결코 완성된 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상·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제도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과 실제 운영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합니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서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등, 관할 구역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학교폭력 업무 등 경력 2년 이상의 교원, 장학사,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구역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교 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통상 실무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위원에는 경찰공무원, 변호사,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수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가. 법령 내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만, 통상 실무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는 역할과 기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개회 선언, 정족수 확인,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의사 확인, 간사의 사안 보고로 시작합니다. 이어 피해 측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과 가해 측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피·가해 측 질의응답을 마치면,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관련 자료, 관련 학생 질의 응답 사항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확정된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해당성을 전제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심의하고,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진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각호의 조치 중 수개의 조치를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는 ① 기본판단 요소 심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② 가중 및 경감 사유 검토, ③ 부가된 특별교육 이수 순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한계 및 개선 의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및 개선 의견은 운영상의 한계와 제도상의 한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이하 목차에서 ‘가.’와 ‘나.’는 운영상의 한계, ‘다.’는 제도상의 한계이며, 이 중 제도상의 한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만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할 때,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이루어진 때를 제외하고는 “발생 → 신고 → 조사 → 심의 → 조치” 순으로 처리됩니다.

이중 “심의” 단계는 2019. 8. 20. 개정 이전에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최일로부터 수일 전에 사안과 관련한 개괄적인 사항만 전달받고 심의 당일 개최 전 조사 내용 및 결과, 관련 자료 등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안과 관련한 심도 있는 파악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들이 관련 학생의 이름이나 피·가해 관계를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학생의 주장 사항이나 입장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하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학생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쟁점이 다기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에 비추어,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사안에 관한 충분한 인지와 이해가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상의 방법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처리일 것입니다. 학교의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연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실제로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입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들이 충분한 인지와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환경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일정한 형식을 마련하여 구체적 사실 및 증거관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입장과 의견,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일종의 검토 결과서 또는 심의 사안 보고서 등을 제시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장학사 1인과 주무관 1~2인이 수 개의 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와 인력으로서 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2)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사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조치 사항의 실제 운영 모습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위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실제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시보호의 내용과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와 관련해서 관할 구역 내 어떠한 사회봉사 기관들이 있고 학생이 그곳에서 실제로 행하는 봉사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통한 선도 및 교육 효과는 어떠한지, 제6호 출석정지는 어떻게 운영되며 학생에게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제5호 중 특별교육이수와 관련해서 관할 구역 내 특별교육이수 기관 현황과 그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역시 제5호 중 관할 구역 내 심리치료 기관은 어디인지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내용과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 조치의 실제 내용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상시적 점검과 의견 개진 및 필요사항 요청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와 같은 점검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요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마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역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① 피해학생의 보호, ②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④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학생 인권 보호”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조치의 실제 운영 방식과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를 토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도 반성 및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합니다. 2019. 8. 20.자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이유는 ① 학교 업무 경감,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전문성 제고, ③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제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심의위원회와 이전 제도인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등을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큰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정도 정기 연수와 운영 보고 등을 하고는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는 물론이고, 법령 또는 제도 변경 사항이나 관련 판례 등 법리 및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은 학교폭력 전문가여야 합니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 해당성을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사실상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은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전문가 위원을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학교폭력 전문가여야 합니다.

2) 이에 심의위원들은 관련 학생에 대한 질의응답 전에 사안과 관련한 조사 사항 및 내용 등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이를 위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는 지적인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과는 별개로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신고 사실에 대한 관련 학생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한지, 증거관계는 어떠한지, 전담기구 조사결과 및 판단은 어떠한지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의응답 전 반드시 학교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학생 확인서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에서는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위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보아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 조 1의2호는 “따돌림”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

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적인 상해,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 상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초적인 법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발생 경위, 그 밖의 배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심의위원들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 그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때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하고 심의위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육·훈계의 자리로 오해하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 또는 피의자 신문은 하듯이 진행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거짓말 찾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이 필요할 순 있으나 질의응답의 본래적 기능

과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위와 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거듭 설명하였듯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관련 학생의 입장 및 의견, 증거관계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사안 심의를 하기 위해 보충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라는 본래적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가해학생 조치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제재적 처분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라는 기본판단 요소를 두고 각 요소를 0~4점으로 배점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다섯 개의 기본판단 요소의 구체적 내용의 마련과 각 요소 자체가 적절한 기준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심각성은 행위의 유형과 발생한 피해의 정도 및 크기를, 지속성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를, 고의성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현 의사 등을 고려하여 배점이 이루어지고, 반성정도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와 노력 여하, 화해정도는 관련 학생 간 화해 성립 및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각 기본판단 요소의 개념과 본 발표자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일뿐 위 내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리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각 기본판단 요소에 대한 구체적 고려 내용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본판단 요소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이루어졌다며 지속성은 없음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학생 생활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하여는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아도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등, 실제 행위의 위법성과 선도 및 교육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행위 발생 이후 사정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위 각 요소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과 동렬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발생한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와 단계를 달리하여 경감 또는 가중 요소로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해정도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화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양자의 상태만 있을 뿐인데, 이를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0~4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분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토대로 화해정도가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앞서 설명하였듯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는 법의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서 분쟁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관련 매뉴얼 등에서 위 분쟁조정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민사적 합의를 주로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은 결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민사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갈등 해결을 위한 기회와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쟁조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지나치게 행정적으로만 처리되는 것을 완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효적이 분쟁조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 행정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여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 나름의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는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연 현재의 제도가 타당하고 실질적인 제도인지 또는 제도 내용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2019. 8. 10. 개정되어 2020.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따라, 위 개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와 개정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 현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을, 운영이 문제라면 행정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찰의 시작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다시금 새기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진지하고 깊은 논의와 고민을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4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모니터링보고서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모니터링 보고서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

1.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단위에서 상호간의 개연성 없이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제도는 그 실태와 양상, 사회적인 여론에 맞추어 2004년 관련 법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개정을 통해 보안 되고 재정비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부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학교와 가정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¹⁾. 학교폭력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족의 일상회복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은 피해학생의 보호보다 사안 처리 중심의 과정으로 피·가해학생의 판정으로 귀결되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 내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와 현황 및 대안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근 학교폭력 실태

가. 최근 학교폭력 이슈

최근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명인(운동선수, 연예인)들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피해 폭로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상 이미 성인이 되어 버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면서도 폭로가 계속 되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인 점은 얼마 전 법무부에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인격권을 민법에 적용하겠다는 입법에 고가 있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해 7월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광주의 한 지역에서는 학교에 간 다던 학생이 인근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역 사안의 경우 장례식 도중 아들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제보 받았는데, 시신 운구를 맡기로 한 학생들이 가해자였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 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강원지역 사안 또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학생의 자해 사실을 교사가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5만 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사이버폭력이 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

나.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²⁾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양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매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2)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1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 6,025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면[그림-1]과 같이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온 학교폭력 피·가해율은 최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 저연령화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7%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고, 피해유형은 사이버폭력(31.6%), 언어폭력(20.8%), 따돌림(16.1%), 신체폭력(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5.3%에 불과했던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20년 16.3%, 2021년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재단 상담사례에 따르면 익명 SNS앱, 랜덤채팅, 배달서비스, 공유형 교통수단, 중고거래 앱 등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1]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 요청'을 묻는 질문에 19.3%가 '피해 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요청해도 잘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피해학생의 34%는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 반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가해·목격 학생 모두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1순위로 꼽았다.

3. 피해학생 보호 관련 제도 현황 및 대안

가. 피해학생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

1) 제도의 현황

푸른나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53.6%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 그 중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도 26.8%나 되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긴 시간 트라우마로 남는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폭 미투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폭력 장면에 대한 반추와 또다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 등으로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며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초·중·고교에는 피해학생의 심리안정과 보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게 되어있다.³⁾ 아래의 [그림-2]는 지난해 발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인데 전국 평균 32.3%로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분리, 긴급보호조치, 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전담기구,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과정 중에는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거나 학교장 의지, 학교의 여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자원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피해학생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보호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로 학교의 미온적 태도, 사안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부족, 보호자 또는 학생 면담 시 부적절한 대처, 비밀보장의 원칙이 깨져 목격자가 방어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끝내 학교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1항

[그림-2] 전국 지역·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2021.10)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배치율 (%)
서울	605	142	387	203	317	188	1,309	533	40.7
부산	303	47	171	110	138	71	612	228	37.3
대구	230	43	123	98	93	31	446	172	38.6
인천	256	54	139	72	125	63	520	189	36.3
광주	154	41	90	48	67	32	311	121	38.9
대전	148	45	88	40	62	33	298	118	39.6
울산	121	21	64	43	58	21	243	85	35.0
세종	51	10	26	9	21	11	98	30	30.6
경기	1,305	243	640	416	481	228	2,426	887	36.6
강원	348	46	163	43	115	44	626	133	21.2
충북	258	45	125	37	82	52	465	134	28.8
충남	411	57	183	65	116	61	710	183	25.8
전북	419	69	210	75	131	52	760	196	25.8
전남	429	65	250	66	144	66	823	197	23.9
경북	473	95	261	86	184	74	918	255	27.8
경남	506	89	264	105	190	79	960	273	28.4
제주	112	16	44	17	29	18	185	51	27.6
계	6,129	1,128	3,228	1,533	2,353	1,124	11,710	3,785	32.3

2) 정책 제언

2014년 미국교육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학교상담자는 총 102,813명으로 학생 491명당 1명의 학교상담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에 반해⁴⁾ 국내의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은 위와 같이 미비한 실정이다. 2013년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심의전수가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는데⁵⁾ 이것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를 충원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학교폭력 상담 전문가)배치 확대 및 이들의 학교폭력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 피해전담기관은 현재 전국에 3개소(서울, 대구, 광주), 기숙형 시설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상담 및 치유 등의 통합적 개입이 가능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여 피해학생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보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회복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및 지역별 회복 수준을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안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사안처리 전 과정 및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를 위한 권리 등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또 사안 발생 초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사안처리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바우처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보호조치 또한 현행 1,2,6호에서 3호 조치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가 시급한 경우 사안처리 이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현모, 이상민(2017). 학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8(5), p.266.

5) 김현주, 김춘희, 손은령(Son Eun young)(2018). 학교폭력과 전문상담교사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나.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관계회복)

1) 제도의 현황

현재 학교폭력은 사안 발생 시 4가지 요건⁶⁾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 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된다. 두 개의 과정 중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이 처리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피·가해학생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고, 가해학생 역시 피해학생에게 반성과 용서의 마음을 전달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⁷⁾에서 관계회복은 중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⁸⁾에서는 필요한 경우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관계회복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과중,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 한정된 교내 자원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책 제언

지난 10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
- 6)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7) 푸른나무재단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中

- 8)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5,653건, △2022학년도(~8월)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전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8,791건, △2022학년도(~8월) 20,66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⁹⁾ 적지 않은 수치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하는데, 이점에서 처분중심의 행정적 처리 과정과 별도로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하여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용서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로 2차 가해 등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즉시 당사자 동의하에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한다.

특히 현재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연 2만 건 이상의 사안들은 별도의 과정이 없이 교육적 조치가 부재한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해분쟁조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학교폭력 사안발생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교육 현장의 대응력 향상을 목표로 교사 대상 관계회복 관련 전문교육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한다.

다.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따른 보호

1) 제도의 현황

최근 새로운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31.6%로 전년 16.3% 대비 2배, 2019년 5.3%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푸른나무재단 상담 사례에 따르면 익명 SNS 앱에서는 조건 만남 등 허위 게시물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배달서

9) 신아일보, 2022.10.18

비스 앱에서는 다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결제를 신청하여 피해학생에게 배달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 공유형 교통수단 앱에서는 전기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을 피해학생에게 대리결제를 강요하여 착취하는 사례, 중고거래 앱에서는 가짜 명품을 강매하거나 인근 지역임을 이용하여 공갈, 협박하는 사례 등 디지털 플랫폼 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은 그 형태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피해 증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은데, 이 경우 사안접수 및 조사에 제약이 생겨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지연이 발생된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자 및 책임자 규명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감시체계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업에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사회의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 지금, 이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책 제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에서는¹⁰⁾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로 사이버폭력을 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개념의 재정의 필요에 따라 현재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는데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개념 정의 등 조속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사이버폭력 관련 학술연구를 통해 실태, 법제도 연구, 진단도구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법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¹¹⁾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푸른코끼리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국내법 개정안 연구. 푸른나무재단

사이버폭력은 그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피해증거가 모호할 경우에도 사안처리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사이버폭력 피해 시 신고 접수 및 조사와 별개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확충, 피해회복을 위한 디지털 피해기록 삭제, 일상회복을 위한 치료 및 교육 제공 등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조치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시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사용 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사이버 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매번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가입자 보호 방안, 플랫폼 사업자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관련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기업·정부의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 학교폭력 사회안전망 구축

1) 제도의 현황

학교폭력이 벌어진 당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고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가족 구성원들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움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도울 수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지역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본 단위인데¹²⁾, 최근 해외 연구들에

12) 김교정 (Gyo Jeung Kim).(2008):."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복지 서비스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2 29-48.

따르면 지역사회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의 효과는 법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보안 조치보다 높게 나타났다.¹³⁾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¹⁴⁾와 제9조, 제10조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안전망 측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6¹⁵⁾을 근거로 2012년 각 학교에 배치된 이후 일진 등 폭력서클 해체, 성인폭력조직과의 연결고리 차단, 교내 폭력문화 근절 활동 등을 통해 실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였고, 현재도 학교폭력 징후 발견 시 상담, 사안 접수 후 학부모 상담,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 1,0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내 초·중·고등학교는 1만여 개교로 1인당 평균 10개교 약 5,000여명 정도의 학생을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기에 학교 및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2) 정책 제언

학교폭력 문제는 전 사회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학생의 일상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실제적인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정의 치유를 돕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 내 비폭력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10조와 시행령 제5·6·7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

13) Lesneskie Eric, Block Steven. "School Violence: The Role of Parental and Community Involvement" JOURNAL OF SCHOOL VIOLENCE : 426-444.

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15)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책임과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족구성원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보호조치 1·3호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비용이 지원되고 있지만¹⁶⁾,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자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양육 코칭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에 기여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배치가 학교·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 확보,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을 속히 증대할 필요가 있다.

마. 사후관리 개념의 재정의 필요

1) 제도의 현황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사후지도’라는 용어로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¹⁷⁾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1조¹⁸⁾에는 ‘사후조치’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북과 법률을 보면 피·가해학생의 사후지도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부족하다.

16)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17)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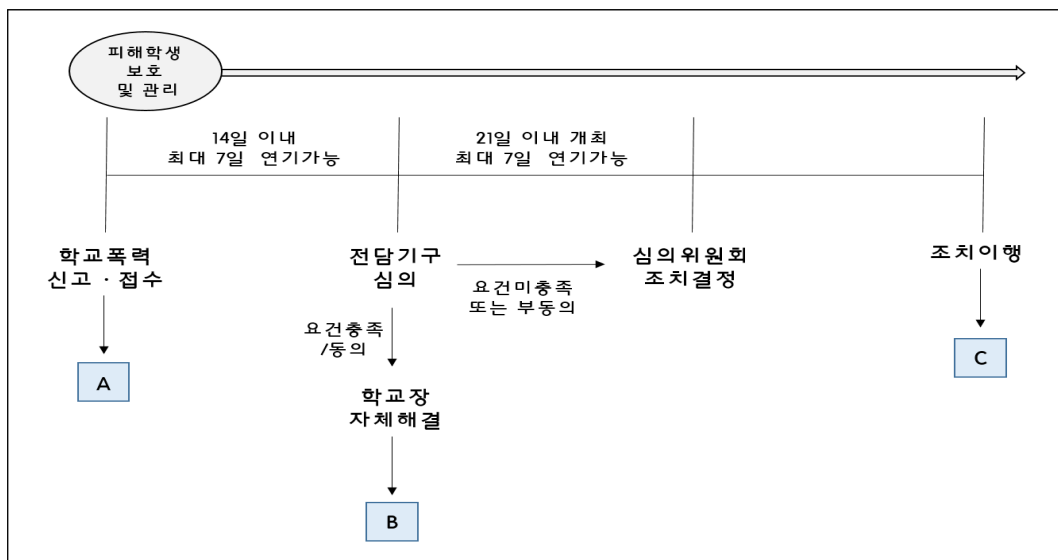
18)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그림-3]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간략화 해놓은 것이다.

현재 사후관리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조치이행 단계 이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후관리는 범위를 확대하여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3]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사안처리 과정을 보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이후 사안조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특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신고·접수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신고가 이루어진 학생 또한 A단계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안처리 과정과는 별개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사후관리 단계를 적용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보호와 회복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두번째 B단계의 경우는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여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난 경우이다.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난 이후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일지라도 피해학생의 일상회복과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많은 경우에는 C단계를 ‘사후관리’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후에도 피해학생 적응 및 회복의 정도 등 예후를 살피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지원 범위,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받기까지는 최대 7주가 소요되고, 조치가 나오기까지 피·가해학생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은 등교를 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개념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여 A, B, C단계별 사후관리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마치며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일 것이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용서와 화해가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피·가해자 판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피·가해학생 모두를 위한 분쟁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전 사회가 힘을 모아 피해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양상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방안 및 분쟁해결 및 관계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푸른나무재단이 설립되던 1995년에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란 용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지금, ‘학교폭력’은 낯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이 다변화되고 고통 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회복과 치유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실장)



토론문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

☐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사건 초기 즉시 통보, 사안 공유) 책임교사,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연수**가 요구됨.
- (선택적 보호자 통지) 충분히 반영가능함.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학생조사시 가 급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만, 연락두절되는 경우도 많음.
- (사안 구체적 통보) ‘비밀누설금지의무’조항으로 현장에서는 힘들다. **법령개정**으로 뒷받침이 필요함.
- (보호자에게 사전통지, 동의여부) 사안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 보호자에 대한 **학폭처리 절차 안내 책자** 등이 필요함.

☐ 가해자, 피해자 즉시 분리

* 즉시분리는 2022년 9월 1일 개정으로 지체없이-〉24시간내 분리로

- (즉시분리 프로그램, 시스템 마련) 교육청에서 안내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음. 물리적인 공간, 정서적인 공간 분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장은 가용할 인력부족, 공간부족으로 오히려, 분리조치가 족쇄로 작용함.
- (학생,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사안발생시 분리조치 3일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부

분이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학생, 보호자 안내용 가이드북** 등이 필요함.

- (가해학생 낙인) 사안발생시 관련학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학생으로 취급되는 부분으로 오해와 민원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 피해측이 신고한 순간 진위여부 판단없이 무조건 분리부터 하는 건 **가해학생의 인권, 학습권 침해** 일 수 있음.

* 피, 가해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분리하는 건 제고해야(대책마련 시급)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 (학교장의 부담 완화) 교육청으로 심의위 이관으로 예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긴급조치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사안처리과정 불신, 갈등) 꼭 필요한 부분임. 이 과정에서 서로의 불신과 오해가 잦은 편임.
- (아동 권리 보장 방법) 사안발생시 3일 분리조치 이후, 긴급조치도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존재하는 학급교체가 한쪽 당사자가 사안신고이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현재, 같은학급 사안의 경우, 조치이후에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함. * 피해학생측의 긴급보호조치 안내에 거의 반발(가해가 학교를 나오지 말아야지 왜? 피해가 또 피해를 보느냐 따지는 경우가 많음)

☐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 (보호자와의 소통)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일과시간이후에는 교사들이 개인 휴대폰 번호노출꺼림 등으로 **소통의 어려움이 상존함**.
- (CCTV)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담기구, 심의위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함. CCTV상에서는 행위만 볼수 있는 한계
*현재 경찰에 신고는 CCTV영상과 관련은 없음. 그럴만한 중대사안은 없었음.

- (전문 조사 인력) 전문조사인력(조사담당 장학사, 변호사) 또는 갈등중재기구(센터)가 설치되어 해당학교에서 조사나 갈등중재를 요청할 경우, 긴급출동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학교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사(진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사이버폭력, 성폭력) 전문 수사 인력의 도움이 필요함. **책임교사는 사안조사의 한계점이 존재함.** 대부분,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은 경찰신고도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 많음.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간 수사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으로, 학폭인 경우, 경찰 또는 학교 둘 중 1개로 진행하도록 해야 함.** 둘 다 진행하는 사안은 가해학생이 학폭 가해학생선도조치 뿐만아니라 경찰의 처분도 받게 되어 이중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임.

☐ 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재, 위클래스에서 심리상담 및 조연은 가능함.
- (최대 3주 전담기구 심의기한) **피해학생 측 요청시 기한 연장에 유연성은 필요함.** 책임교사는 정해진 기일 안에 사안조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존하여, 충분하 사안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학생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상담사가 학교폭력에 관한 각종 질문과 민원에 응대하고 있지만, 현장을 지원할 인력은 부족한 형편임. **학교수가 적은 지방 시도교육청에서는 도입 검토가 가능할 듯 하지만, 학교수가 많은 대도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은 업무과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무엇보다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가 요구됨.**
- (2주 이상 진단서 제출) 현장에서도 2주 이상 진단서 제출시 무조건 심의는 반대입장임. 사안초기에 제출된 진단서로 인해 관계회복이나 갈등조정 등의 프로그램 진행할 수 없음. **최근, 병의원에서 2주 이상 진단서 발급이 어렵지 않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사후적 관리) 아주 중요한 지적임.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교육지원청 심의이후에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임. 관련학생들이 받은 조치이후에 관계회복과 상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의 적극행정, 지원) **인력 증원과 행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학폭담당장학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대응에 한계 노출됨. 학폭임기장학사 임기 이후 교사 전직으로 경험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 * 학폭임기장학사(3년)의 임기 이후 학폭전문 조사관이나, 갈등중재센터 배치로 갈등중재, 관계회복 필요
- (전문성 제고) 현재 년 2회 정도 정기연수, 운영보고함. 추가 연수 및 관련 정보 제공은 필요함.
- (심의위원)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필요하며, 사전 검토자료 제공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분쟁조정 활성화) 민사적 합의뿐만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기회, 적절한 방법 마련 선행돼야,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임. * 앞서 발표한 가칭 '갈등중재센터'가 교육청에 설치되어 사안초기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 지침 등 개정이 요구됨.

☐ 학부모 연수

- (학부모 연수) 최근 저연령 학폭유형의 대부분은 경미하면서 보호자 부동의로 심의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학부모가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학교밖 학부모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연수 유도, 인센티브 부여 방안 필요함.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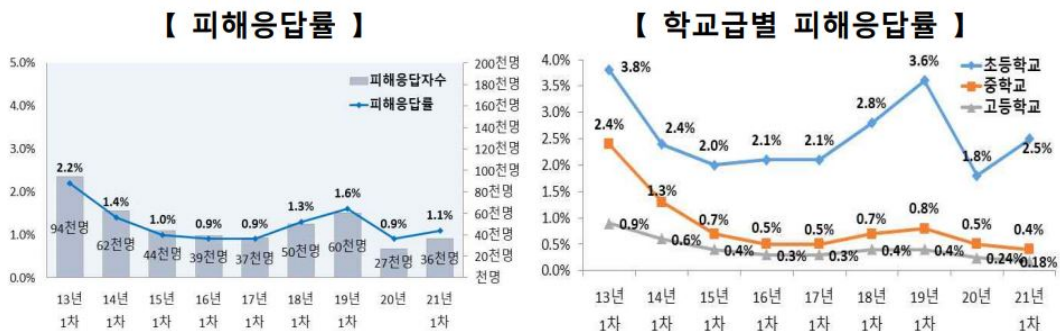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실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관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당위성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인식 변화에 기반한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학교폭력의 대응 주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의 대응 대상에 대한 것이다. 먼저 기존 학교폭력의 대응 주체는 무엇보다 학교였다. 학교는 폭력 현상을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위축의 어려움,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부족, 심의 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학교의 부담 증가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주지하듯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단위학교 내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학교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적 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며, 학생들의 삶과 밀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대응 대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폭력행위, 즉 가시적 현상으로서의 결과였다. 이는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폭력

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보다는 ‘발생한 후’의 대응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 결과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보는 대응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일차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 확대되고 있다. 개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학교폭력 유형(제2조제1항 수정)에 강제적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을 새롭게 포함 시켰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7~'19년 증가하던 학교폭력이 '20년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1년 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17~'21년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집단따돌림은 '21년 대폭 감소하고, '17년 이후 신체폭력은 감소 경향이나 '21년 증가하였고,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1년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늘어나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1.1%로, 2020년 대비 0.2%p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 비해서는 0.5%p 감소하였다.



【그림 1, 2】 연도별·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

출처: 교육부(2021). 2021년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이상 실태조사 분석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별 변화가 있지만, 폭력은 상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종 학교폭력 유형 확대 및 저연령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반복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징벌적·대응적 대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현재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이 지닌 문제점, 즉 피해학생 보호보다 사안 처리 중심으로 귀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학교폭

력예방방법의 제도와 현황을 살피고, 대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2022년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최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 저연령화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특히 사이버폭력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피해학생의 심리안정과 보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학교폭력 상담전문가 충원,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개입이 가능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의 확대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피해학생 회복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넷째,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침해 해소를 위해, 관련한 모든 정보제공 의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안 발생 초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사안처리 이전 지원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실효성 있는 관계회복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화해분쟁조정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며, 교사 대상 관계회복 전문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 감시체계 설계,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개념정의 등 법률 정비,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기준 마련, 긴급 보호 지원 전문기관의 확충, 디지털 피해기록 삭제, 치료 및 교육 제공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민간·기업·정부의 공동 대응시스템이 요구된다. 그 외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참여 현실화 방안 및 SPO 확충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 사안처리와 별도의 실효성 있는 포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논평자는 보고서의 내용에 전체적, 기본적,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논의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보고서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바,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은 첫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둘째, 가해 학생의 진실한 사과, 반성을 전제한 피해 학생의 용서, 그리고 셋째 화해이다. 아마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일은 없으리라 본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어떻게(How)?’의 문제를 수반한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치유의 문제는 가시적 제도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치유 여부

의 판단 주체는 피해 학생의 마음이고, 이 마음의 치유가 상담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상담의 질도 문제지만(첫째), 누군가에 의해 고통받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첫째 정의의 실현, 둘째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 두 사항을 충족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주지하는바,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는, 촉법소년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등가성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의 규정 자체가 논쟁거리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은,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로 보인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은 치유와 회복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다양한 방안은 대체로 ‘상한 마음’이 더 상하지 않도록(둘째~다섯째)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정말 원하는 마음의, 상처받기 전 상태로, 온전한 회복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해 학생의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고, 따라서 관계회복프로그램(여섯째)은 필요하다. 다만 인간의 마음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기 어렵다. 관계회복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진실성을 얼마나,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회복프로그램이나 화해분쟁조정제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지니고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왜(Why)?’이다. 관계회복에는 세 종류의 ‘왜(Why)?’가 있다. 하나는 가해학생의 ‘왜’다. “왜,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나? 그런 척 보이면 되지 않나? 아니 처음부터 왜 난 그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나?” 다음은 피해학생의 ‘왜’다. “왜 난 사과를 받아줘야 하나?” “왜 똑같이 고통받길 바라면 안 되나?”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의 ‘왜’다. “이 귀찮은 사안을 대충 종결하면 왜 안 되나? 아니, 내가 왜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관심 가져야 하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사안 처리를 통해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상호 진실한 화해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정법이 자신의 역할인 ‘정의 실현, 범죄 예방, 그리고 교화’를 이루는데 힘겨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영역이든, 제도는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제도를 포기할 순 없다. 어차피 법의 존재

목적은 범죄의 삭제가 아니라 최소화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보고서와 다양한 제언을 통한 제도적 장치와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정 필요한 것은, 학생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임이 분명하다.

폭력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그냥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에는 생각이 선행하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폭력행위에도 상대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무시, 경시 등의 마음이 먼저 있고, 어떤 식으로 괴롭힐지, 생각이 있으며, 실제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선행한다. 그리고 그런 학생의 의식 내면에는 인간 존엄성, 공존, 공감 등의 의식이 결여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조정과 처벌, 징계만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학교와 사회가 대처해야 할 학교폭력의 대상에 있어 의식적 차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의 단기적 수치변화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당위성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 기반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행위교육’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현재 공교육의 인성교육 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과 어깨동무활동의 실효성은 어떤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가? 또한 인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어떻게 생산적으로 융합 가능할까? 나아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모교육, 더불어 학교 내 교원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 질문들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모니터링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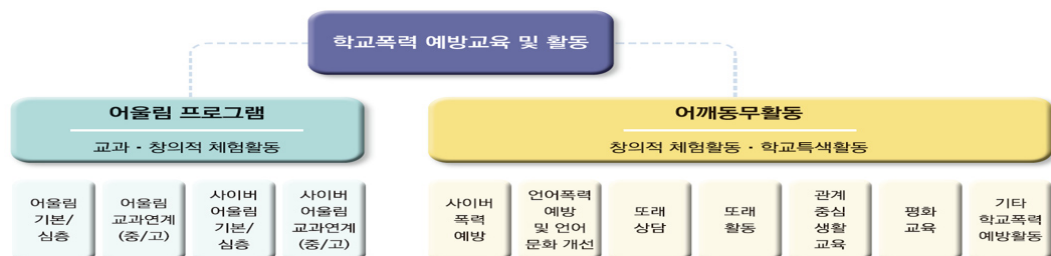
보고서는 학교폭력의 증가양상,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과 학생의 주체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어깨동무활동을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 정책의 수립과 수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 그리고 아동 견해의 존중 및 차별 없는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이끄는 실효적 정책의 미비로, 학교폭력 예방문화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제점은 첫째, 교육 시간의 부족(연간 8차시), 둘째, 개인별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프로그램 부재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 가능성, 셋째, 지식 습득의 예방교육과 실천의지 지향적 참여활동 간 연계 부족, 그리고 마지막 넷째, 형식적 학부모 교육과 현장의 어려움, 즉 참여율이나 학교장의 의지 문제, 예산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과 아동 참여 보장하는 어깨동무 활동 간 연계 강화, 핵심은 학생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규칙 규정 및 실천(대한민국 아동총회 참고), 그리고 개인별, 학년별 핵심 역량의 단계별 발전이 가능한 교육과 참여 활동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다. 둘째는 정보제공자, 지지자로서 학생과 함께하는 학부모 활동, 핵심은 수동적 교육 참가자가 아닌 지지자이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통해 학부모의 자발적 의지를 자극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인권감수성의 실천의지 향상을 통해 학생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이끌기 위한 학습 지원 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지적한 교육시간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부족,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 가능성, 교육과 활동의 긴밀한 연계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상존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친

구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성윤숙 외, 2020).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초기 단계인 강의 중심 예방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로 정책지침안내와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지희자, 이수영, 2016). 2013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어울림) 기본 계획안’(교육부, 5. 26.)의 수립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중점이 되면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 및 보급하였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19년에는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학교와 어깨동무활동 적용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단위학교별 교과 교육과정 내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별 11차시 내외 편성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어깨동무활동은 각 학년별 30차시 이상 학교 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코로나 19관련 ‘21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시수 조정방안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시수를 연간 6차시 이상(성윤숙, 2022a), ‘22학년도는 8차시 이상 편성·운영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부 권장 시수를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2013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9년이 경과하였다. 처음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던 것이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전면 개정을 기점으로 지금은 1만 2천 개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권장되었다.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90종, 사이버어울림 52종으로 총 142종, 초·중·고 어울림 프로그램 안내서 3종과 영상 6종이 개발되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원격 연수 콘텐츠 어울림 19종, 사이버어울림 17종 총 36종이 개발되었다.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핵심강사 및 ‘22년 컨설팅단 504명 운영, 교원 사이버폭력 예방강화를 위한 ‘표준교육연수안(기본, 심화)’ 개발·보급과 이와 같은 양적·질적 확장은 분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정규교육시간 내 교과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며 학교의 제반 여건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 또는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들을 중점으로 역량별, 차시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어깨동무활동(학생 참여·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특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조성활동 및 학생주도의 각종 특색 활동을 추진한다(성운숙,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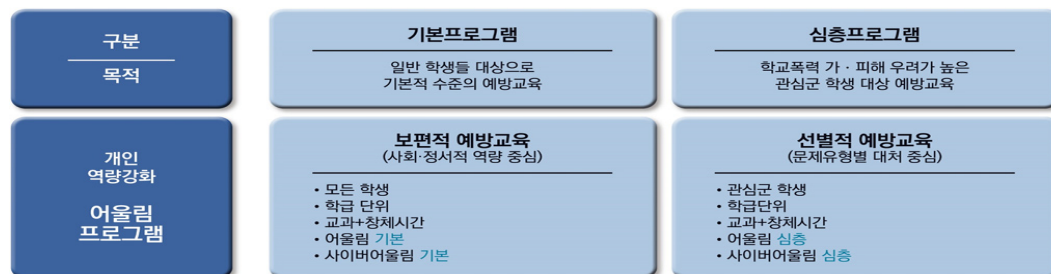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구성

그 외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 참여하고 실천하는 '22년 어울림 서포터즈단 32개교, 찾아가는 학생 참여 실천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푸른나무재단)으로 소통강연회, 체험연극 등 51개교,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콘서트 공연(KBS미디어), 여성가족부 협업으로 또래상담 운영 학교 지원(5,366개교) 등이 있다(교육부, 2022).

어울림 프로그램은 사안별/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우려가 높은 관심군 학생 또는 필요시 관심군 소속 학급 대상 심층 프로그램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 중심의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보편적 예방교육과, 학급 및 교우 관계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는 문제 징후 발견 시 문제 유형에 맞는 심층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유형별 대처 중심의 선별적 예방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용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울림 프로그램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별로 기본과 심층, 교과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중등에 한해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영어, 기술·가정, 체육, 진로와 직업, 한문과 고등학교의 국어, 통합사회, 영어, 기술·가정, 체육 현재 진로와 직업, 한문이 개발되었다. 또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학년)제에 따른 주제선택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은 역량 중심으로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존증감, 갈등 해결 및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의 6개 어울림 기본 역량과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 자기조절 등 8개의 사이버 어울림 기본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 프로그램은 문제 유형별로 어울림 4가지, 사이버 어울림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성운숙, 2022a).



[그림 2]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체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법과 운영 시기, 운영시간 등의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보면,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어울림 프로그램이 점차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자리 잡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뿐 아니라 내용 연계를 통해 교과 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성운숙, 김현수, 2019a; 성운숙, 양미석, 2020; 성운숙, 홍성효, 김현수, 2021; 성운숙, 이경상, 김현수, 2022). 나아가 어울림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속한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 재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 역량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효정, 김현진, 한미영, 2016; 성운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성운숙, 김현수, 2019a; 성운숙, 이경상, 김현수, 2022). 무

엇보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학생 개개인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성운숙, 장원빈, 김현수, 2022; Berger, 2007; O'Moor & Kirkham, 2001)을 목표로 삼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학급과 학교 전반에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성운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성운숙, 장원빈, 김현수, 2022) 프로그램의 정기적 운영과 수업 및 교과연계를 통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특별히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급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성운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성운숙, 김현수, 2019b; 성운숙, 장원빈, 김현수, 2022).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의 역량 함양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성운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성운숙, 김현수, 2019a; 성운숙, 김현수, 2019b; 성운숙, 양미석, 2020; 성운숙, 홍성효, 김현수, 2021; 성운숙, 이경상, 김현수(2022)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스스로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각 역량이 실제 도움 행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졌다는 연구결과(성운숙, 김현수, 2019b)는 대상 학생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체적인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식을 강조하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 및 학급의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효정, 김현진, 한미영, 2018; 성운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성운숙, 홍성효, 김현수, 2021; 오인수, 2010; Olweus & Limber, 2010).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학급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나 자율동아리, 동아리활동, 학부모활동 참여를 연계한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은 청소년 개인 수준의 전략뿐 아니라, 학급 수준의 위험 요인 및 학교풍토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일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한 아이들의 인식(Menesini & Salmivalli, 2017)에 따르면 교사가 폭력에 단호히 대응할 때 학교폭력 행동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Saarento, Boulton & Salmivalli, 2015). 또 학급 학생들 사이에 인기도 및 학급의 힘이 위계적으로 형성될 경우,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음으

로 평등적 학급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정서적 역량 및 공동체, 시민성(신뢰, 책임)역량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체험활동과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편견의 대상자 혹은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 비만 청소년, 혹은 소수 민족, 성소수자 그룹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Juvonen & Graham, 2014; Menesini & Salmivalli, 2017). 나아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나 학업적으로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해 포용적인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더불어 특권 의식과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기도취성(narcissism), 거대자신감(grandiosity), 특권의식(sense of entitlement) 등이 학교폭력과 관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enesini & Salmivalli, 2017). 이는 나만 특별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타인도 나만큼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특히 어울림 프로그램의 공감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기 비난(self-blame) 과정에도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의 문제로 보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예: “내가 좀 더 괜찮은 아이였다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혹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Juvonen & Graham, 2014). 이러한 자기 비난적 요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적 문제 행동(예: 우울, 불안 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다(Juvonen & Graham, 2014). 나아가 자기 비난 등 자기 부정적 인식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악화시키는 경향(Juvonen & Graham, 2014)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효과 두드러진 특징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자기 존중감 역량 교육의 강화 및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최근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이 저연령화 및 비중이 높아지는 실태를 고려하여 위험군 학생이 소속된 학급을 대상으로 어울림 및 사이버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포래활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하고 신종 문제 유형을 반영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시기별(월별, 학기 초-중-말별), 교육주간(친구사랑 주간, 학교폭력 예방주간, 사이버교육주간, 언어문화개선주간) 등과 연계한 어울림 프

로그램이 접목된 연간 교육과정 편성 예시안을 제공하였다(성윤숙, 2022). 또한 적극적인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어울림 기본 프로그램 수준(초저와 초고)을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 수준(초저(1~2학년), 초중(3~4학년), 초고(5~6학년)과 같이 교육과정 수준을 일체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중점 역량 중심에서 학년군별 중점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현실화한 어울림 프로그램 교과서 발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교육부 교육과정과 업무협조를 통한 교육과정속에 어울림 프로그램 의무화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역량 발달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 역량 평가 누가 기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안내가 필요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시 시도교육청 보고용, 정보공시용, 학교 교육과정 편성용으로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학교 특색을 반영하되 단위학교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 표준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부모, 학생,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수를 확대하고 인성교육을 생애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정보제공자가 아닌 실질적 퍼실리테이터로서 부모의 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모교육은 보다 강화, 확산, 내실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수확대 등 내실화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유학기제의 확대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1학년 2학기는 진정 중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중요한 학기다. 바람직한 또래문화 설정 등 지혜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인성교육중심의 자율적 축제 형식으로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모델의 자유학기제를 초등학교에도 적용해볼 만한 것으로 사려된다. 나아가 학생들의 ‘실천의지’를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분명 필요하다. 사실 어울림 프로그램 교육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며, 실천 의지를 자극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위해, 수많은 전문가, 교사의 열정적 참여가 있었다. 나아가 어울림 프로그램의 실제적 효과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어울림의 방법론적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 초등입학 전부터의 실질적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Covid-19를 경험하며, 온·오프라인 특성을 결합한 Ontact시대에 부합하

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계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체험 프로그램이 시범적용 중에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비대면 상에서 대면과 같은 체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및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본질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울림 교육은 앞서 언급한 대로 행위교육이 아닌 의식교육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그래 어떤 경우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난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최종적, 자율적 결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변화는 관찰도 어렵고, 실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생산적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 모두의 자율적, 적극적, 실제적, 그리고 유기적 참여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현장의 실질적 교육주체인 교사의 경우, 교육과 학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의 교과연계 교육까지 맡는 일은 쉽지 않지만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은 모든 교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교장·교감 등 관리자 및 교원 대상 홍보영상 제공 및 찾아가는 어울림 연수,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업무담당자 외 교육과정 담당자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 학교단위 교사연수 진행 후 연수학점 부여, 어울림 프로그램을 필수 교원연수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 관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다름과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등을 직접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기술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롤모델로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교사의 책임과 교육 가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교육 주체로서의 동기부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논의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 및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학생, 교원 및 직원,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경찰, IT기업, 학계 등 민·관·학 범국민적 사회공동체의 협력을 연계하는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열린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공동체에서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 활동은 전체적으로, 특히 그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사실 어울림 예방교육이 전국 1만 2천 초·중·고 수업을 통해 도입된 것 자체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활동, 학생서포터즈 간 연계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부모교육의 문제점 인식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주도적 참여, 앎과 실천의 지행합일 지향적 교육방향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제3 물결>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사유를 차용하여 논평을 정리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다. 유토피아는 어원적으로 ‘부재(U-topos)’를 뜻한다. 학생, 교사, 교장, 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자율적, 주도적 상호 이해,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폭력이 사라진 평화로운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없다. 그렇다고 홉스가 말한 대로 이기적 (homo homini lupus) 폭력만이 난무하는 전쟁과도 같은 디스토피아(Distopia)의 학교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프랙토피아(practopia), 즉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practical) 유토피아(utopia)’를 원한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학교공동체는, 보고서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K. R. 포퍼의 ‘열린 사회’나 M. 샌델의 ‘정의로운 사회’처럼 점진적이지만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진심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 2021).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
- 교육부(202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핵심강사 및 교원 사전 연수(초등).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
- 박효정, 한미영, 김현진(2016).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54(3), 121-150.
- 박효정, 김현진, 한미영(2018). 초·중학교 학생, 교사, 학교장의 학교폭력예방 문화 인식 탐색. 교육학연구, 56(2), 233-260.
- 성윤숙(2020).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연구보고 20-R3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성윤숙, 구본호, 김현수(2020).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방안 탐색. 청소년학연구, 27(2), 363-383.
- 성윤숙, 김현수(2019a).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R26.
- 성윤숙, 김현수(2019b). 학교폭력 예방 역량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 초·중·고등학교 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1), 85-104.
- 성윤숙, 김현수(2022).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9(5), 221-253.
- 성윤숙, 장원빈, 김현수(202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온라인 수업 운영 및 참여 경험 이해. 청소년학연구, 29(6), 277-305.
- 성윤숙(2022a).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2022b).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 서정아, 장운선, 서고운, 김성은(2020).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20-R31-03.
- 성윤숙, 양미석(2020).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R32.

- 성윤숙, 홍성효, 김현수(2021). 2020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R31.
- 성윤숙, 이경상, 김현수(2022). 202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인수(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지희자, 이수영(2016).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3(1), 303-319.
- Berger, K. S. (2007). Update on bullying at school: Science forgotten? Developmental Review, 27(1), 90-126.
- Mayring, P.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1(2), 159-176.
- Mendelson, M. J., Goldbaum, S., & Semeniuk, J.(1995).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O'Moor, M. & Kirkham, C. (2001).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27, 269-283.
- Olweus, D., & Limber, S. P. (2010). Bullying in school: Evalu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0(1), 124-134.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4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2022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연계



발제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과 대응 현황과 개선점 -

조규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과 대응 현황과 개선점



조규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 코로나19와 사이버폭력

코로나19 이후 사이버폭력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의 디지털 온라인 수업 환경과 인식이 나아지면서 교실 내 무선망과 학생 1인당1PC 등이 정비되면서 학교와 교실 안에서의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폭력 가능성이 높아졌고, 2년 정도 대면의 집단 활동이 부족하면서 학생들의 대인관계 및 공감 능력 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을 중심으로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 등의 기술이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디지털과 온라인을 적절히 학습과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깊이있게 분석한 후 그 문제 극복을 위한 관점과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 및 극복을 위한 관점과 방안 등은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법부터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발제를 하여 아동·청소년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함께 토론했다.

II. 사이버폭력 실태 파악과 개념 및 대응 방안 검토

1.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의 문제

가. 사이버폭력 개념 정의 차이

-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푸른나무재단의 사이버폭력 개념 정의는 한국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그 범위와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 등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 및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정된 지면과 시간 관계상 이 자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를 각 조사의 개념 정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전에 3개 조사의 개요부터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 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비교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조사명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조사학생수	초4-고3, 321만명	초4-고3, 9,017명	초2-고2, 6,004명
조사장소	비대면	대면	비대면
조사방법	온라인	집단면접	우편, 온라인
조사기간	2022.4-2022.5	2021.9-2021.11	2021.12-2022.2
시작연도	2013	2013	2001
비고	· 전수조사 · 조사항목 비공개 · 조사결과 일부 공개 · 조사와 신고 연계	· 총화계통 무작위 학교 추출 및 무작위 학급 추출 · 조사항목과 결과 공개 · 국가승인통계 · 성인 동시 조사	· 총화계통 무작위 학교 추출 · 조사결과 일부 공개 · 피해학생과 교사 및 경찰관 인터뷰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과 3개 조사의 사이버 폭력 정의와 포함하는 유형 및 대상을 비교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가장 주목할 점은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이 ‘사이버 따돌림’ 유형만 언급한 것과 그 대상이

학생 간으로 한정된 점이다. 반면에 3개 조사에서는 사이버 폭력 안에 6~8개의 유형이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고, 그 대상도 학생 간으로 한정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의 사이버 폭력 유형에는 다른 2개 조사와 달리 2개 부족한데 그것이 ‘사이버 강요’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사이버 강요’와 ‘사이버 성폭력’은 요즘 주목받는 그루밍 혹은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포함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표 2〉 사이버폭력 정의와 유형 및 대상 비교

	사이버폭력 정의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폭력 대상
학교폭력 예방법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1개)사이버 따돌림	학생-학생
교육부 실태조사	정보통신망과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	(6개)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유포	학생-학생 학생-학생외 (어른 등 포함)
방통위 실태조사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	(8개)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강요, 사이버 성폭력	학생-학생 학생-학생외 (어른 등 포함)
푸른나무 재단 실태조사	온라인	(8개)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강요, 사이버 성폭력	학생-학생 학생-학생 외 (어른 등 포함)

나. 사이버폭력 실태 결과 산출 방법의 차이

실제 3개 조사의 사이버폭력 실태 관련 문항을 비교하면 〈표 3〉과 같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해와 피해 및 목격 경험을 묻는 것은 공통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가·피해 동시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는 다른 2개 조사와 달리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하지 않

으며 따라서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 안에서 사이버폭력 가·피해 및 목격 경험을 묻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 문항의 구조의 차이가 <표 4>에 정리되어 있듯이 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3개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문항 비교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푸른나무재단
· 최근 1년간(2021년 2학기 부터) 어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모두 고르세요(8개 중 복수선택)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 최근 1년간 온라인에서 친구나 선후배 또는 주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 최근 1년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8가지 유형제시) · 최근 1년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8개 중 복수선택) * 사이버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강요, 사이버성폭력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가해를 했거나, 목격을 했던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있나요? 있다면 표시를 해 주세요. *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강요, 사이버 성폭력

<표 4> 3개 기관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결과 비교(2022년과 2021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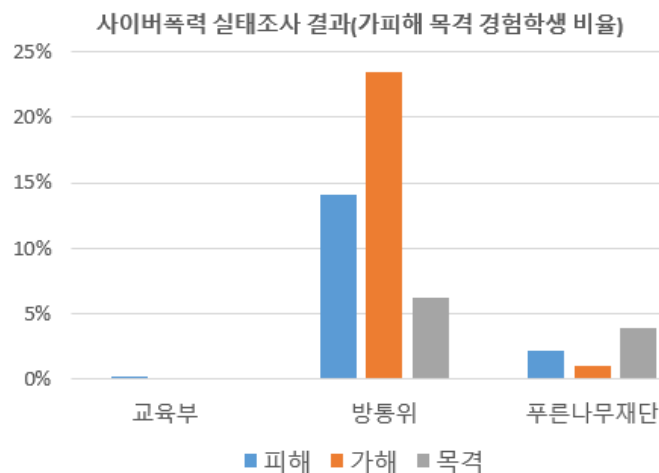
		교육부	방통위	푸른나무재단
1년간 학교폭력 경험	피해	1.7%(1.1%)		7%(6.7%)
	가해	0.6%(0.4%)		2.9(4.1%)
	목격	3.8%(2.3%)		12.6%(7%)
1년간 사이버폭력 경험 (발표수치) *학교폭력유형간 비율 포함	피해	9.6%(9.8%)*	14.1%(19.7%)	31.6%(16.3%)*
	가해	7.7%(8.2%)*	23.4%(9.5%)	34.4%(10.2%)*
	목격		6.2%(9.1%)	31.1%(14.0%)*
	가피해		8.3%(6.4%)	、
1년간 사이버폭력 경험 (학생비율)	피해	0.2%	14.1%	2.21%
	가해	0.05%	23.4%	1.0%
	목격		6.2%	3.9%
	가피해		8.3%	

()안의 비율은 전년도 수치임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 경험 비율이 아닌 학교폭력 경험(가해, 피해, 목격) 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답변한 학교폭력 유형 간 비율임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가해, 목격 실태조사와 그 결과 표시에 대한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방통위의 설문 구조가 다르다(학교폭력 경험 학생 한정 여부)
즉,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가피해 및 목격 경험이 있는 학생 만 사이버폭력 경험에 대한 문항에 답변할 수 있다.
-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여러 학교폭력 유형 안에 사이버폭력을 포함시키고 복수응답을 받고 있다.
-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여러 학교폭력 유형 안의 복수응답 답변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유형간 응답수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 방통위는 전체 학생 중 사이버폭력 피해/가해/목격/가·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 방통위의 산출법으로 푸른나무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재산정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림 1] 3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결과 비교(2022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유형, 조사문항구조 그리고 그 산출 및 표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거나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기 2개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의 조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아래의 암묵적 전제에 대해서도 제고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구분된다.

둘째,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사이버폭력은 학교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안에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 설명하며 구분하고 있다.

* 학교폭력 :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 사이버폭력 : 사이버공간(인터넷, 스마트폰, 콘솔게임기)에서 괴롭힘

셋째, 사이버폭력은 6~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6~8개 사이버폭력 유형은 대부분 함께 혹은 융합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의 1~2개 혹은 더 많은 유형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암묵적 전제에 대한 제고가 없다면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면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도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김부경과 한운선(2020)의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부족 : 학교폭력의 한 종류로 치부하고 있는데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여러 유형이 있음

둘째, 대단위 정보전달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문제 상황에 대해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프로그램 부족

셋째, 도덕과 윤리 교육 중심의 일회성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 윤리’, ‘인터넷 윤리’, ‘정보윤리’ 등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사이버폭력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더 효과적임

넷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미흡 : 학교폭력 예방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수업 시수가 한 학기에 1회 정도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기 어려움

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어려운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4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

사이버폭력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도 어려울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스마트폰과 SNS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및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폭력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이버(디지털, 온라인)가 가지는 익명성(은밀성), 복제성(기록성), 확산성과 높은 접근성을 가지며 시공간적인 제약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신체폭력이나 대면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등과 비교해서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찰자가 있거나 있더라도 방관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비대면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의 위험은 더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코로나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즉, 사이버폭력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아래의 공통점을 가진다. (1. 바로 발견(진단)이 어렵다. 2.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3. 확산이 빠르다. 4. 후유증과 재발 가능성이 있다. 5. 자가 증상이 없이 주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6. 일상 생활(학교 생활)을 어렵게 한다. 7. 예방 치료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8. 평소에 주의와 예방이 중요하다.)

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어려움

사이버폭력이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만으로 그 예방교육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의 미흡

사이버폭력이 심각하고 위험한 이유 중에는 사이버폭력 자체가 은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착하는 개념과 대상 및 유형 등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그 개념과 유형(구분) 및 해석 등에 대해 제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에서의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버폭력예방교육 개념과 목적의 연계성(애매성)

또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네트켓부터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과의존예방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터넷/디지털/인공지능윤리 교육, 디지털시민성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되고 어떻게 아울러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관련 연구와 수업 사례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이 미흡하다.

디지털과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등이 존재하고 그 장점을 높이면서 단점을 낮추는 것이 21세기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미래교육의 동전의 뒷면(단점)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사이버폭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전의 앞면이라면 포용과 웹빙을 바탕으로 학생 한명 한명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갖추는 ‘에이전시’가 되는 교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사이버폭력의 일상성과 민감성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면서 학교 안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실 등 일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 교수학습방법면에서는 학생들의 기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돌아보게 하거나 관련 영상 등의 콘텐츠를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등의 방법 등을 적재적소에 수업 안에 녹여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사이버폭력은 그렇게 하기가 민감성 때문에 주저하게 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교과 연계의 곤란함(초중고등학교 체계적 교육과정 미흡)

현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교과연계 사이버폭력예방 교사용 교재와 연수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을 특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특정 단원(차시)과 연계하는 것은 일부 사이버폭력을 직접 언급된 것이 아니라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지식 습득 및 태도 변화를 위한 활동 등을 접목하다 보면 해당 성취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도덕)와 사회 등에서 사이버폭력이나 네티켓 등을 언급되는 성취기준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총체적 교육과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예방은 어릴 때부터 매년 일정 차시 이상 꾸준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과 방관하지 않는 용기 등을 체득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섯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목적의 다양성과 피상성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과 그 유형 및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고 일상속에서 장난처럼 보이는 언행 속에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고 민감해 하며 즉시 대응하거나 도와주는 용기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알고 구분이 가능한 것만으로는 곤란하다. 따라서 자칫 피상적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이 될 위험이 존재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핵심 대상이 피해학생-가해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방관자-방어자를 포함해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은 치료와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피해학생이 아닌 방관 혹은 방어 영역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피해학생의 보호와 위로 그리고 가해학생의 제어 등은 그 중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근절되고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방관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폭력 민감성 함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은 지식과 태도 등을 아우르는 인지와 비인지 능력 모두를 포괄하는 미래형 융합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Oshio(2021)는 ‘비인지능력 개

념과 측정 및 교육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비인지능력 15개(성실성, 그릿(Grit), 자기 제어·자기컨트롤, 호기심, 비판적 사고, 낙관성, 시간적 전망, 정동(情動)지능, 공감성, 자존감, 자기자비(self-compassion), 마음챙김(mindfulness), 회복력, 자기회복력)의 개념과 측정 및 교육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비인지능력에 대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인지능력 전반에 대해 연관 지으면서 초·중·고등학교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어려움의 극복방안

본인은 사이버폭력예방 수업 사례를 검토하여 그 수업 유형을 아래와 같이 추천적이 있다.

- 학생활동 중심형
- 인지 능력(개념 습득형)과 비인지(공감 소통형) 능력의 융합형
-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제 중심형
- 의견과 산출물을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공유형
- 게임과 모의법정, 개사 등 이야기형
- 율동과 그림 등의 예술 창작형
- 논쟁하고 탐구하는 심층형
- 학생의 직간접 경험과 학생 주변 현실을 중시하는 진정형(Authenticity),
-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학습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형
- 학생이 함께 모여서 마주 보고 함께하는 회복적 서클형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교과연계 사이버폭력예방 수업을 위한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해당 교과목의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서 확인하고,
- 해당 교과목의 단원별 성취기준에서 사이버폭력과 연계할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 요소를 살펴보고,
- 사이버폭력과 연계할 단원과 차시 등을 결정하고,
- 각각의 단원에서 연계할 사이버폭력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요소를 선택하고,

- 단위 전체 차시별로 핵심적인 학생활동을 특정하고,
- 이를 위한 사전 도입 부분의 콘텐츠를 선정하고,
- 학생들의 제작 및 표현활동을 평가와 연계하여 고려하고,
- 도입과 전개에서의 양질의 콘텐츠와 학생활동의 질을 높이는 고민을 하고,
- 사이버폭력 피해 트라우마 등의 경우에 대해 대비하고,
- 학생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 차시를 고려하고,
- 전체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불필요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한 후,
- 학생활동 등의 변수에 따라 수업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후,
- 활동지 등을 준비하고,
- 마지막으로 사이버어울림 교재와 도란도란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참고할 내용과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예방 수업유형을 아래와 같이 3가지 관점과 6가지 수업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표 5〉 학생·연계·활동 중심형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모형(조규복 외 2021)

3 관점	6 유형	내용
A. 학생 중심형 Student Centered	1.학생 경험 활용형 Student's Experience	학생 자신의 직간접 경험과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돌아보고 표현하도록 하는 수업
	2.학생 산출물 활용형 Student's Outputs	활동지와 발표자료 등으로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업
B. 연계 중심형 Engaged	3.교과 연계형 Subject Curriculum Engagement	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대인관계 능력 등)과 연계하는 수업
	4.현실 연계형 Authentic Engagement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와 연계하는 수업
C. 활동 중심형 Activity Centered	5.창작 활동형 Creative Activity	예술 창작과 역할극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수업
	6.동영상 시청형 Using Storytelling Video clip	스토리형 동영상을 본 후 함께 대화하거나 소감을 적어 공유하는 수업

즉, 학생의 직간접 경험(성찰)과 현실 사례(동영상 시청, 인터넷 조사)를 소재로 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거나 이와 함께 창작물로 만들어 표현 및 공유하는 수업 유형을 제안할 수 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점, 학생의 눈높이 맞는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소재와 과제를 중시하는 점, 학생이 스스로 찾거나 재가공하는 제작과 표현을 강조하는 점, 공유와 피드백 및 성찰을 강조하는 점 등을 추릴 수 있다.

Ⅲ. 마무리 : 디지털 에이전시를 위한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1.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주체(중심)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그 목적과 수업 특성 및 유형 등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수업)을 위해서는 학생의 주체성(자기주도성)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직간접 경험이나 교재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보고 주변 현실과 연관 짓거나 자신에 비추어 의견과 느낌을 서로 공유하거나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수업 유형으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사전에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몰입하고 공감하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되어 단순한 지식 습득 등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디지털 교구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제안할 수 있다.

2. 디지털 활용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줌(ZOOM)과 밴드 등의 SNS 그리고 구글문서 등의 공유문서를 활용하는 것을 각각의 유형별로 제안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와 교구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누구라도 접속 가능하며 어느 기기에서나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감형 디지털 콘텐츠(교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 사이버스(사이버폭력예방 메타버스 교구) : cyverse.kr 혹은 cyverse1.kr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현재 개발중인 사이버폭력예방 메타버스 교구다. 웹으로 접속 가능하다. 로 접속하여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성하면 체험 가능하다.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학습 후 메타버스 공간(강당)으로 입장하게 되며 강당 양쪽의 총 8개의 문을 통해 각각 사이버폭력예방 역량을 높이는 미션 수행형 게임을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관자를 방어자로 유도하는 미션도 포함되어 있다. 공지사항과 처음 화면에 사용설명(가이드)을 볼 수 있다.

○ 스마트세상 지킴이(네티켓과 과의존 예방을 위한 아동용 디지털 동화)

<https://ainse.kr/game/keeperains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고 동화책을 보듯이 몰입해서 학습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 유치원 교사 혹은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지도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디지털 시민법정(사이버폭력예방 체감형 디지털 교구) : <http://dccainse.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모의법정의 판사가 되어 사이버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재판하고 구형한다. 여러 가지 사이버폭력 유형을 통해 관련 지식과 심각성 등을 함양할 수 있다.

○ 인터넷 윤리교육 유아동화(3종) : www.flashbook-ainse.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인터넷 중독, 정보편향성 예방을 위한 실감형(움직이는) 디지털 동화책이다.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기타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동영상 등의 콘텐츠 목록 등은 도란도란(www.dorandoran.go.kr)의 공지사항(2022년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주간 안내) 안에 엑셀파일로 게시되어 있다.

3. 상담과 신고 그리고 사이버폭력예방 교육과의 연계

상담과 신고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과 연계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 행사성 혹은 현실 기반의 교육도 가능하지만 교과 연계 및 팀티칭 등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원격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가능할 것이다. 상담과 신고를 담당하는 상담기관과 경찰서 담당자와의 정기적 접촉을 통해 보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은 OECD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학생 한명 한명이 ‘에이전시’가 되어 불투명하고 정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협력하며 헤쳐 나가는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제서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디지털 에이전시를 육성하는 미래교육이다.

참고문헌

- 김부경 한윤선(2020).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활용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교육학연구, 제58권 제1호, pp. 275-306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조규복(2022).비대면 사이버폭력예방 수업의 조건과 유형 분석 연구
- 조규복,오인수,반지윤,진국희,양명진(2021).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적용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유형 분석
- 푸른나무재단(2022).2022 전국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보도자료)
- Oshio, Atsushi(2021) 비인지능력 개념과 측정 및 교육 가능성 北大路書房

토 론 문

허진재 (강현중학교 학교폭력전담교사)

박기영 (남양주남부경찰서 SPO 경위)

여미정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 센터장)

김혜연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토론문



허진재 (강현중학교 학교폭력전담교사)

발제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여 사이버폭력의 개념 정의 차이를 짚어보고,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급변하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보다 실제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려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학교폭력 현장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토론자로서는 발제자의 견해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측면도 다소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건설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하여 발제자의 연구에 대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담당자로서의 시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별개의 문제인지에 대한 전제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발제자는 사이버폭력을 단순히 사이버상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으로 전제한 것 같다. 발제자가 지적하는 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따돌림’ 하나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야기된 사안에서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의 여러 요소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 나.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사이버폭력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발제자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폭력의 정의 없이 ‘사이버 따돌림’ 유형만 언급하고 그 대상을 학생 간으로 한정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사이버 따돌림’의 ‘따돌림’이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 다. 비슷한 맥락에서 발제자가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비교하면서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암묵적 전제로 지적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구분된다’는 측면도 발제자의 견해와 달리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 것은 아닐까?’라는 반문을 제기한다.

2.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가. 이는 발제자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어려움으로 제일 처음 제시한 문제점이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음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다.
- 나. 발제자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달리 푸른나무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여러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인 통계가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달리 높은 측면을 볼 수 있다.¹⁾ 이는 발제자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어려움에서 제기한 문제들의 근거로 충분히 고려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실태조사 통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1)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고, 나머지는 표본조사라는 차이점이 있기에 애초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명문화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3.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 발제자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측면과 디지털 교구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제안한 것에 동의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사이버스 등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디지털 도구로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다만, 발제자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도구가 계속 개발되고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현행 대한민국 교육 체제에서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1) 현재 발제자가 제안하는 예방 교육 방안은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등을 위한 진도 나가기²⁾, 각종 교육이나 교내 행사의 증가로 인한 시수의 부족³⁾ 등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건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예방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앙에서 방송으로 진행하는 실정이다.⁴⁾

2)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은 실시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실제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안한다.

다. 보다 실제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수능 응시를 위해서는 교과서 1권을 1년 내에 최대한 끝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사교육 시장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공교육 현장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선택 실시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발생한다.

3)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도박예방교육, 학생인권 교육, 생명존중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4) 발제자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김부겸과 한윤선의 비판(2020)의 두 번째 항목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이기도 하다.

- 1)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시수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의 경우 학기당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여러 교육은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해야 하니 더 피로도가 쌓이고, 학생들도 “매날 하는 뻔한 교육이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의 여러 교육들을 1~2가지로 통합한 후에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또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별개의 교육으로 설정하여 ‘학기당 1시간 이상’과 같이 시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2)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위해 수사기관 신고 사례, 사법기관 판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스쿨벨 시스템에서 제작하는 자료들이 대표적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프로그램 중에도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교육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근 실제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 다양한 도구 활용과 별개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발제자의 연구에는 학생 대상 교육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나 심의위원회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보면 ‘DM’, ‘페메’, ‘트윗’, ‘하쿠나’, ‘틱톡’, ‘Asked’ 등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한다. 학생들이 접하고 사용하는 사이버 세계가 상당히 다양해지는데, 그 변화 속도가 빨라서 교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관련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사이버폭력 예방 및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며 위와 같이 제안한다.

토론문



박기영 (남양주남부경찰서 SPO 경위)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기영 경위입니다. 우선 2022년 아동인권보호대회에 토론자로 추천해 주신 나영재 조사관님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입장에서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가피해자로 겪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는 집단적 폭력성이 더 쉽고 빠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 있어도 SNS를 통해 빠르게 모이고 상대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구리 역에서 남양주지역 학생들과 구리지역 학생들이 모여 패싸움 즉 공동폭행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 모인 학생들이 모두 학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단지 페이스북 북에서 친구이며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친한 친구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 상에서 불과 몇 시간만에 서로 싸우기로 약속을 정하고 30여명이 전철을 타고 이동해서 서로 보자마자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싸우자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한순간이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폭행의 징후가 눈에 보이고 경찰의 귀에 들어와 제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메신저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야 경찰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상에서 분노의 감정은 쉽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빠르게 옮겨 다녔고 싸우겠다는 결정은 가장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학생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에서 싸움에 반대를 하면서 나가거나 같이 싸우러 가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 되는 무형의 압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 책임이 분산되고 모두 나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간 것이지 주동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북 타임라인 게시물에 다른 중학교 선배를 욕한 것이 전해져 십 수 명의 선배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2명이 초대되어 온갖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고 선배들이 있는 장소로 불려가 공동폭행을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옷을 전부 다 벗으라고 한 이후 사진을 찍어 협박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메신저로 공동폭행을 모의하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불과 1~2시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폭력성이 결집되고 실행되며 가장 공격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공간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유해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모방으로 인해 고스란히 사이버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심의위원회의 등급을 받아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규제하지만 1인 미디어 동영상은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조금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찾고 사이버 공간은 돈과 직결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어른과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시청연령제한이 없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같은 1분도 안 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있으며 같은 또래의 청소년이 가족과 어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콘텐츠, 조직폭력배가 거리를 활보하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결을 신청하는 폭력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방하게 됩니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잠을 자다가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주의를 주자 선생님을 모욕하고 이를 말리는 교감 선생님께 덤벼들며 “너 밤길 조심해라!”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여기저기 떠도는 사제총기 설계도를 보며 몇 자루씩 사제총기를 만들고 이제 화약과 쇠구슬만 사면 완성된다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없는 카카오톡 채팅방은 청소년들이 패드립, 섹드립이라고 불리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도배되기 일쑤

입니다. 심지어는 줌과 유튜브로 진행되는 수업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시간에도 댓글을 이용해 친구를 모욕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베저장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성을 비하하고 특정 개인과 집단을 모욕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해 교사나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외로운 유부녀인데 뜨거운 밤 보내고 싶어요”라고 게시해 신고가 접수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란 도구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수위를 성인범죄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친목을 도모하라고 만들어 놓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은 사이버 갈취의 도구로 쓰입니다.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소문이 난 선배가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초대하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모두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중 유명메이커를 입고 있는 후배를 자기가 있는 PC방으로 오라고 해서 “이 옷 잠깐 빌린다”라고 하며 자신의 옷과 바꿔 입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소년은 위치공유앱으로 자신이 진료 받은 병원과 가까이 있는 후배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를 가르쳐주며 진료기록서를 떼어 오라고 강요하고 이것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각종 SNS에 자랑하듯 게시한 문신사진, 술집에 모여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진 등, 누구를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싸움경험담 등이 선량한 청소년에게는 공포로 다가와 피해를 당해도 경찰의 신고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SNS 게시물은 사적영역으로 친구 맏기를 하지 않은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N번방사건 이후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당 10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8명이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도 디스코드에서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사서 그것을 성인들에게 1~3만원씩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야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선도프로그램을 받기 전까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가와 학원화장실을 돌면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84명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몇 일전 만난 고등학생은 디스코드에서 복제된 신용카드를

15\$에 구입했습니다. 복제된 신용카드를 구입하기 위한 모든 정보는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이 학생은 구글번역기를 이용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게 되었고 복제된 신용카드로 컴퓨터, 기타 등 약 4,000\$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목적은 단지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타 등 필요한 물건을 공짜로 선물해주면서 자신이 유능한 해커라는 관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구청 마약수사대에 검거되어 소년범으로 저희 경찰서에 통보된 고등학생 2명도 구글에서 고액알바, 마약을 검색하다 메신저를 보내온 마약공급책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동안 던지기 수법의 현장공급책으로 활동했는데 과거에 전과가 없었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수천%가 넘는 고리대를 받는 불법사금융을 하는 대리입금이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여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게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는 청소년 포주역할을 하는 범죄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 누구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아동청소년도 보호자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은 데이트 앱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성인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하게 평범한 아동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등의 메신저와 채팅기능 그리고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의 채팅기능에서 가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처음에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밥 먹었어?”, “힘들었지?”, “내가 그리로 갈까?” 등 다정한 말과 문화상품권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위로하고 걱정해줍니다. 곧이어 둘이 특별한 사이이며 어려울 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서로의 관계를 정립한 이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받고 외모를 칭찬하며 대화주제를 주로 성적인 것으로 돌립니다. “새끼 보고 싶다”, “치마 입은 모습이 보고 싶다.” 등 주로 신체 일부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동청소년에게 서로 비밀을 지켜주는 특별한 사이인데 그런 것도 못해주냐면서 미안함을 심어주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갖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입니다. 반면에 너 어

디학교 누구고 어디 살고 나랑 이런 야한대화도 주고받은 것 부모랑 주변에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심각한 성착취물을 청소년이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며 협박이 심해져 직접 찾아와 성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동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울면서 이 아이가 내가 알던 내 딸이 맞나? 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아동청소년이 활동하는 메타버스, 동영상플랫폼,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공간에 정말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성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정함과 따뜻함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동청소년 자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보면 그 당시만 경각심을 가질 뿐 지속적이지 않고 스마트폰의 유혹에 빠져 몇 시간씩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가지고 자녀와 다툼이 벌어지거나 부모님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자신에 대한 교육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가장 큰 보호요인인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교사가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와 학생이 스마트 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현실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듯 사이버 공간에서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지 아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반항적인 사춘기 자녀와 마음의 창을 닫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노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편안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혹은 피해가 최소한에 이르렀을 때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호자와 교사가 잘 알고 있어야 자녀와 학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4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2022년~2024년) 중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대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2 School Police Officer Report

남양주남부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박 기 영

1. 사이버 공간, 집단적 폭력성의 신속한 확산



학교 폭력, 집단 폭행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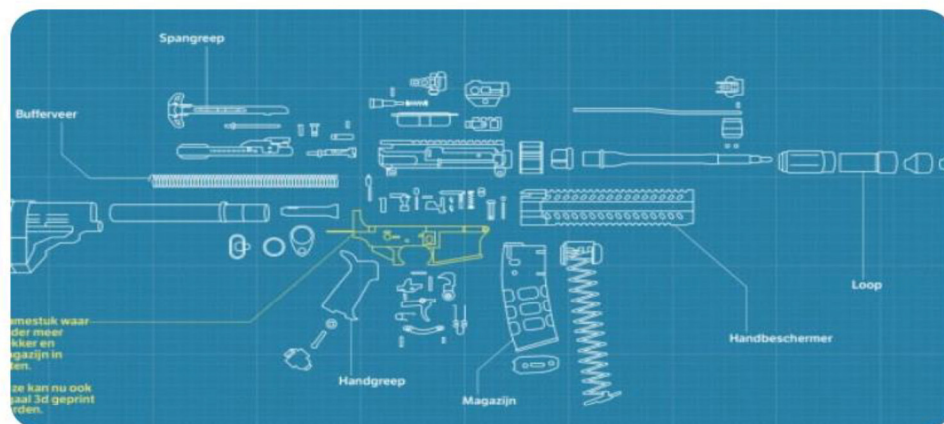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2.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유해컨텐츠의 범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3. 스마트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출처 : 한경닷컴

4. 위치공유 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출처 : 플레이스토어, 한경비즈

5. 디지털 성범죄 저연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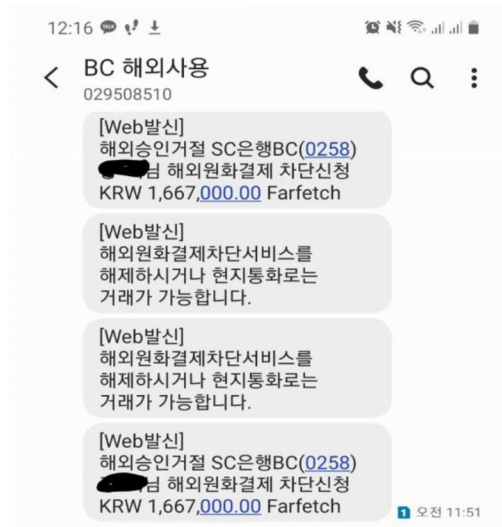
#2424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불잡힌 10명 중 8명이 청소년 / YTN

YTN YTN 구독자 366만명 구독

96 공유 저장 ...

출처 : YTN

6. 유동적 지능과 사이버 범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조지의 해방일지

7. 온라인 그루밍

청소년 성보호법 제 15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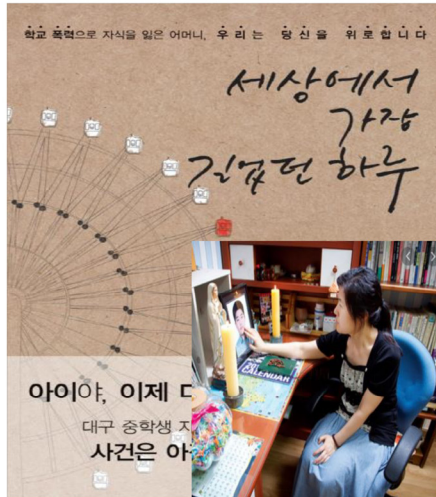
-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혹은 반복하거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 성교·자위 행위 등을 유인 또는 권유
 - ✓ 신체 노출 혹은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KBS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악마의 그루밍'

8. 집요한 사이버 폭력의 끝에는



출처 : 형설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



출처 : 영남일보

9. 아동청소년 생명지킴이의 역할

♣ 생명 존중 서약서 ♣

나 는(은)
나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생명 존중 서약을 합니다.

1. 나는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나는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위에 알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겠습니다.
3.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반드시 친구 나 가족: 에
경찰관: 상담관: 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면 자살위기 상담 전화(1577-0199: 마음의음성상담전화)
로 전화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4. 나는 자살할 수 있는 도구를 모두 없앨 것을 약속합니다.
5. 나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나는 삶의 위기를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내 생명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날 짜: 2022 년 7 월 14 일
♣ 서 약 자: (서명:)
♣ 증 인: (서명:)
증명인: 증명인:

10. 사이버 공간의 윤리

출처 : 뉴스 1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미디어 윤리 정립

- 메타버스 자율규범 수립 지원
- 도박·마약 불법정보 신속차단의 전자심의

연령·매체별 미디어 교육

- 올바른 미디어 접근과 이해 활용 교육

'사이버 도박' 주기적 진단

-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유해악물 불법유통 근절

- SNS·배달앱에서 술·담배 대리구매 감시
- 마약류의약품(헤타닐레지) 집중관리

음주·흡연 조장 환경 개선

- 담배 유해성분 및 함량 공개

오남용 피해 청소년 지원

- 판매위반 유발 청소년 회복적 보호 체계화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학교폭력 등 조기 감지·대응

- 학교폭력신고 원스톱 시스템(App) 구축
- 사이버 폭력 정의 명확화

그룹밍 성착취 엄중단속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차단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388 통합 콜센터 신설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인식 제고

플랫폼 근로청소년 보호

- 플랫폼 노동 공정계약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이행 점검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예방

- 학교전담노동사 확대 배치

근로권익 보호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홍보 강화

토론문



여미정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 센터장)

I. 머리말 :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사이버환경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편리성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령이 어릴수록 사이버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증가하고, 사이버콘텐츠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의 양상도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나 학원 등의 공간에서 벌어지던 폭력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24시간동안 은밀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한번의 유포로도 피해자의 삶이 파괴되고,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환경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학습과 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사례와 피해자의 고통을 알아보고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과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사이버폭력 사례와 피해

1. 사이버폭력 유형과 사례

가. 사이버폭력의 유형

〈표 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분류

	유형	정의
1	사이버언어폭력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2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3	사이버스토킹	상대방이 싫어하는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최종검색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성폭력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정보(사는 곳, 이름,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위
6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나. 사이버폭력의 사례

(1) 집단괴롭힘과 성적 괴롭힘

A학생은 같은 학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배 남학생이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쳐 장난을 치다 팔을 붙잡았는데, 이를 함께 본 여학생이 여우짓한다고 소문내서 선배남학생의 여자친구가 A학생의 SNS에 저격글을 썼다. 이후 선배남학생의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꼬리친다’, ‘여우짓 한다’ 등과 성적 비하 글을 쓰기 시작했고, A학생의 반에 까지 찾아와서 A학생을 쳐다보거나 수군거렸다고 한다. A학생은 점점 등교하기가 두려워졌고, 악몽에 시달리며 수면 부족과 우울감, 공포심 등에 시달리다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A학생은 자퇴를 한 후에도 학교 근처에 가지 못하였고, 교복입는 학생만 봐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

(2) 딥페이크 유포

B학생은 같은 학교 동창생인 남학생이 자신의 얼굴에 야한 사진을 합성하여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본 동창생 중의 한 명에 B학생에 알려주게 되어 자신의 얼굴 사진과 야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B학생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경험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자신이 사진이 유포되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등교와 외출거부, 대인기피 증상이 생겼다.

(3) SNS 아이디 도용

C학생은 같은 반의 학생이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부탁하는 등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와 소문을 듣게 되었다. C학생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로 오해를 풀기위해 해명을 해야했고, SNS의 문자와 댓글이 달려 심한 불안감과 수면곤란, 성적 저하 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다른 학생들이 쳐다보면 피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4)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D학생의 전 남자친구는 SNS에서 D학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쓰고, 협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자 D학생은 유서를 남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가해 남학생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D학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라고 올리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SNS '사이버 폭력' 시달리다 숨진 여중생...가해 남학생 벌금형, 2020. 5. 15)

(5) 2차 가해의 피해

E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과 다툼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E학생에 대해 SNS에 악의적으로 성적인 비방과 허위의 글을 썼고, 이후 E학생의 SNS에는 수백개의 욕설과 댓글이 달렸다. E학생의 SNS에는 24시간동안 욕설과 비난의 메시지가 왔으며, 학교에 선배와 같은 학년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욕설을 하기도 하고 말치기도 하여 2달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다른 반학생들도 찾아와 찌려보며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기도 하였으며, 6개월 이상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E학생은 지역사회와 또래들 사이에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있을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았고,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E학생은 자살시도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며 자신이 망가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6) 2차 가해의 피해

F학생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학생과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두 학생이 가입되어있던 단체 대화방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 학생의 친구들이 함께 가세하면서 F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방폭과 SNS에 욕설과 비난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학교에 등교하니 자신을 따돌리고, 배제하는 등 행동을 하며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고 한다. F학생이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못들은 척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며 F학생을 따돌림하기 시작했다.

2.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1)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 등 심리적 고통 경험

-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파급력이 크며, 사이버폭력의 기록이 복제되고 파급확산되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짧은 시간에 다수에 의해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이버폭력의 익명성은 가해자로 하여금 더욱 쉽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폭력의 수위가 심하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하게 된다. 현실에서 폭력은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도 폭력의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겨나기 쉬우며, 이것이 더욱 심각한 폭력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자는 수많은 정서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몇몇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 외로움, 불안감, 좌절감, 무기력함 등을 호소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후 학생의 경우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1.7%)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34.1%)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2)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을 경험하며, 비참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한 사고를 가지기도 하며, 정상적인 성인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문제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홍성희(2022)의 연구에서 사이버피해경험이 없는 자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자와의 비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살생각이 2.4배, 자살시도는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John 외(2018) 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피해경험자는 사이버 피해경험이 없는 자와 비교하였을 때 자살 행동 승산비가 2.10배, 자살시도가 2.57배, 자살 생각은 2.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면곤란 및 신체화 증상 호소, 일상생활의 어려움

- 사이버폭력을 당한 아동들은 섭식과 수면곤란, 복통, 두통등의 신체화 증상과 기상의 어려움, 대인기피, 외출의 어려움, 등교거부 등으로 인해 학교성적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4) 대인기피, 등교곤란 등으로 인한 자퇴, 학업중도 포기, 진로탐색 곤란

- 사이버폭력을 당한 아동들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또래와의 갈등이나 대인관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또한 학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대인기피와 등교곤란, 학업 성적 저하, 학교적응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여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5) 피해 회복의 어려움

- 사이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유포된 피해자들은 사이버폭력이 복제되고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우며, 사이버공간의 빠른 전파성으로 쉽게 유포되고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6) 사이버폭력의 피해 발견의 어려움

-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사이버의 속성상 피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장기간 폭력이 지속되어 피해가 심각해진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여 피해의 기간이나 피해범위를 증명하기 어렵다.

(7) 사이버폭력의 증거수집의 어려움

-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가 언어적 폭력을 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했을 경우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칫 SNS의 대화방에서 나오게 되면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이버공간에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피해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도 모르게 가해자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8) 사이버폭력 후 2차가해 피해자의 피해

- 사이버폭력이 발생 한 후 학교에서 다시 학교나 학원, 학교 인근, 지역사회 내에서 다시 2차가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학교에 대한 공포,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2차가해가 발생하게 된다.

III. 사이버폭력의 개선방안

1.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분리해야 한다.

-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없어 피해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교가 보다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성,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사이버폭력피해에 대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과 피해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피해전담기관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진행되어 겉으로 피해가 잘 확인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폭력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전용 애플리케이션(App)을 구축하며,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 신고접수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로 인한 불안·우울·자살생각과 같은 심리적 문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생·학교·학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이 이루어져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5. 사이버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모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있으나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 19 이후 사이버폭력이 증

가하고 있는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서 강화하고,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며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여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홍성희(202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 교정복지연구 제 76호.
- 김경은, 최은희(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제 38호.
- 조윤오(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유형화 연구: 상담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권 5호(2017).
- 박현선, 유숙경, 김진숙(2020).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충동성 및 가족응집력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11(3).

토론문



김혜연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과 스마트 미디어 기기 사용의 저연령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사용 기기 증가에 따라 미디어 사용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 및 폭행 등 충격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이전처럼 신체적 가해를 통해 괴롭히는 경우보다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환경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그 자체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그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미디어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학교, 학원, 집 등 청소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 미디어기기를 사용한다. 이처럼 스마트 미디어기기가 보급되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 및 포털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정보 검색, 온라인 교육,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취미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간편성 그리고 즉각적인 정보 검색 등은 분명히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전제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악플, 개인정보침해, 해킹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들로 인한 혼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폭력, 사이버 따돌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측면도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사회의 양면성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 41.8%, 집단따돌림 13.3%, 신체폭력 14.6%, 사이버폭력 9.6%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청소년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사이버일탈 유형으로, ‘스마트폰중독/과의존/과몰입’과 사이버 괴롭힘이 각각 24.1%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도박이 12.1%로 3위였으며, ‘인터넷 게임중독/과의존/과 몰입’과 ‘음란채팅’이 각각 10.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의미의 사이버폭력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협박과 욕설,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와 SNS 공간에서 음란물이나 폭언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행위를 일컫는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6년 미국 미주리의 13세 소녀, 메건 마이어(Megan Meier)가 인터넷 상에서의 시달림으로 인해 자살하게 되면서 여론이 형성되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 또한, 201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스마트폰을 통한 집단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오승희, 2014). 그 이후로도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은 학자에 따라서 그 용어의 정의가 다른데, 대체로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 문자메시지, 디지털이미지 전송, 웹페이지, 블로그, 채팅방, 토론방 등에서 컴퓨터나 그 외 다른 정보화 기기 등을 사용하여 괴롭히는 것(bullying)을 말한다(Patchin & Hinduja, 2006; Willard, 2006). Finkelhor와 그의 동료들(2000)은 사이버 불링을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이라 정의하

고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 하였으며, Juvonen과 Gross(2008)는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Juvoene, Gross, 2008).

따라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Cyber)라는 가상공간에서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따돌림이나 괴롭힘, 공격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 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사이버폭력의 유형

번호	유형	의미
1	사이버스토킹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비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3	이미지불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유포하는 행위
4	명의도용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5	사이버강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 머니, 캐릭터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6	사이버성폭력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7	사이버감옥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톡 등에서 특정인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을 하는 행위
8	사이버따돌림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친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친구신청 거부 또는 배제하는 행위
9	플레이밍	특정인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인 행위
10	사이버명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11	안티카페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서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12	사이버불링놀이	사이버 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3. 사이버폭력의 특징

가. 비대면성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괴롭힘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직접적인 괴롭힘과 다르다.

나. 확산성

가해자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려 거짓 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 올릴 때, 인터넷망을 통한 빠른 확산성으로 내용의 진실 여부나 사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다. 즉시성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마음먹은 즉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복합성

사이버폭력의 유형 한가지만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마. 영구박제

인터넷의 특성상 확산성과 맥락을 같이하여 가해행위, 피해 사실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경계 모호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공격을 받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이다.

4. 실제사례

번호	내용	유형
1	블로그에 A에 대한 험담을 올렸어.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 A의 사진을 올려 욕을 하며 다른 친구들과 B를 괴롭혔어.	사이버비방, 이미지불링
2	휴대폰으로 계속 야한 동영상을 보내고 A는 이상한 동영상을 즐겨보는 아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	사이버성폭력, 플레이밍
3	친구신청을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	사이버따돌림
4	게임 속에서 계속 부모님 욕을 해서 뭐라하자 아이템을 강탈해갔어.	사이버비방, 사이버강탈
5	그룹 채팅방에 계속 초대받아 비난과 욕설을 받게 하고 퇴장하면 계속 초대되어 괴롭힘을 당했어.	사이버비방, 사이버 감옥
6	친구가 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명의로용, 사이버강탈
7	문자, 채팅, 음성메신저를 통해 서로에게 욕을 하고, 상대 욕에 당황하거나 욕이 끊어지면 지는 게임을 했어.	사이버비방, 사이버불링놀이
8	친구를 채팅방에 초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욕설을 하게 시켰어.	사이버명령, 사이버비방
9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했어.	사이버명령, 사이버강탈
10	친구들이 채팅방에 초대해놓고 이상한 질문과 욕을 계속했어. 대답하지 않자, 무시하냐고 욕을 했고 채팅방을 나가자 다시 초대하며 나가지 못하게 했어.	사이버감옥, 사이버비방
11	이상한 사진 밑에 “A증명사진인줄...와! 대박 못생김.” 이라는 댓글을 달자 다른 친구들도 비웃으면서 이상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	이미지불링, 사이버비방
12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나쁜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5. 관련법규

가. 허위사실유포죄

- 형법의 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

다. 사이버 모욕죄

- 형법상 존재하지 않음, 단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죄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경우, 처벌 가능

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상해죄

- 형법 제257조, 258조, 259조
-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바. 폭행치상죄

- 형법 제262조
-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III. 사이버폭력 대응

1. 교육과 상담

가. 청소년예방교육



나. 부모교육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이해 학부모정보통신윤리교육 	신명준서 1. 도입 - 부모의 역할변화, 기능, 아버지의 고백 2. 미디어 중독성 이해 - 미디어 중독을 중독하는가? - 어떤 중독성 지수인가? 3. 자녀의 미디어과외론 이해 - 왜교육, 보충교육 - 정보, 학습, 인지 이해 4. 향후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 교육, 자력 - 구체적인 사항 5. 나가는 말 	부모의 부모의 역할 변화 
4. 좋은 부모되기 구체적 사항 8 가지에 대해 1. 사적비밀에도 폭력적이다. 피해, 가해 모두 간과할 수 없다. 2. 사회비밀적 피해를 발생시킬 때는 대응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조력 - 우선 감당 수감, 사후적에 할 문제임을 설명, 묻는 데 답해 3. 공격적, 배제, 다른 대처방식이 알려지고, 그 이후 행동할 사건에 대한 행동 -> 선택 4. 증거수집 매우 중요 5. 관련 기관 - 학교, 경찰 등에 신고 	4. 좋은 부모되기 구체적 사항 8 가지에 대해  	5. 나가는 말 •경제적으로 금수저 or 흙수저 인가요? •심리정서적으로 금수저 or 흙수저 인가요?

다. 상담(집단 및 개인)

- 1) 상담의뢰
- 2) 가·피해 상황 파악
- 3) 청소년 상담 및 부모면담
- 4) 프로그램(보드게임 등)
- 5) 대처능력 향상(심리정서적, 현실적 대처 방안 탐색 및 실행)

2. 제안

구분	역할
기관	가. 사례 및 실태 파악 나. 지속적 연구 및 정책 제안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사회	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명확한 개념적 정의 나. 체계화된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다. 교육 및 대처 제도 마련 라. 관련 법규 제정
개인	가. 심각성을 인지 나. 가·피해 상황 발생시 적극 대처(신고, 증거수집, 도움요청 등) 다. 교육과 상담에 참여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소년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정보문화 이슈리포트, 13-01.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stice, 4(2), 148-169
- Finkelhor, D., Mitchell, K. J., & Wolak, J. (2000). Online Victimization: A Report on the Nation's Youth.
- Juvonen, J., & Gross, E. 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9), 496-505.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5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발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로 진행중이며
강문식, 김성호, 노현경, 이수경, 김동현, 조용화, 최은실, 하인호의 공동연구입니다.

발표 _ 강문식(인주노동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목차

- 01 연구 개요
- 02 이론적 배경
- 03 현장실습 관련 법 제도 및 운영현황
- 04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 05 심층면접 분석
- 06 결론 및 제언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요

01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으로 현장실습 의무화
산업체에 저임금 노동력 공급 목적
학습권 침해,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등 발생
취업과 실습의 불분명한 경계

잇따르는 중대재해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울산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CJ진천공장 자살,
성남토다이 자살, 전주LG유플러스고객센터 자살,
제주 생수업체 사망, 여수 흥정문 님 사망

주요 개선대책과 한계

정상화 방안(2006), 개선대책(2012), 내실화 방안(2013)
학습중심 현장실습(2017)
교육적 경험보다 취업 연계의 비중이 크다(관계부처, 2021)
여전히 조기취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

연구의 필요

현장실습생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제기
현행 제도 내에서 권리 종합적 충족 방안 한계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지 목소리까지 제기
권리 침해 실태 파악과 근본적 대안 모색 필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개요
02



직업교육의 이해

이론적배경
01

기능주의

훈련되지 않은 학습자를 기능 위주 훈련을 통해 생산적 노동자로 준비시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

직업주의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 강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 세분화된 기술 위주 교육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강조

David Snedden, Charles Prosser

인문주의

교육과정에서 교양적 지식과 폭넓은 시야, 비판적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 => 보통교과 강조

신직업주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이분법 비판

세분화된 기술보다 일반적 기술을 강조

John Dewey



직업교육의 이해

이론적배경

02

계급 재생산 이론

직업교육 과정에는 대체로 노동계급 출신 학생들로 구성

직업교육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 계급 재생산에 기여

Marxism, Socialism

비판적 직업교육

교육의 역할은 학생의 힘갖추기(empowerment)에 있어야

신직업주의의 상황적, 구성주의적 학습 방식과 유사한 측면

Paulo Freire

종합

사회적 공동체성과 일터의 민주화를 위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일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꿈과 희망 주는 교육(Lakes, 1994)

보통교과 축소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만 가르치는 것을 직업교육 목적이라고 한 정할 경우 학교 교육 기능 포기하는 것. 학생들의 생애 기회와 경쟁력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리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야(임언, 2017)

사회, 경제, 환경 개념이 포함된 개인과 문화 발전에 필요한 일반교육을 제공해야(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 협약」, 1989)

한국에서 중등 직업교육

이론적배경

03

관련 법령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교육 정의 부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직업교육 고등학교 등장. 1963년 실업계고등학교 -> 2007년 전문계고등학교 -> 2010년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적으로 직업계고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특수목적고), 일반고 직업반을 통칭

국가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성격 규정

○ 종국교육기관 : 6차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 계속교육기관 : 7차 교육과정

"직업교육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 · 공급"(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2020)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 교과를 직업계고에만 신설 -> 일반고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하는 직업주의적 관점

시기

주요 정책

중등
직업교육
성격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 강조 기술이나 기능 습득에 치우친 직업훈련이라는 의미의 직업교육	종국 교육단계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산업 고도화에 따라 고급 기술 인력 양성 강조	계속 교육단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노태우 정권)	제조업 인력난, 대학진학 과열 해소 이유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강조 실업계고수, 정원 확대하여 부실 학교 확대	종국 교육단계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일·학습 결합된 평생학습 직업교육제도 도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변화 소양 특성과 인력양성 체제로 유연화	계속 교육단계
2020년대 후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직업교육에서 기능습득 및 직업훈련적 성격 강화 평생학습은 '신위업 후진학' 기조로 운영	종국 교육단계

종합

중등교육과정 성격의 관점에 따라 취업으로의 연계시기에 차이

양측 모두 중등직업교육의 목표를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성격에서 찾는 공통점

2012년 이후 기초학력 부진 국가 통계에서 특성화고 제외 -> 학습권 침해와 기초학력 저하

현장실습의 개념

이론적배경

04

현장실습의 목적

Hoemer, Wehrley(1995)의 구분

이론과 실습의 통합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학교 기반 일 체험
(school-based work
experience)

직무 기반 일 체험
(job based work
experience)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단계 현장실습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이뤄지는 직무 기반 일 체험 학습으로 학교의 관여가 낮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강조점

해외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장실

이론적배경

05

직업교육경로

미국(일원화체계)의 중등교육과정 현장실습제도

일원화체계

학교가 교육 운영
기초능력 습득 및 이해에 초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이원화체계

학교와 기업이 공동 운영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명칭

특징

도제제도 Apprenticeship	미국에서 참여자 평균연령 29세, 고졸 참여자 2% 중등교육 수준에서는 결합 있는 것으로 평가
산학계약제 business-education compact	취업과 중등이후 교육에 대해 재정적인 약속 산업계 출판과 차이 있으며 일부 학생만 선택적 참여
협력적 일 학습 프로그램 aligned work-study program	모색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교육기관 내에서 수행 (학교 교무실, 식당, 토지관리부서 등)
산학협동교육 (Co-operative education)	강의교육과 작업현장 실습을 결합한 프로그램

우리나라와 비교

우리나라 현장실습 제도는 산학협동교육에 가깝지만 기업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교육과의 연계 약하다는 특징

선행연구 검토

이론적배경
06

A. 김기현 외(2006)

현장실습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실업과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현장실습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부재 문제가 심각

전공과 무관한 업무수행과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형태로 현장실습이 진행되어 교육과정 일환으로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특징

B. 진숙경 외(2016), 진숙경 외(2017)

교육주체들에게 현장실습제도는 학습의 과정이 아닌 취업의 통로로 인식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대안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패지를 제시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위 부여하는 관행 폐지 제안하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노동의 노동자성 인정해야한다는 노동권 분야 연구 성과와 충돌 소지

C. 황여정, 김승경(2018)

현장실습이 직업계고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절대적인 입직 통로로 인식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특히 취업의 질과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함

취업이 목적이 되어버린 직업계고 교육의 한계가 뚜렷이 확인되었으며 취업과 학습이 현장실습의 목표로서 공존할 수 없음이 확인

취업지원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만 바뀔 것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

D. 임언(2019)

현재의 고교 직업교육 논의는 대부분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을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진행되는 경향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는 평생학습자로서 역량을 키울 마지막 교육과정. 그러나 2010년 이후 직업계고의 기초학력 실태조사는 국가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마지막 조사에서 전문계고 학생의 40.5%가 기초학력 미달로 조사됨.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의 요구에 맞게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현장실습 관련 법, 제도, 교육과정

현장실습 관련 법, 제도 및 운영 현황
01

현장실습 정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최근 5년 동안 현장실습 제도 운영

학습과 취업을 분리시킨다는 취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발표

'취업률' 제고 위해 기업 기준, 취업시점 완화

2021년 추가 개선방안 이후, 연계교육형 전공전환 과정 통해 전공일치 문제 유해 반도체 산업 노동력 공급 사례

현장실습제도 주요 변화

	주요 정책	주요 내용
1973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공업계고 학제 「2.1」로 개편
2006	현장실습운영 정상화 방안	교육과정 2/3 이수 후 파견형 실습 허용
2008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2006년 정상화 방안 폐지
2012	특성고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표준협약서 개정, 근로계약서 작성
201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	현장실습 기업 선정기준 삭제
2017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실습과 취업을 분리한다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발표
2018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	선도기업, 참여기업 분리
2019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취업률 제고, 선도기업 기준 완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취업률 저하 강조, 선도기업 기준 완화
2021	안전 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산업체 채용약정형 > 산업체 채용형 연계교육형 실습 전공전환 과정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현장실습 관련 법, 제도 및 운영 현황

02

A.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율	41.7	22.5	29.1	30.1	33.5
	5인미만	5~30인	30~300인	300인 이상	
사업체규모 (2020)	14.9	37.5	39.0	8.6	

B.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통계(2020)

	전학률	취업률	미취업/전학	유지취업률
2020졸업생	44.3	26.1	27.0	64.4
	5인미만	5~30인	30~300인	300인 이상
사업체규모	6.7	34.0	37.8	21.2

C. 현장실습 기간

	4주 이하	5~8주	9~12주	13주~51주	52주 이상
2018	9,541	4,018	1,446	4,693	314
2019	8,510	6,723	3,187	5,278	43
2020	8,498	5,192	3,163	4,935	299
2021	6,904	6,846	4,771	5,463	223

D. 현장실습 시작 시기

	6월 이전	7~8월	9~10월	11월 이후
2018	3,190	1,970	6,984	7,868
2019	3,314	2,574	9,565	8,288
2020	3,094	2,341	8,911	7,741
2021	2,916	4,107	10,424	6,760

분석자료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1

OECD 국제학업성취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3년 주기 시행되는 국제 규모 학업 성취 평가
2009~2018년 평가자료 활용
분석대상 : 중등교육과정(ISCED 3) 재학생
비교집단 :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기초학력 기준 : level 2*

*비판적 시민으로서 현대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수준(baseline level)으로서,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수준(OEC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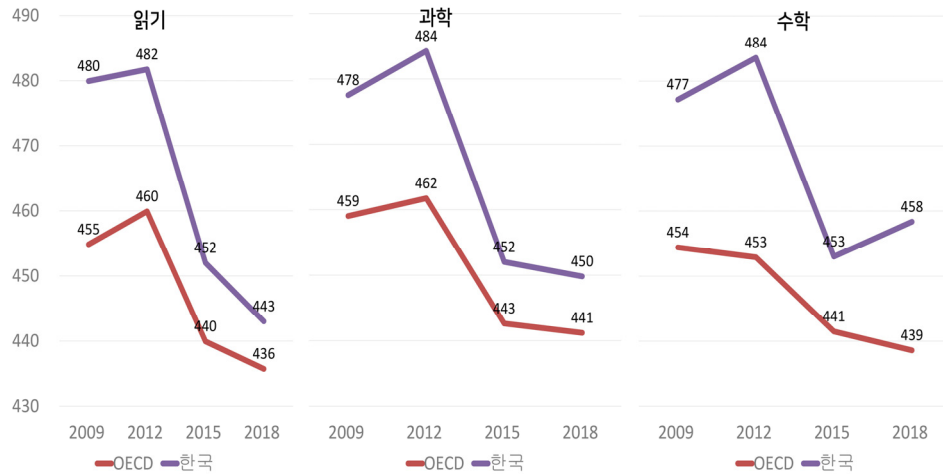
한국교육고용패널II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II)

2016년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 대상 종단 패널조사
특성화고 패널 중 현장실습 문항 응답*한 1,861명 대상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II는 현장실습 경험 관련 문항의 응답을 신뢰도 문제로 미제공하고 있어 별도 요청 뒤 제공받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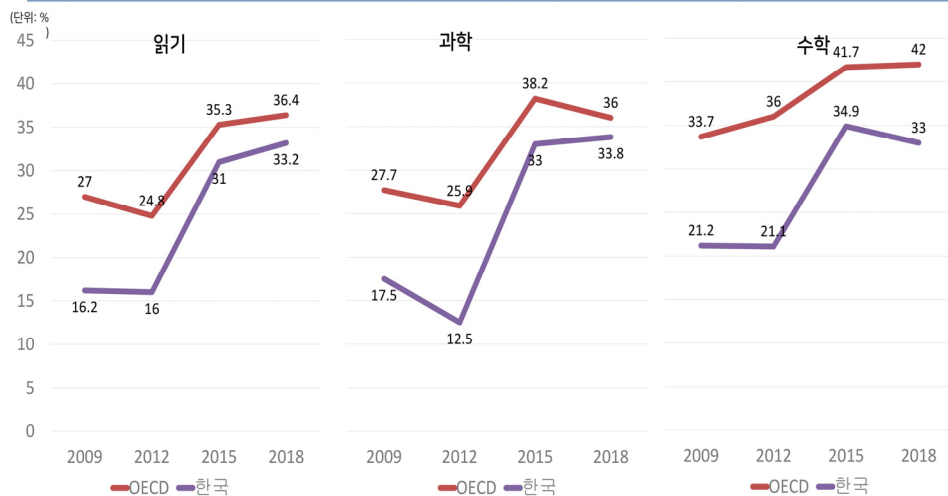
OECD 학업성취도 평가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2



OECD 학업성취도 평가 - 저성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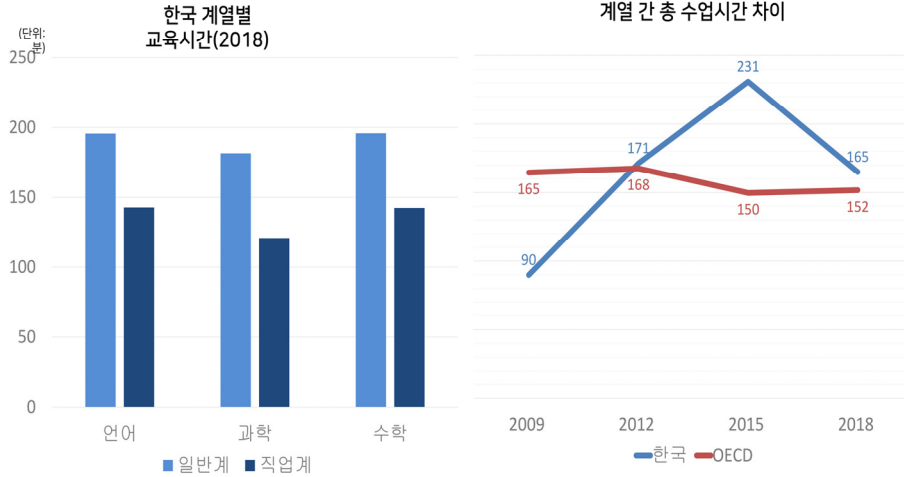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3



OECD 학업성취도 평가 - 교육시간 비교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I - 진학배경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5

고등학교 선택 이유 및 선택 시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학교선택이유	대학진학	7.5	0.2	61.2
	가정형편	2.1	5.3	0.5
	성적	23.3	1.9	14.1
	나의 적성	21.3	19.8	9.5
	취업	39.7	70.2	1.5
	기타	6.1	2.7	13.1
학교선택시기	초등학교	0.7	0.3	3.6
	중학교1학년	2.3	5.0	6.5
	중학교2학년	10.9	21.9	8.3
	중학교3학년	86.2	72.8	81.6

특성화고 진학확률 예측 로지스틱 분석

	Exp(B)	p
가구 소득	0.999	<0.001
중3 성적(성)	0.171	<0.001
졸업 후 계획(취업)	4.644	<0.001
자기효능감	0.984	0.014
부모 학업 지원	0.974	<0.001
상수	0.337	<0.001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I - 진로경험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6

진로 경험의 학교 유형별 차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상담*	3.65	3.98
채용 기업 정보*	3.72	3.97
구직활동 지도*	3.72	4.03
취업 박람회*	3.76	4.04
취업 캠프*	3.85	4.06
졸업생 멘토링*	3.81	4.13
취업처 연계*	3.73	4.10
교사의 진로, 적성 관심	3.75	4.10
전문교과 수업 참여	3.75	4.23
실습실 및 기자재	3.81	4.35

*만족도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의 학교 유형별 차이

	특성화고	일반고	마이스터고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	3.12*	3.18*	3.56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3.15*	3.20*	3.59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유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07*	3.35	3.52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설명할 수 있다	3.27*	3.60	3.82
희망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3.58*	3.86	3.9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3.61*	3.70	4.05

*나머지 집단과 유의한 차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I - 현장실습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7

특성화고 패널 현황(3차년도 기준)

	빈도	백분율
현장실습 참여	663	35.6
현장실습 비참여	1,198	64.4
계	1,861	100

현장실습 완료 여부

	빈도	백분율
도중에 중단	160	24.1
완료	501	75.7

현장실습을 그만둔 이유

	백분율
신체적 부적응	16.9
심리적, 정신적 부적응	26.3
산업체의 도산	18.8
산업체의 협약 사항 불이행	9.4
학교 측의 배치 부적절	6.3
기타	37.5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 현장실습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8

현장실습 중단 후 남은 실습기간 보낸 방법

	백분율
학교내에서 실습 과정 참여	5.6
학교 수업 참여	48.1
학교에서 자습	16.9
아르바이트	5.0
학원	0.6
특별히 한 일이 없음	16.3

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의견

	5점 만점
수행한 일이 전공 분야와 연관성이 있었다	3.44
작업 환경이 안전하다	3.80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었다	3.83
업무를 잘 가르쳐 주었다	3.86
전담 교사의 관심도가 높았다	3.66
실습한 기업에 취업하고 싶었다	3.0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 현장실습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09

특성화고 패널의 졸업 후 진로

	현장실습 참여	현장실습 비참여
진학	199 (30.0)	546 (45.6)
임금노동자 (아르바이트 제외)	215 (32.4)	257 (21.4)
비진학		
기타 취업	54 (8.1)	77 (6.4)
비취업*	195 (29.4)	318 (26.5)
계	663	1,198

*현장실습 참여자의 비진학·비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음(p=0.033)

임금노동자 취업 시기

	현장실습 완료	현장실습 비참여 및 비완료
졸업이전*	103	135
졸업 후 6개월 이내	38	83
졸업 후 6개월 이후	34	77
계	175	295

*졸업 이전 노동시장 이행 여부에는 두 집단 사이 유의한 차이
졸업 이후 취업자의 취업시기와 현장실습 경험 여부 사이에는 유의성 없음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 현장실습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10

취업 정보 얻은 곳

	현장실습 완료	현장실습 비참여 및 비완료
학교 취업지원센터	81	108
기타	87	176
계	168	294

종사상 지위

	현장실습 완료	현장실습 비참여 및 비완료
정규직	136	198
비정규직	39	97
계	175	295

현장실습 관련 변인이 종사상 지위에 미친 효과

	Exp(B)	p
현장실습 경험 여부	1.287	0.249
취업시기*	1.683	0.046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1.739	0.042
상수	1.485	0.022

*현장실습 경험 여부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취업지원제도 운영 여부가 노동 시장 이행에 보다 영향력 있을 것임을 시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 현장실습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경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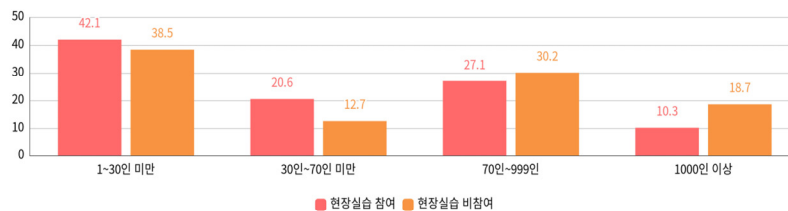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평균임금, 노조유무

	현장실습 참여	현장실습 비참여
평균 월급(백만)	188.88	185.72
노조유무	19%	18%

취업정보 취득 통로와 평균임금

	취업지원센터	기타
평균 월급(백만)*	194.16	183.05
노조유무*	25%	14%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사업체 규모(백분율)



심층면접 현황

심층면접 결과 분석
01

심층면접 대상

	인원	비고
특성화고 졸업생	14명	지역, 계열 안배
특성화고 재학생	11명	2차에 걸쳐 진행
특성화고 교사	9명	FGI 2회
취업지원관	5명	교육청, 학교 안배
기업현장교사	6명	취업지원관, 취업담당교사 매칭
취업담당교사	3명	취업지원관, 기업현장교사 매칭
관계부처	4명	고용노동부, 교육청, 상공회의소, 공인노무사회 등
기타(미원료)	10명	청소년, 학부모 단체, 교육부 등
계	52명(62명)	

비고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않았고, 분석을 진행 중

본 발표에서는 초별정리를 토대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임

특성화고 진학 배경

심층면접 결과 분석
02

일단 성적이 인문계는 안 될 것 같아서 상업고를 가려고 했는데 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_ 재학생1

인화 설명회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이쪽에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약간 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_ 졸업생7

솔직히 말하면 성적이 안 돼서 간 것도 있는데 그 래도 가고, 그 학교가 안 좋다는 소문을 많이 받아 도... _ 졸업생4

제가 아쉽게도 공부를 좀 잘했다면 중학교 때부터 딱 보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진짜 내가 싫었다 안 한다가 딱 성격으로 나뉘잖아요... _ 졸업생6

특성화고 진로 선택 시 충분한 정보 갖추지 못했고, 진정한 자의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 확인

침해 받는 학습권

심층면접 결과 분석

03

3학년은 전공과목밖에 없어요. _재학생1

3학년 되고 국어랑, 사회과학, 한국사 같은 과목은 수업이 없어요. _재학생5

전문교과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려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단위가 작아졌고 그러면 3학년에 국영수나 기초학력이 포함될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현장실습과 맞물리면서 3학년 2학기에는 아예 인문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3학년 1학기까지 편성하지 않는 학교마저 생기는 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_교사1

아무래도 저희 쪽이 실무 쪽으로는 많이 연습할 때도 이제 이론적인 거에서 약간 이제 영어나 과학 쪽에서는 3학년이 되면 그 과목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들어와도 과학 쪽이 들어왔으면, 다 과학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_재학생10

현장실습 운영 위해 교과 편성에 제약 있고 인문, 기초교육의 학습권 침해

취업과 동의어인 현장실습

심층면접 결과 분석

04

말만 실습이지 실상은 취업이죠. ... 어차피 취업 할 거 뭐 하러 실습을 하나 바로 취업으로 가면 안 되나 생각도 했었거든요. _졸업생9

제가 미니잡매거 거기에 간 것도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 가봐라 한번, 자소서를 써서, 그래서 가게 된 케이스라, 되게 취업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_재학생6

왜냐하면 저희는 무조건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꼭 일할 생각 없으면 처음부터 지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원하는데 학생이 관둘래 하면 안 되니까 꼭 일할 생각으로 지원하라고. _취업담당 교사2

저희가 따른 회사에 지원을 해서 그 회사에 합격이 되면 그렇게 실습을 나가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러한 식이라서 ... 웬만큼 중소, 중견부터는 워크넷이라던가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사이트에 이름을 쳐 놓으면 이렇게 딱 떠오. _재학생5

예외 없이 모든 면접 참여자들이 현장실습을 취업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음

근면한 노동력 공급

심층면접 결과 분석

05

제가 원래 성적순으로 취업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데 올해부터 내신 순으로 취업이 그게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고(심각해졌네요) 애들이 작년까지 성적들, 성적을 열심히 했는데 올해부터 내신으로 바뀐다고 해서... _재학생1

(취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있나요?) 예질 관련. (예질이요?) 네, "잇사람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 기획하는 주는 데 이제 뭐 하고 싶다고 말을 안 하면 도움이 딱히 없는... _재학생11

기업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찾아서 알아요. ... 일단 저희가 좀 지원이 없어요. (기업에서?) 아니요. 아니요. 저희 학교에서요. _재학생1

먼저 출결이랑 자격증을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성적도. _재학생8

현장실습 사업제 선택 과정에서 출석, 성적, 자격증 등으로 출세우기 마련

학교의 역할은 '근면한' 학생을 사업제에 공급하는데 초점

비교육적 실습

심층면접 결과 분석

06

휴게실은 없고, 뭐라고 해야 하지? 이렇게 여기에 사무실들이 있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여기 커 피 머신이 있고 (항바실 같이?) 실은 아니고 그냥 약간 가실 같이... 힘들면 거기서 이제 커피 타고, 좀 너무 허리 아프다, 이러면 그냥 욕상 가서 바랄 도 없고... _재학생9

오히려 뒤 받쳐주는 완전 단순 업무 하는데 나가서 결국에 그게 삶의 경로가 되는 친구들이 계속 마음에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_학교컨턴도무서2

제가 대기업으로 간 게 아니고 아차피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차피 인원 대체가 어차피 되는 자리예요. 내가 아니어도 그냥 기본적인 그냥 엑셀이나 이런 걸 할 줄 알면 한 한두 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회사 적응하는 게 하나 못하니까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업무적인 내용이나 그런 거는 이제 어렸든 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생각도 못해요. _졸업생6

근데 그때는 저희가 7시 출근에 5시 퇴근인데, 1월에 엄청 바빠서 7시에도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벽에 오면 밤이 진짜 잠깐하거든요. 그때, 퇴근할 때 7시면 진짜 잠깐해요. 근데 혼자 버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눈물이 그냥 계속 나 와요. _졸업생3

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실습 과정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조건(교사, 교실, 교재, 평가 등)이 부재함이 확인됨

빈발하는 권리침해

심층면접 결과 분석

07

약간 그런 걸로 다친 건데, 제가 칼 한 번 만지다가 칼로 자르고 있었는데 약간 그때 재질이 약간 테이프 약간 끈적이는 그거였는데 자 대고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손을 타고 올라와서 한 번 막! _졸업생1

(다른 안전 장비는?) 없어요. ... 손... 장갑 있긴 한데 그냥 목장갑 있잖아요. 면장갑, 면장갑 _졸업생10

(현장 실습 중 다친 횟수?) 한 5번? _졸업생2

전 많이 다쳤죠. 베이고 찔리고. 그냥 혼자서. 혼자서 제가 그냥 피 난 거 그냥 이렇게 짓누르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라시던데요. _졸업생4

면접 참여자 다수가 실습 중 다쳤거나 안전보건 위협을 경험

미흡한 권리구제 제도

심층면접 결과 분석

08

(현장 코칭 나왔을 때 부당한 일에 관한 얘기를) 했긴 했는데 다는 못 했죠. 거기 앞에, 뒤에 원장님 한 분 계셔서 눈치 보아서 못 했죠. _졸업생4

근데 이거는 우리 소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노무사회랑 이제 선생님처럼 어떻게 이거를 도와줄지 상의를 하는데 노무사회에서는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두시죠 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학생은 그렇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없어. 이게 병역 특례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어디 신고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곳에 아예 이 학생이 신고를 안 한 상태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나간 학생들을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상해도, _학교전담노무사2

권리 침해를 겪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부족

취업 아닌 진로 선택의 증가

심층면접 결과 분석

09

지금은 애들이 안 그래도 진학 쪽이 더 많아요.
97:3 (웃음) _재학생10

그냥 대학교 가서 좀 공부 좀 더 하고, 뭐 하면
좀 더 군데도 갔다 오고 자격증도 많으면 선택
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_졸업생8

솔직히 사실 내가 이거보다는 대학을 가서 그 수
업을 듣고 토익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더 내가 3년
동안의 돈보다는 지식이 훨씬 더 쌓이지 않았을까
라는 지금 다른 애들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받
고 있고, 보았고 근데 좀 그렇게 대학 공부하는 애
들 보면 막 나이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대학이더라
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진학을 꼭 했으면 좋
겠어요. _졸업생6

제 기억엔 26명이 있었는데 진짜 진학이 22명이면 취업이 4명 이렇게. ... 사실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주변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교하
게 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도 물론 과제나 뭐 교수님, 그런 수업받고
개념도 힘들겠지만 이제 같은 나이에 이제 직장 상사분 비위 맞추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이제
고객 응대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비교하게 되는 게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랑 대화해 보면 다 공통점으로 힘든 게 재내는 이제 어울릴 걱정 없이
놀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_졸업생7

취업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

결론1

결론 및 제언

01

인문교육, 보통교육의 미흡

2012년 이후 특성화고 학생 기초학력 저하 두드러
2018년 기초학업 저성취자 비율 33.0~33.8%
학대되는 학교 계열 간 수업시간 차이(주당 89.7~165분)
아동·청소년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침해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특성 부재

특성화고 진학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적
진로성숙도에서 일반고에 비해 낮은 자기효능감
졸업자 중 비취업자 비중 확대(50%→73.5%)
학교는 소수 학생의 취업에 교육적 역할을 집중

현장실습 제도의 학습권 침해

현장실습 운영 위해 기형적으로 편성되는 보통교과
자격증 취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
12주 이상 현장실습 사례 13.4%, 52주 이상 879건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피하기 어려운 조건

비교육적 경험이었던 장실습

실습과정에서 교사, 교육장소, 교재, 평가 부재
숙련 필요 없는 단순 업무 중심으로 훈련의 성과도 미흡
취업연계, 병역특례, 학교평판 고려로 문제제기 어려움
과소 집계되는 권리 침해 사례

결론2

결론 및 제언

01

노동시장 이행 성과 확인 불가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종사상 지위, 임금, 노동조합 관계 미확인
현장실습 비참여자가 대규모 사업체로 진입할 확률 높음
이상은 선행연구(김기현 외(2006), 황여정 외(2018))와 일치
현장실습이 참여자에게 불리한 선택 유도하는 기제였을 가능성

청소년 취업지원 제도의 효과 예상

현장실습보다 학교취업지원센터 지원여부가 유의미한 변인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 뒤도 실습보다 취업지원제도 주목해야
고교졸업직후 노동시장 이행성과 평가의 한계 고려해야
기간 경과 후 차이 상쇄되거나 고등교육 이수자와의 차이 발생

특성화고 대상 통계의 부족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운영 현황 미공개 확인
실습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부재
근거보다 신념에 의해 유지되어 온 현장실습 제도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이 원인일 것

제언

결론 및 제언

03

01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02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

03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기본권 확대

제언

결론 및 제언

04

모든 학생에게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기초학력보장법」과 시행령에 특성화고 기초학력 보장 명시
- 특성화고 보통교과 수업 확대
- 일반계고와 수업시간 차이 해소
- 발달단계 고려한 학년별 교과편성
- 직업기초능력평가 폐지

직업교육 과정 정상화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교육 정의, 국가교육과정 수립
- 직업교육의 목적을 '산업사회 인력 양성'에서 '전인적 미래시민 교육'으로 전환
- 정책발표 및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사용 금지(중기부 등)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과 조기취업 중단

- 전문교과 현장실습 대체 허용 지침 폐기
- 고등학교 3학년 보통교과, 전문교과 정상 운영
- 교사, 교실, 교재, 평가 갖춘 학습적 실습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
- 취업시키는 졸업 이후로 정상화

I.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제언

결론 및 제언

05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

- 계약, 노동형태와 관계없이 경제적, 조직적 관계 아래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
- 아동, 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섬세한 규정 마련
- 예)독일연소자노동보호법 : 종량물 작업, 유해위험 노동, 도급, 성과급 금지

사업체 노동, 안전기준 강화 및 정보공개

-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 노동 사업체에 고용노동부의 일률적, 정기적 '감독' 시행
- 사업체 점검 기준의 정량화 및 점검 결과, 근거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학교 노동권리교육 강화

- ILO에 따르면 노동교육 목표는 민주적 가치체계 수립, 사회적 의식 고양, 노동조합 지식 기술제공
- 노동교육은 보편교육의 일환으로 비편향적 시민교육으로 접근
- ILO권고 따라 집단적권리 교육 포함
- 참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기본권 필수 교과 과정 포함 권고(2010)

II.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

제언

결론 및 제언
06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지원

- 청소년 노동 사업체 감독 강화
- 관련 법령(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청소년 보고하기 위한 신고 의무 확대
- 책임성과 권한 강화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권리구제 기관의 정부 직접 운영 검토

ILO협약에 따른 조치 이행

- ILO 제138호, 제182호 협약에 따라 실습제도를 포함한 아동노동 현황 및 기준 관련 노동단체 협의 진행
- ILO 제182호에 따른 규정의 이행 감독할 적절한 수단 마련하거나 지정

II.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

제언

결론 및 제언
07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운영

-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최초 경험은 생애 전주기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고
- 고용노동부를 주무 부처로 한 전국 단위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기구 운영 및 전담부서 설치
- 전국 단위 취업지원제도 운영 통해 조기 취업 중단하고 취업 경쟁 예방

특성화고 학생 통계 생산

- 특성화고 정책 수립에 앞서 특성화고 학생 대상 신뢰성 갖춘 통계 생산
- 특성화고 학생의 삶과 학습, 진로 등 다양한 면모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운영
- 학력 통계 대상에 특성화고 학생 포함

청소년·청년 정책에 특성화고 특성 반영

- 대학 진학 청소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학 비진학 특성화고 졸업생의 현안 담아야

교육정책에서 청소년 알권리, 참여할 권리 보장

- 직업교육 정책 논의에 학생, 노동조합, 지역사회 참여 보장
-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기초 토대로서 관련 정책 시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III.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 기본권 확대

고맙습니다

토 론 문

임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완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토론문



임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 연구가 교육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인문주의, 비판적 직업주의 관점을 채택한 점을 지지한다. 오랜 동안 고교 직업교육에서 현장실습이라는 제도가 온존하는 가운데,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이슈화될 때에만 제도를 수습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 학생 사고 이후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제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참여기업과 실습기간에 관한 기준을 느슨하게 재조정했고, 또 다시 현장실습생의 사망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현장실습 제도에 관하여 보다 근원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야기하는 이 제도가 여전히 수 십 년간 유지되는 이유를 명료히 하는 것에서 토론을 출발하고자 한다.

1.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

가. 정부와 학교의 명분과 실리간의 괴리

현장 실습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혹은 충돌한다는 언급을 선행 연구에서 말하고 있다. 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보다는 일정하게 일치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가 학생들에게는 조기취업, 기업에는 쉬운 인력 채용, 학교에서는 취업률이 높은 학교라는 이미지 제고, 정부 관계자에게는 취업률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각 주체가 취업의 성격을 지닌 현장 실습제도 안에서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의 정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실습 실시의 주 목적이 “일 경험 제공”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명분과 숨겨진 목적 간에 괴리가 있다. 현장실습에 관련된 주체들 중에서 기업은 적어도 명분을 크게 내걸지 않고, 이윤추구가 주목적이다. 기업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라거나 그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이다. 독일과 달리 산업별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의미 없는 요구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교육에서 출발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명분과 실리 사이의 괴리가 있는 곳은 오히려 정부와 학교이다.

정부의 경우,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당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의 업무 성과 평가이며, 이는 대부분 양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진심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노동권 보다는 자신들이 재임할 기간 동안에 유지해야할 취업률이다. 여기에는 얼마간 정책 담당자들이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과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고교 직업교육의 목표를 기능인력 양성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만 단순히 정책을 밀고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들은 대체로 1-2년 주기로 변경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이해나 소명감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 위주로 정책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특성화고등학교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정책을 마음대로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향이 직업교육 정책 역사에 자주 있었다. 학생들의 “일 체험” 등의 명분을 내걸지만 실제로 정부 관련자가 챙기는 것은 취업률일 가능성이 높다.

학교 역시 취업률을 크게 신경 쓴다. 공식적인 학교 평가에서 취업률은 빠졌지만, 여전히 학교 평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학교의 명성이 달려있고, 학생모집에서 학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취업률이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취업률을 도외시하고 교육적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과장광고를 무릅쓰고 학생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대외적인 지표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하고, 국공립이라도 학교 관리자가 외적 실적을 중시할 경

우, 비슷한 양태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양질의 일자리를 고수하기 힘들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취업처로 포함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원할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나. 학생들이 미처 모르는 사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학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졸업 후에 자신이 혼자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에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있으므로 졸업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지만 이미 마이스터고등학교와 도제반에서 전공을 살리는 일자리를 선점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졸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한 소수의 학생들이 차지한다. 그 외의 많은 학생들은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조기취업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가 3학년 2학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남아 있어봤자 친구들과하고 노는 것 외에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것도 학생들이 조기취업을 원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학교가 취업을 전면에 내걸면서 학교의 역량이 취업을 위한 단순한 수준의 자격증 준비 과정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도외시된다. 보통교과 만이 아니라 전문교과 마저도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성이 차단되는 것, 이를 당연시하고 편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은 모른다. 사실 아이들이 이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착시에 불과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서 박탈된 학습 기회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모른다. 선부른 첫 직장 선택이 그의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그의 인생에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주변에는 이를 알고 조언해 줄 어른들이나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이 주로 의지하는 것이 학교인데, 학교는 다른 속내와 기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 속에서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적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최선인가?에 관하여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서도 의견이 갈린다.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현 상태를 인정하고 이에 맞춰 진로를 설정해서 보내주는 것이 사회나 학생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단순 명료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은 일반 대중(정책 담당자 포함)에게 쉽게 설득력을 가진다. 이 관점을 가진 경우, 그들은 자기 자녀 혹은 친지를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신과 분리하여 대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다른 입장은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누적된 학습면에서의 결핍이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고, 성인이 되기 전에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완해주어 아이들의 미래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직업교육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능습득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소양, 최소한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 것이다. 이 연구가 후자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 중에서 학생 편에 확고히 섰다는 점을 지지한다.

2.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일터에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생활을 이끌어나가고 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직업교육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하면서, 동의하는 이유와 추가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1) 기초학습 역량을 강조할 필요성

특성화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학습역량을 갖추고 졸업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본 연구의 관점을 지지한다. 학생들이 고등

학교 재학 중에 도달해야할 기초학력의 기준을 정해 놓고, 이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어차피 학력이 미흡한 상태로 특성화고에 왔으니 고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가능한 빨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제 학교는 사회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사회로부터 체계적인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재학 중에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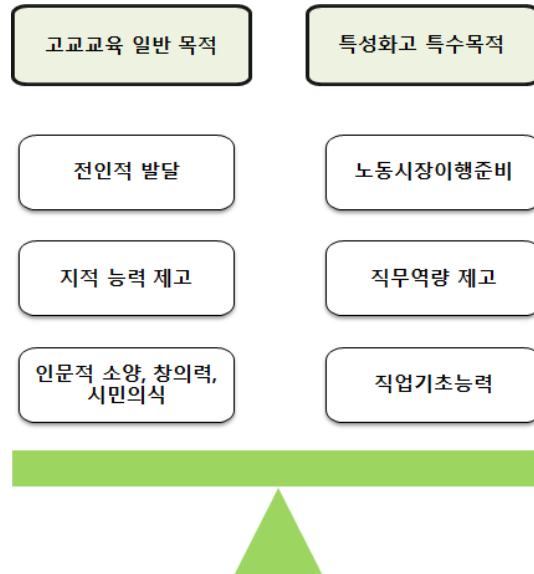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기초학력 달성 여부를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는다. 국제학업성취도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높다. 또한 학생들의 주당 수학 수업시간이 일반계는 일본, 호주, 한국, 독일 순이었으나 직업계는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적은 시간을 수학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계와 일반계 간 학업 성적 차이, 수업 시간 차이가 가장 크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또한 비교 국가들 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에서 직업교육 트랙에 들어선 학생들의 열악함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직업교육과정의 정상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직업교육과정의 정상화의 의미는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연마하여 취업하게 한다는 협소한 의미의 직업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이 확대된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비판적인 시민, 평생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깊이와 폭을 넓힌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기반한 학교교육의 목적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된 직업교육에만 특화된 목적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업교육에 특화된 목적만이 강조되면서 고교 단계 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목적이 간과되고 있다.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이 기능 인력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고교 교육과정 속에 명시된 목표인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학습자, 비판적 시민의식을

가진 교양인, 속의 민주주의의 참여자를 교육시킨다는 목적도 있음이 균형 있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림] 고교 직업교육에서 교육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간의 균형



출처: 임연(2019: 36).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와 일자리 변화에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평생학습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키려면 학생들의 잠재력 강화에 지금보다는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직업계 고교 학생들이 단순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 급변하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생학습자로서의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직업계고교에서도 기초학력의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학교 교육의 책무성에 포함된다.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직업계 고교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고교 직업교육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포괄적으로 설정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세부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동의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4.65),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대처 능력 향

상'(4.56), '범용성 있는 기술(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폭넓은 기술) 습득'(4.40)과 같이 폭넓은 직업교육의 지표들을 중요시했다. '세분화된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기술 습득'(4.12)과 '졸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 연마'(4.2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교사들이 직업교육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020, 임언 외). 그러나 현재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현 정부 내에서 더욱더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경계와 방향 전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3)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과 조기취업의 중단

본 연구에서는 취업의 형태를 띠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 제도의 전면 철폐가 아니라 첫 일자리가 한 개인의 경력 개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조기 취업일 경우, 이를 학습으로 포장하기 보다는 이에 상응하는 조기 졸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형 현장실습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교육 현장을 혼선에 빠뜨리고 교육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기 취업이면, 조기 졸업의 형태로 명료하게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조기취업의 경우 기업의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과 함께 학생도 졸업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하였고, 전공 관련 자격증을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업체를 통한 학습 및 안정적 취업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취업 및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단순하고 열악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투입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인건비를 지급해주면서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그 예산을 학생들이 졸업 후 경쟁력을 갖도록 학교에서 주관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교육적 수혜의 형평성 보장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도 직업계고

안에서의 현장실습 관련 학교 유형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즉 마이스터고와 여타 일반 직업계고 사이에, 그리고 도제반에 포함된 학생과 비도제반 학생들 간에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에 체계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단 일자리 만이 아니라 교육 여건에 차이가 명백하다. 2017년 기준,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783만원인데 반하여 특성화고등학교는 577만원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36%p 더 높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특성화고는 10.7명인데 반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6.9명으로 훨씬 적어서 기본적인 교육 여건에 차이가 있다¹⁾. 이는 기본 예산에 한정되며, 다수의 부처가 지원하는 사업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이 격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격차 또한 상당한 현실이다.

일반 특성화고 내에서도 도제반과 비도제반이 있는데 도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고가의 장비와 쾌적한 공간을 비도제반 학생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고, 기금의 운영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그러하다. 도제반과 비도제반에 투입되는 교원 인력 또한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급당 학생 수도 크게 차이가 나고, 도제반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까지 비도제반으로 들어가면서 도제반의 수업 분위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비도제반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주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직업계 고교 내에서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예산투입의 형평성을 넘어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나.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

현행 법 상으로 도제학생은 학습근로자라는 형태로 근로자성을 보호하는데 반하여 현장실습생은 그렇지 못하며, 여타 청소년 역시 열악한 근로 여건에 처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보다 원론적이며 일반적인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에 동의한다. 경로와 무관하게 근로가 일어나는 곳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연령에 따른(그들이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1) 출처: 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채창균, 임언 외, 2018)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일의 연소자 노동법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독일 일학습 병행 모델을 끌어오면서도 그 근간을 이루는 법 제도 보완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시각을 널리 공유하여 청소년의 노동 관련하여 누더기 식의 법이 아니라 일관되며 포괄적인 법 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노동권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체의 노동 및 안전 기준 강화와 정보공개, 학교에서 노동권리 교육 강화, 사업장에서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절차 지원, 노동단체와의 협의 필요성도 동의한다.

다.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 기본권 확대

(1)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제도가 운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주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취업지원제도가 현재 존재하는 고용지원센터와 별개인 것인지 모호하다.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토론자는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지도로서 진학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고, 취업한 학생이라도 졸업후 후진학을 목표로 하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 취업이 강조되는 곳에서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졸 취업 재직자들이 후진학을 하고 싶은데, 누구랑 의논해야할지 모르겠다는 토로도 있었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서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직업계고 학생들이 알고하는 진로선택을 위한 법 제정

본 토론에서는 특성화고가 중학교 및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대 홍보에 대한 법적 제제 기준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진학할 때 특성화고에서 중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홍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괜찮은 기업에 취업한 선배와의 만남 기회 제공, 높은 취업률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공부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꿈을 안겨준다. 이러한 홍보에 기대서 아이들은 용기 있는 결정을 하게된다. 이런 홍보에 솔깃한 아이들은 집안이 그리 어렵지 않아도 집안을 생각하여 일찍 독립하려는 속 깊은 아이, 학습에 성공 경험이 적어서 계속되는 학업 경쟁이 힘들어서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은 용기 있는 아이, 그런데 이를 말리고 설득할만한 가족이 없는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한시라도 돈을 벌고 싶은 아이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의 선택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학력별 임금 격차가 냉혹하게 존재한다는 점, 직업계고 내에서도 좋은 일자리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무도 이 학생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학교의 과장된 홍보가 어린 학생들의 판단력을 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장된 홍보를 금지하는 법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법이 좋은 예시가 된다. 의료법에는 환자를 미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홍보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조건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²⁾하고 있다. 이를 특성화고등학교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특수한 학생(중학교 때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학생)이 성공한 사례를 크게 부각시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제시하는 것.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도 많으나, 이를 감추고 입사한 학생 수만을 강조하는 것, 소수 선배의 극단적 성공담을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것,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률만을 부각하는 것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어린 학생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연구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예컨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토론문



오완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

사고 발생, 제도 강화, 제도 완화, 사고 발생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실습입니다. 2017년 11월 19일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제주故 이민호 님과 2021년 10월 6일 전남 여수의 웅천 요트선착장에서 사망한故 홍정운 님의 추모하고 제자들을 기억하며 오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교육부가 보수적인 입장에 맞게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총론 시안에 있었던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 다시 반영하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1)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교육부, 2022) 가 있어 교육부에 ‘일의 가치’를 ‘일과 노동의 가치’로 수정 요청하였으나 교육부 담당자 답변은 ‘일의 가치’에서 ‘일’이 ‘노동’보다 큰 의미이고 노동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토론회에서도 담당 부서에 재제안하였으나 결국 행정예고 안에 총론 및 급별 교육목표에 노동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교육을 불온시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사회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에서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언제까지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업주(기업경영자)의 자유만을 강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노동 중시의 방법으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 혹은 노동인권교육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직업계고에서 파견형 현장실습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하며, 대신 학교 내·외 산업체 관련 다양한 방법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여 3학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는 의미로 제안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이에 직업계고의 경우 ‘성공적인 직업생활’ 1개 교과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디지털과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3개 교과가 전문공통 교과로 되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에 보면 ‘학교는 모든 교과(군)에서 요구되는 전문공통과목을 학교 여건과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에 대하여 공통과목임에도 불구하고 1과목 이상 필수 이수에 대한 편성 기준이 없다. 2015 교육과정에서도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었던 것을 보면서 과목을 3과목으로 확대되었지만, 학교 현장은 2~4단위의 이수 단위로 1과목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존의 교과목이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계속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새로 도입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의 필요성을 학교 및 교사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선택이 타 교과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 및 교육부에서 초·중·고 정보교육과 대학 반도체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직업계고는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함께 디지털과 직업생활을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공통과목 중 현장실습과 연계성이 높은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목에 대해 현재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어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집필진이 달라 교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과 체계의 흐름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교과 내 두 교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술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집필진 상호 간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50년이 되어가는 현장실습은 보통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어 있다.

〈표 1-1〉 교육과정 고시에서의 현장실습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2015.12.)〉	〈2022 개정교육과정은 행정고시 내용임(2022.11)〉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바)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계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추가된 내용),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보면 3월부터 25주 이상 현장실습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근거로 교육과정 총론(위 표1-1)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에 존재하면 3월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실습 매뉴얼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면 3개월 이상이 가능하다고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있었다. 그럼 3개월 제한에 대해 계속 언급해온 교육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인정과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름이 있다.

2022년 현장실습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만든 중앙단위 지침에 의한 매뉴얼의 성격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하여 만든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하였고, 산업체 채용약정형을 산업체 채용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개월 이상 운영가능하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을 3개월로 제한하였으나, 아직도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할 경우 연장 가능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채용 전환 기준 명확화하여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4주간 참여 시 채용 전환이 가능하며, 선도·참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 실시하여 안전을 강화하였고, 현장실사는 노무사 외 산업안전전문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로 확대 변경하였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수당을 최저임금의 70%에서 40%로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 현장실습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확대하였는가에 대해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포함시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2024년까지는 선도기업은 유지할 수 있으나 2025년 이후에는 모든 기업은 예외 없이 시·도교육청 승인을 거쳐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및 기업 책임자 각각 1명씩 지정하여 현장실습내실화를 추구한 것은 진척된 내용이다. 특별교육으로 하이파이브 온라인 교육, 노무사 방문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셋 중 1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폭을 확대해 주었다. 현장 실습생에 대해 단체톡 등 SNS와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현장실습은 1949년 교육법, 파견형 실습 시행 근거는 1963년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 1973년에는 직업계고(舊 실업고) 학생들이 재학 중 기간산업체에서 일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다. 이것이 현장실습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오늘날까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현장실습으로 되어 버렸다. 2021년 12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2021) 발표 후 현장실습의 변화는 그동안 ‘산업체 채용약정형’으로 불리던 현장실습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변경하고,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도입이었다. 연구자 자료를 보면 직업계고는 2016년 593개교에서 2020년 578개교로 15개교가 감소하였고, 직업계고에 재학한 3학년 학생수도 20%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2022)

통계에 의하면 졸업자 대비해서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15%가 넘게 높게 나왔다. 이것은 미취업자 및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해도 직업계고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 아직도 현장실습생(취업희망자)이 50%가 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30%가 넘지 못하는 실이다. 또한 취업 유지율은 분석하면 1년이 지난 시기에는 64.3%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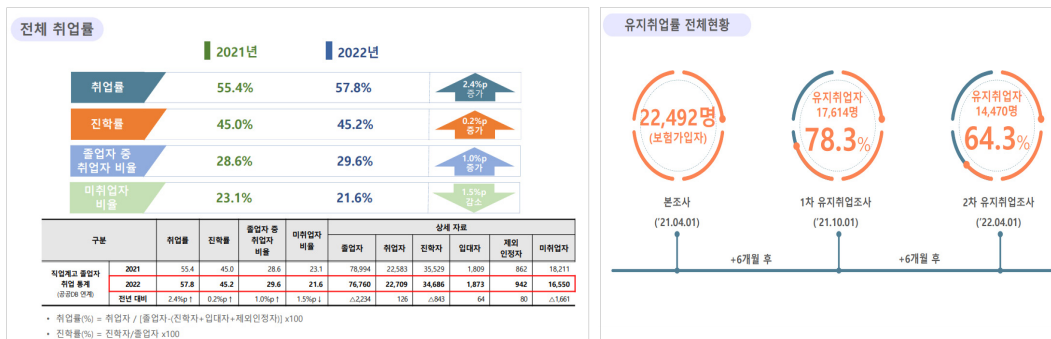


그림 1-1.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2022)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사업체의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56.9%였고, 10인 이하 사업장도 22.3%를 차지했다. 이 중 도중에 복귀한 실습생이 4명 중 1명이고, 복귀이유로 신체적·심리적·정신적 부적응을 중도 복귀 이유로 꼽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해 보통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이 항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연구자의 결과 분석을 통해 제시한 시사점에서 1)직업계고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과 2)현장실습 제도가 학습권을 침해하고,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을 보면, 1)현재처럼 현장실습 시행, 2)안전을 담보하고 최저임금에 이상의 임금 지급 현장실습, 3)기간을 4주 이내로 제한하는 형태의 현장실습, 4)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중에 1)현 현장실습보다 안전을 담보하고 기간을 축소(수업일수 2/3이수 이후)하는 현

장실습과 2)현장실습 자체를 취업 준비단계의 체험, 견학, 면접, 실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취업은 졸업과 함께 진행하는 제도 전환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장실습은 계속 논의 될 것이며, 현장실습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현장실습이 존재하므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 1) 전공 적합성이 높은 산업체 현장실습 발굴 및 실습 실시
- 2) 노동 인권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 3) 산업체 실습 현장 관리 체계화
- 4) 직업계고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0년 넘는 과제를 등에 지고 아직도 가고 있는 직업계고 교육 구성원들의 과제의 짐을 언제 내려놓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장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것은 의미 있는 접근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연구는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 건강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토론문에서는 추후 연구를 마무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간략히 제시하고, 사소하지만 보고서 수정에 참고하실만한 의견도 덧붙여보고자 한다.

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관련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현재 특성화고는 무척 불분명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현실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의미한다(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¹⁾, 2022.11.21. 인출). 요컨대

특성화고는 그간 ‘취업 지원’이 주요 기능이자 목표였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설령 성적에 맞춰 수동적으로 진학했다 하더라도) 특성화고 교육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것을 기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는 취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한 실적을 보여주지만 특성화고는 그렇지 못했고, 대학 진학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실습은 취업성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태시켜왔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그간 특성화고 교육이 “평생학습자로서 기초역량을 기르는 인문적 보통교육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고, 국제기준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의 권리로 보장되는 학습권을 침해”해왔음을 지적한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이 연구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현실화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덧붙이고자 한다.

1)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아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들 법령에서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교육을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국가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실습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아니라 상기한 법령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 전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맥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중단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장실습 중단 학생들은 중단 이후 제대로 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단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장실습 중단의 원인이 늘

1)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go.kr/job/index.jbe?menuCd=DOM_000001502000000000 에서 2022.11.21. 인출.

업체 측의 귀책 사유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실습생의 무단결근이나 이탈 등의 원인도 존재하는 바, 현장실습 중도 복귀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 1차적으로는 중단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원인에 따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황여정·김승경, 2018).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대상자의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를 다룬 황여정·김승경(2018)의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추진의 문제로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보호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 년 간 유지되었던 제도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신뢰했던 학생들에게 급격한 정책 변화가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황여정·김승경, 2018).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 관련

다음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안전권이 보장되는 일경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안전 관련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실습을 비롯해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도 필요하다. 실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등의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성화고 학생, 나아가 청소년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대규모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참여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실습업체 등 청소년 고용 사업체의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2. 보고서 내용 관련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보고서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의 마무리 과정에서 아래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표면적인 이슈까지 방대한 문제를 다루다보니,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성화고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적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연구의 초점이 다소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47쪽 ‘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II 분석’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학교교육만족도, 교사의 지지,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일반 계층이 응답값이 가장 낮은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불만과 문제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지어 논의하거나, 논거로 활용하기에는 관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 이러한 내용들이 더러 눈에 띄는 바, 2차 자료 분석 내용 중에서 연구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용은 조금 줄이고, 추후 보완 계획을 갖고 계신 면담내용을 충분히 보강하신다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연구주제도 더 명료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 13쪽 ‘〈표 II-2〉 작업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은 누락되어 있는데, 자료의 일관성 및 완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내용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8쪽 표에 2017~2021년까지의 관련 정책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해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3. OECD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에서 46쪽 ‘3) 교육시간 비교’ 내용을 보면, 읽기, 과학, 수학 교과에서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학습시간 등을 비교하고 있다.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설립취지와 교육목적, 그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양상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시를 위해 교과교육에 전념해 온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입시교과’인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해 비교를 하면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소 어색한 비교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는 읽기, 수학, 과학과 같은 입시교과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교과목에 대해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교육시간을 비교한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소한 사항이지만, 분석결과에서 절대 인원수로 제시된 결과는 비율로 제시하는 편이 가독성도 높이고,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56쪽 ‘〈표 IV-17〉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3차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패널 참여 현황’
- 60쪽 ‘〈표 IV-23〉 특성화고 패널 3차년도 졸업 후 진로’ 등

어려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시고,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좋은 자료를 작성해주신 연구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황여정·김승경(2018).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go.kr/job/index.jbe?menuCd=DOM_000001502000000
000 에서 2022.11.21. 인출.

토론문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6

아동 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발제 1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년 아동인권보고대회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은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성과

일반 이행조치

-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아동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 아동 예산과 인력 확충
- 지역간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 취약계층 아동 예산 할당
- 아동청소년 의회와 참여예산제 도입
-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시스템 구축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아동중심 공적 보호, 돌봄체계 구축: 시군구전담 인력 배치로 진입, 퇴소, 사후관리 통합관리
-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자립 준비청년 지원 강화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마련: 아동 기본법 제정 연구 용역 실시
- 참여, 권리 보장에 기반한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참여활성화를 위해 아동총회 개최, 아동권리 보장원 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

2021 추진성과

❖ <방송통신위원회>

- 아동참여, 의견표명권 보장 등 생활 속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 가이드라인 마련
-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 환경조성 : 디지털 윤리교육 추진

❖ <경찰청>

- 부처 간 정보연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와 연계 협력 강화: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 차별금지법 제정
-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 아동자살예방 개입
- 사법적 절차에서 아동견해 반영
- 아동영향평가제도 확장
- 학교내 아동의견표명기회 보장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 <법무부>

- 가사소송 시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과 진술 기회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원 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2021 추진성과

❖ <교육부>

- 정책 결정 시 아동 참여 제도화
-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민주적 의사결정(학생 자치)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실천하는 민주학교 운영 지원('20. 217교 -> '21. 278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화, '제 17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결과로 정책과제 제안 및 온라인시스템으로 정책 참여 접근성 개선

2021 추진성과

❖ <교육부>

- 학교-지역사회간 마음건강 지원체계간 연계 활성화: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증원
- 학생-교사대상 마음건강 교육강화: 고등학생용 교육자료 2종 개발 및 교직원 연수

❖ <보건복지부>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

- 공공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민적 권리 자유

- 온라인으로 보편적 출생신고
- 미혼부 자녀등록 절차 간소화
- 미등록 출생아동 모니터링 체계 수립
- 베이비박스 금지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구축(출생정보 추출 후,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을 통해 대법원으로 전송)

아동폭력

- 아동학대 국가 DB 구축
- 아동학대 대응방안 수립
- 아동학대 명시적 금지
-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인프라와 인력 확대
- 지역격차 해소 방안
- **온라인 성매매와 성학대 대응강화**
-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 대응, 사후관리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굴, 조사 공공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사후관리 및 회복지원, 처벌 강화, 인프라 확충
-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 지역사회 단위의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신고제도 내실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 배포

2021 추진성과

❖ <법무부>

- 신고제도 내실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추가 및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마련
- '징계권'삭제와 체벌금지 법제화: 『민법』 915조 삭제

2021 추진성과

❖ <여성가족부>

- 아동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 ' 온라인 그루밍 ' 으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해 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고 개선 및 예방교육 확대

❖ <법무부>

- 현장 종사자의 아동학대 현장 대응역량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합동교육

가정환경, 대안양육

- 돌봄서비스 유연성 제고
- **부의 육아휴직 이용 촉진**
- 한부모 아동 지원 확대
- 가정외보호 아동 보호 강화
- 입양 절차 개선과 사후관리 확대
-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돌봄강화를 위해 공공보육이용률 35.3% 달성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보호, 돌봄 체계 확충
- 아동중심 공적 보호, 돌봄체계 구축: 공공 아동보호체계 시군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보호체계 진입, 퇴소, 사후관리 통합 강화, 전담인력 확충,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공적 결정, 보호아동의 양육상황 주기적 점검
- 공적입양체계 구축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입양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개시

2021 추진성과

❖ <교육부>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21년부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추진

❖ <여성가족부>

- 돌봄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강화,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청소년한부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주거 지원 강화

장애보건복지

-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 취약계층 아동 건강과 보건 서비스 확대
- 청소년 건강권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 **학교 성교육, 임신 청소년 대책**
- 스마트폰 과도사용 대책
- **국적에 상관없이 아동수당 보장**
- **아동 주거빈곤, 아동빈곤 조사**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아동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아동 의료접근성 강화('아동치과 주치의', 중증 소아청소년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진행,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신규 설립 등) 및 신체활동 강화
- 흡연 예방 캠페인 강화, 어린이집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 예방 교육 강화

2021 추진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폰, 인터넷 등 바른 사용 역량 강화: 예방교육, 전문상담,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미디어 활용능력 함양: 청소년대상 미디어교육

교육여가문화

- 공교육 정상화
- **모든 아동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개정**
- 학업중단아동 실태파악
- 학업성적 차별 해소
- 사이버괴롭힘 근절 노력,
- 여가놀이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여가와 놀이에 대한 시간과 공간 보장

2021 추진성과

❖ <교육부>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추진
-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
- 창의 활동 중심의 학교 공간 개선 및 시간 확보
- 부모, 교사 등 놀이지원지 인식 및 역량 강화
- 아동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지원 강화: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 공통운영지침 개정
- 교육급여 지원사업 개편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놀이여건 확충, '놀이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영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윤리교육 추진

2021 추진성과

❖ <문화체육관광부>

- 아동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독서 습관형성 지원
-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관광프로그램 지원 확대
- 게임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특별보호조치

- 난민아동, 이주아동 인권보호: 출생등록, 보육, 교육,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 소년사법운영 개선: 아동사법전문법원 설립, 형사책임 최저 연령 '14세'유지, 우범 소년에 대한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 다이버전제도 법적 근거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021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 아동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지원

❖ <교육부>

-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 추진: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확대,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운영

2021 추진성과

❖ <법무부>

-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참석, 우범소년 대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교육 실시

2022년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개정 추진'

EU 아동권리 전략 과제

- **녹색 전환: 아동 보호와 변화의 주체로서 권한 부여-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 ✓ 1억 6천만 명의 아동들이 가뭄이 심한 지역에 거주
 - ✓ 5억 명의 아동들이 높은 홍수 지역에 거주
 - ✓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약 90%가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영향
 - ✓ 환경 위험은 아동 사망 요인의 ¼ 차지
 - ✓ 20억명이 넘는 아동들이 국제 오염 기준의 한계 초과 지역에 거주

EU 아동권리 전략 과제

- **디지털 전환: 온라인 아동 권리보호-아동을 위한 디지털 혁명의 기회와 도전**
 -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아동 참여 -> 부적절하고 유해하며 폭력적인 온라인 약탈자에 노출될 위험 증가
 - ✓ 온라인 폭력과 괴롭힘, 아동 성적 학대 자료 공유, 성적 학대와 착취 그루밍, 사이버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
 - ✓ 윤리적인 비즈니스 표준과 이행기준 개발

EU 아동권리 전략 과제

- 정신 건강: 아동의 회복력을 재정의-회복력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좋은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

- ✓ 18세 미만의 정신장애 30년 동안 증가
- ✓ WHO 15~19세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정신건강이 세 번째 주요 요인

EU 아동권리 전략 과제

- 망명 및 이주아동: **이주아동 보호**-아동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과 이민 관리

2023년 아동인권 증진 과제

1. 아동자살예방을 포함한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강화

2. 미등록 (이주) 출생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편화, 간소화, 모니터링 체계 수립

3. 베이비 박스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

4. 온라인 성매매와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강화

5.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6.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강화**

7. **학교 성교육** 현실화와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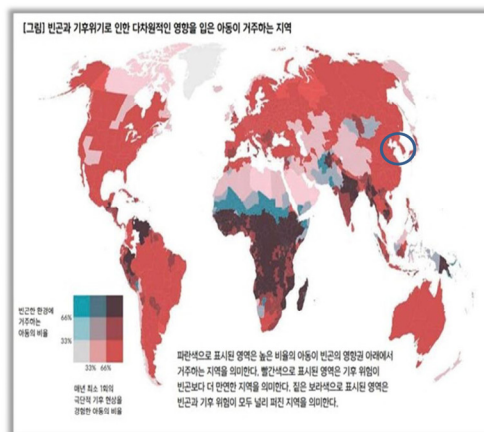
8.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이주아동에 대한 경제지원 향상

9. **아동 주거빈곤**과 **아동빈곤** 실태 파악

10. '모든 아동'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11. **우범소년의 인권** 강화 촉구: 아동사업전문법원
설립, 소년법 조항 폐지, 다이버전제도 근거 마련

기후위기(재앙)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 조사



출처: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감 사 합 니 다



발제 2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1. 아동·청소년 인권상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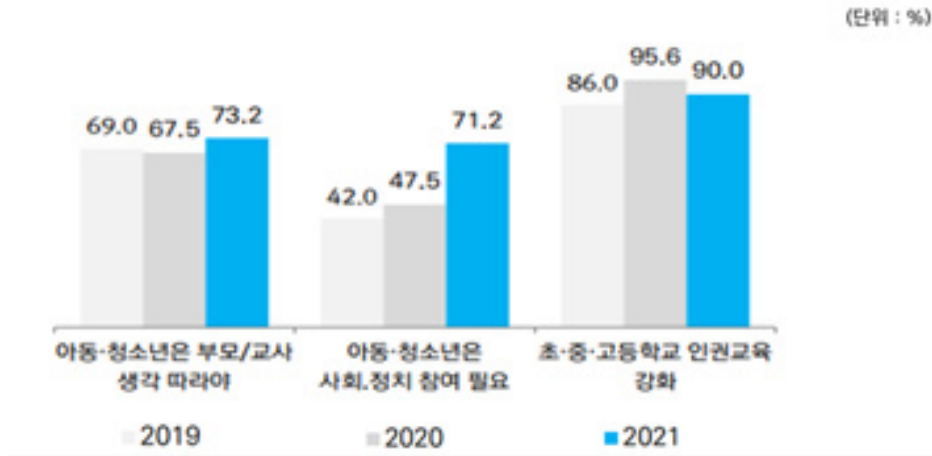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로 이 시기의 생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성인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조망된다. 현재 상황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성장과 발달의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인권 논의 속에는 보호와 자율이라는 상반된 축이 나타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주요 인권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과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나 성인에게 ‘지도’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온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부모와 학교, 사회로부터 침해당할 여지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부모와 교사의 생각을 따라야’(73.2%)한다는 의견이 전년도(67.5%)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에서 발췌

[그래프]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다만 최근 ‘인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 인권 관심도와 보호 노력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적으로는 2021년 1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63년 만에 폐지되었다. 12월에는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변화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계속되는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와 새로운 과제는 한국 사회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당 기간 원격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학습 격차 문제, 사회성 등 발달 문제, 아동·청소년의 돌봄 문제는 향후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향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아동인권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 하기 위해, 2022년의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권고한 주요결정례 및 사업, 2023년 계획된 업무²⁾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현재 검토과정에 있으며 12월경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임.

2.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요결정례

- **(노동인권 증진)** 청소년이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강화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등을 보장하도록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3월)
 -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9월)
 -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6~12월)를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모색
- **(학생인권 증진)** 최근 교권강화, 학생다움 강요 등을 이유로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일제고사, 0교시 부활 등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학생인권 증진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일정 조치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이 영구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과도한 불이익 우려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출(4월)
 - 스마트폰 보급 이후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위상이 변화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8월)
 -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 **(학대피해 아동 보호)** 각종 아동학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 등 피해자 구제, 메타버스를 매개로 한 성착취 범

죄 대응 등의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2021. 3.부터 아동학대현장 등에서 아동의 즉각분리가 강화됨에 따라 아동 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5~12월)
-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계가 우수한 일본 사례를 현지 조사(11월)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모색 : 세타가야구 아동상담소, 카리온아동센터 등 5개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공 민간 협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아동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확인

○ **(아동사법제도)** 법무부 정책 및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 하는 내용의 법들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표명 (10월)

○ **(취약계층 아동인권 보호)**

-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평등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진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4월)
- 2021. 7.경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및 경찰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로 2차 피해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등 권고(6월)
- 해외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의 부재 속에서 아동의 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음. 이에 해외 입양제도와 당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6~11월) 실시, 국가의 아동 인권보장 책임의 확인 및 해외입양인의 인권보장 방안 모색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아동인권 보장)** 코로나 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식생활, 학습격차, 돌봄, 의견수렴,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인권에 기반한 대응 계획 수립과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기타)**

- 미성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숙박시설 이용을 금지한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3월), 지방자치단체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등산 완등 인증행사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3월)
-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의견 표명(3월), 학교교칙에 의해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9월)

3. 2023년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요업무계획

- **(학대피해 아동인권)**

- 위원회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2021)’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리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위원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구(2020)’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해설을 담은 안내서를 실무현장에 배포함으로써,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지도 개선을 통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감소 등에 기여

- 위원회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입양시스템의 법제의 취약성, 해외입양인과 그 원가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방문조사)**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 재화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위원회는 2018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포함)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2019. 6. 26.)를 한 바가 있으나, 최근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소년범의 처우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여부 등 검토

○ **(아동인권모니터링)** 아동인권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 인권 현안의 대응과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동의 인권 증진 도모

- 아동인권 관련 정책전문가, 현장전문가 및 종사자, 아동 당사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인권 실태 및 협약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

○ **(학생인권)**

- 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2022)’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분석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인권이 증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최근 학교 내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학생인권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업 등의 학교생활 환경의 변화, 만 18세부터 피선거권 및 선거권 부여,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

의 일반화 등은 학생인권 보장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현재 학교마다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교규칙의 내용 및 기준이 다른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과 변화하는 학교 내 환경이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규칙에 반영되어 학생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및 운영 전반,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취약 아동 인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탈시설화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및 주거권 보장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이 필수적이며, 2024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7차 정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및 주거권 보장 정책 수립방안 마련 필요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적으로 12개(436명, 2020년 기준) 시설이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대상은 법원위탁, 보호자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서적으로 보호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며, 가정과 같은 보호적인 요소와 정서 심리적인 치료적인 요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전한 아동·청소년으로 재사회화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만 아동보호 치료시설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대상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와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차 정부보고서를 2024. 12. 19.까지 제출할 예정임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 모색

토 론 문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아동권리옹호실 실장)



토론문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국대 이은주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혹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를 20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성과평가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보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선생님의 발표문,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발표문도 잘 읽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연구를 기반으로 어떠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 발표의 내용에 추가 의견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두서없지만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동 인권 상황은 긴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중심에서 아동의견표명이라는 이름이든, 아동청문이라는 이름이든 참여권이 아동 관련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표1>)를 보면, 대체로 가정, 학교, 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 자신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느끼는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하나로 2024년 목표치가 80.0%임을 감안하면, 2020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표 1〉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비율 합산)(%)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2019	95.6	91.5	77.1	81.1
2020	96.3	95.6	83.7	82.3
2021	96.6	95.2	82.4	81.7

그러나 아동 인권을 이야기할 때면, 가정에서는 친권, 학교에서는 교권,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는 종사자 인권 등을 대립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아동 인권 존중(보장, 증진)을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권리 對 친권자의 권리보다 학생 인권 對 교권 논쟁이 더 첨예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황옥경 외, 2015)했음에도 말입니다.

친권을 자녀를 보호 양육할 부모의 역할, 의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듯,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교권은 학생이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 직무,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교사의 직무수행 및 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업무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직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교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학생 인권 축소(제한)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나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교육의 역할(기능)을 다시금 살펴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는 틀 안에서 학생은 아동 청소년은 인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교육의 목표를 다시금 되짚어볼 때입니다.

제29조. 교육의 목표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또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황옥경 외, 2015)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보건, 성교육, 정치, 예산, 시민권, 사회적 관계와 같은 less academic 주제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작금의 사정을 보면, 아동 인권은 어른이 허용하는 인권, 어른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인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른이 정한 선을 넘어서는 것은 어른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순하며 때로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적 권리 영역에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도,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앙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해져서는 안된다.

그동안 아동권리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면(국가의 적극적 역할)에서 사회권적 권리를 더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자유권적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어른들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이를 봐도 어른이 정한 아동 인권의 범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동은 성장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 국가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진화하는 능력, evolving capacity)를 고려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아동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아동의 연령, 정신적 성숙도, evolving capacity를 고려하여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인권의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를 성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어른의 시선에서 정하지는 않았는지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인식한다면, 인권을 알고 존중하는 책임있는 시민으로 아동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어리다는 이유로(다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로 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동 최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아동 인권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동 인권에 대해 반감을 갖는 어른, 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동 인권이 어른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점점 심해지는 차별, 혐오, 폭력을 보면서 우리 아동 청소년이 배울까 두렵습니다.

어른이 인내(?)하는 수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동 권리를 제한할 궁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의 책무입니다. 더 심해지는 차별, 혐오, 폭력의 사

회로부터 아동을 잘 지키는 길은 아동 권리를 제한할 꿈수(제일 손쉬운 해결책 같지만, 후유증이 큰 시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관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동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김명지·유설희·최홍일(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옥경·안동현·이호균·강현아·홍관표·현소혜·정선영(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토론문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

2022 아동인권보고대회

2022. 11. 30.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Copyright(C) DUROO All rights reserved

순서

1. 들어가며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 나가며

1. 들어가며

- 2022년 아동인권보고대회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및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위요? 가장 마지막이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 청소년한부모 인터뷰 중

1. 들어가며

■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요업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5항

제9조(침해조사국)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6. 아동·청소년 관련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행 점검

- 조정희 과장님 발제문 제시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03)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이행의무 준수와 이행과정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다.” (para. 65.)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행 점검

- 이은주 교수님 발제문 “2021 추진성과”로 제시된 항목 → 구체적 검토와 점검 필요

예) 입법예고, ~법 개정추진, 연구용역 실시, ~토론회 참석

예)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 2022. 11. 28.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 등)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 (a) 진정 혹은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그들의 임무 범위 내 아동 권리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
- (b) 아동 권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 (c) 국가 당국의 요청 혹은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 권고 및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하는 것
- (d)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법과 관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
- (e) 국가의 입법 및 규제, 관행과 “아동권리협약” 및 협약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타 국제 인권 문서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공식·사적 단체에 조언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시키는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 (f) 국가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경제 및 발전 계획을 설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 (g)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가 적절하게 분류되고, 기타 정보가 정기적으로 수집되도록 하면서 아동 권리의 실태를 감독하고, 정부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검토하는 것
- (h) 모든 관련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이나 가입을 장려하는 것
- (i)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의 영향이 개발부터 실행 그리고 그 이상에서까지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하는 것
- (j) 제12조에 비추어, 아동의 인권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표현되고 경청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 (k) 아동들로 구성된 조직을 포함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한 국내 입법과 국제법률문서의 발전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
- (l)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고, 후원하는 것
- (m) 당사국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 지우고 있는 협약 제42조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이 협약의 규정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감시하는 것
- (n) 학교·대학의 교육과정 및 전문가 집단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통합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도울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 (o)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에 더해) 아동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인권 교육에 착수할 것
- (p) 국가 내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밝거나, 아동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것
- (q) 적절한 경우,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중재 혹은 조정 절차에 관여할 것
- (r) 적절한 사건의 경우, 법정 조연자 혹은 소송 참가자로서 법원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
- (s) 당사국이 “아동 돌봄 및 양육에 책임이 있는 기관, 서비스, 시설이 특히 안전 및 위생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 감독은 물론 그들의 직원의 수나 적합성에 관련하여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협약 제3조에 따라,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위해 소년원(그리고 아동이 교화 혹은 처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장소), 돌봄 기관을 방문할 것
- (t) 상기에 따르는 기타 행위들을 수행할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

-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아동기본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017,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 주제: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복지서비스
 관여부터 실행까지

보도 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7. 14.(목) 14:00	배포 일시	2022. 7. 14.(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지연 (044-202-3410)
<출발>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429)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총 5차) 중 1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해미)은 7월 1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총 5차)”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법제도정책 권고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지난 8년간 법제도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분석 및 평가 필요 (2014.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 2016. 아동권리위원회 신설)
- 현장에서 필요한, 시기적절한 권고와 의견 표명 이행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중요)
- “00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권고/의견표명 여부 점검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 권리 구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 권리 구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진정 → 연령, 언어, 장애, 지역,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아동·청소년친화적 진정체계 마련
- 신속한 구제 (진정에서 결정까지 약 1년 소요)

“시간의 경과를 아동과 성인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지체 또는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아동에게 특히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나 과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호, para. 93.)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3) 방문조사

- 아동청소년 관련 구금·보호시설: 단계적 + 장기계획 필요 (선택적 조사 X)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 국가인권위원회 내 부서 간 연계와 협력 필요
 - ✓ 기획조사팀 → 아동청소년인권과
 - ✓ 결국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 →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 예) 20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 홍보와 협력: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와 협력

- 아동권리 교육
- 인식개선 활동

“(l)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고, 후원하는 것
(m) 당사국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는 협약 제42조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이 협약의 규정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감시하는 것”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 para. 19.)

4. 나가며

■ 주요 핵심 과제 선정 필요

-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 v. 현안 대응 등 단기과제 구분하여 전략적 추진 필요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주요 핵심 과제는?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4. 나가며

■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현장에서 필요한 시기적절한 권고와 의견 표명 이행
-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포럼' 한시적 운영
- 아동인권보고대회

Thank you



사단법인 두루

- | 장애인권
- | 아동·청소년인권
- | 국제인권
- | 사회적경제
- | 환경

duroo.org

토론문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아동권리옹호실 실장)

지난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간 거둔 아동인권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아동과 관련된 주요과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학교 밖·위기 청소년 안전망 및 맞춤형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강화, 디지털·미디어교육 확대 등으로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아동을 지원의 대상, 수혜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인권 인식에 대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인권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31년 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명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비전과 목표, 책임과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나라 아동인권 이행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해주신 두 분의 발제를 토대로 국내외 현장에서 아동인권옹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아래의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1. 학대피해 아동인권 보호 강화 과제

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계획 중 학대피해 아동인권 보호 강화 과제에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올해 6월 22일자로 시행된 동 개정법률은 가정폭력 이슈 대응에 아동중심 접근이 강화된 것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계된 계기로 관련 부처간 협업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폭력 노출 법제화 이전부터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을 정서적 학대로 정의하고 교육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체계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포괄하는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 계획이 부재합니다. 현재 정부의 가정폭력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분절화 되어 있어 가정폭력 노출아동¹⁾이 학대피해 아동보호 및 지원 체계에서 누락,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이란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할 때 같은 혹은 다른 공간에서 이러한 상황을 듣거나 목격하는 경우,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폭력의 수단으로 자녀가 이용되는 경우, 폭력의 잔해물과 여파에 노출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신나래 외. (2022)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월드비전;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39-870; Edleson, J. L., Shin, N., & Armendariz, K. K. J. (2008). Measuring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EDV) Scal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5), 502-521.

가정폭력 대응 체계는 피해여성 보호와 회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동반자녀로 구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유일하며, 피해아동 심리치료비는 시설 재량으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 자녀 중 미취학아동이 33.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재한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사례 개입과 보호조치, 다양한 회복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점과 비교해 상당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개정에 따라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시군구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각 주체간 대응과 활동의 연계, 통합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에 아동의 참여 강화 과제

2019년 11월 월드비전, 플랜, 세이브더칠드런 등 여러 국제아동단체들은 ‘기후위기는 곧 아동인권의 위기다’라는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여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은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물부족, 식량안보위협에 더 취약합니다. WHO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급성 혹은 만성 영양실조 5세 미만 아동이 75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부족과 오염은 아동의 수인성 질병 위협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손상은 교육권의 위협으로 이어져 아동의 전 발달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를 더 많이 받는 불평등한 구조를 심화 시킵니다.

아동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기후와 인권, 즉 기후정의 담론에서 아동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전문에 ‘아동권리’가 언급되긴 하였으나, 이후 각국의 기후 행동에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 및 증진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021년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각국에서 제출한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34%만이

아동에 민감한 정책(Child-sensitive)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NDC 결정에 참여한 경우는 12%, 청소년/청년(Young people)은 40%²⁾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1년 9월 제정, 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원칙 중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세대가 저야할 책임이라는 세대간 형평성 원칙,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들은 관련부처의 장관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No.26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인권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2023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아동의 포괄적 컨설팅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논평 No.26 채택 이후 이를 국내 정책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은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모든 아동이 기후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권리가 존중되도록, 그리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가장 오래 받게 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2) UNICEF. (2019). Making Climate and Environment Policies for &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 인 쇄 | 2022년 11월

| 발 행 | 2022년 11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저동빌딩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 전 화 | (02) 2125-9643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주)두루행복한세상 (사회적·장애인기업)

| 전 화 | (070) 4659-0803 | F A X | (070) 7500-1146

ISBN 978-89-6114-911-2 93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